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387호
2016. 12. 29.(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635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4

제6354호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4

제6355호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

제6356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9

제635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제6358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 15

제6359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제636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24

제6361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제636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 31

[입법예고]

제2016-2503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2

제2016-2516호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33

◆ 고 시

제2016-410호 도시계획시설(공원)명칭 제정 고시 37

제2016-418호 장충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8

제2016-419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철도 및 부대시설)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50

제2016-420호 강일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50

제2016-422호 도시관리계획(한남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78

제2016-423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90

제2016-424호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97

제2016-425호 행정용어 순화자료 고시 108

제2016-426호 서울동남권유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고시 ... 108

제2016-42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117

제2016-42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방수설비, 철도)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118

제2016-431호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준주거시설2 공공준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119
제2016-432호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BL2-14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	121
제2016-433호 신정3지구 A6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23
제2016-434호 장군봉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36
제2016-435호 원지동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및 지형도면 고시	145
제2016-437호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	149
제2016-438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 고시	150

◆공 고

제2016-240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52
제2016-2471호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공고	153
제2016-2474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등록취소 공고	157
제2016-2475호 부동산개발업 영업정지 공고	157
제2016-2481호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공고	158
제2016-2482호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공고	161
제2016-248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65
제2016-2488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176
제2016-2489호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등 공표 공고	177
제2016-2497호 도시관리계획(「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결정,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178
제2016-2498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179
제2016-2499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고	181
제2016-2500호 중도매업 허가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82
제2016-2504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고	183
제2016-250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83
제2016-250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 변경공고	190

◆구 고 시

제2016-13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광진구)	197
제2016-13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광진구)	197
제2016-187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강북구)	198
제2016-115호 도시관리계획(연신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은평구)	200
제2016-172호 서대문구 신촌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서대문구)	201

제2016-169호 도시계획시설(철도:홍대정거장) 실시계획변경(경미한사항) 인가
고시(마포구) 215

제2016-118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강서구) 216

제2016-9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동작구) 221

제2016-19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강동구) 226

◆ 구 공 고

제2016-1120호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공고(종로구) 230

제2016-872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열람공고(중구) 237

제2016-995호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광진구) 243

제2016-1251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동대문구) 250

제2016-1565호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사업 공사완료 공고(강서구) 254

제2016-131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금천구) 254

제2016-180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영등포구) 255

◆ 사업소고시

제2016-28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57

◆ 사업소공고

제2016-284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258

◆ 기 타

제2016-462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66

제2016-466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66

제2016-469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67

자 치 법 규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635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 회 연 인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를 “설치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다른 지자체에서 화장실의 위생 및 미관 개선과 이용 편의 등을 위해 화장실의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휴지통 없는 화장실’ 사업이 운영 중임
- 이에, 우리교육청 소속 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화장실에서 휴지통을 없애는 대신 여자 화장실에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장애인화장실 및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된 임의규정을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함(제4조제5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6354호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 회 연 인
2016년 12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혁신 교육지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이하 “혁신교육지구”라 한다)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
- ②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교육감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장을 위하여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교육 사업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교육 혁신 사업
- 2. 마을과 학교의 협력 지원 사업
- 3. 학교 밖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 4. 지역연계 교육복지 지원 사업
- 5. 자치구 교육 특화 사업
- 6.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관련된 정책 연구 및 조사
- 7.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혁신교육지구의 지정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희망하는 자치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단, 교육감이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 ② 혁신교육지구 지정 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③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단체 및 위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의 운영에 관하여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⑤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간에 업무담당자를 상호 파견하는 교육협력관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⑥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한 운영 인력을 배치·지원할 수 있으며, 인력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평가, 연장 및 지정의 해지) ①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지정 2년차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종합평가 결과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혁신교육지구의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6조(혁신교육지구운영 종합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의 발전을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4년 마다 혁신교육지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고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계획
2. 중장기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 계획
3. 혁신교육지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및 연차별 재정투자 계획
4. 연차별 혁신교육지구 지정 계획
5. 혁신교육지구의 지정·운영·지원·평가 방안
6. 그 밖에 교육의 공공성 및 보편적 교육복지의 제고와 관련된 사항

제7조(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혁신교육지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체제 구축 및 발전 방향 협의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교육청 단위의 협력 사업 추진·조정 및 운영재원 확보방안 협의
3.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업 점검
4.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협의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청과 시에서 각각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담당하는 실,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산하에 실무협의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지)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에서 추천한 위원의 임기는 혁신교육지구 지정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자치구대표 위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 등 3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⑤ 간사는 교육청과 시의 혁신교육지구 사업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 지원 및 사무처리를 담당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매년 4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며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재정지원을 할 경우 사업내용, 예산규모 등에 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희망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에 대한 공동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가 속하는 교육지원청에 관련 예산을 배정하여야 하며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대외협력)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대학, 기업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되어 운영 중인 혁신교육지구는 본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와 우리교육청이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미래지향적 교육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정함(제3조)
- 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정, 운영 및 해지에 관하여 정함(제4조)
- 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영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정함(제5조)
- 라.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부터 제13조까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6355호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에 다음과 같이 제3호를 신설한다.

- 3. 제2조 단서의 학교에 전출입할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또한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 영 제90조제1항제7호 및 영 제91조의 공립학교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4조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

업료를 반환하고, 제4조제4항제3호의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사립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같이 수업료를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출·전입하는 경우, 월 단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수업료 징수 방법을 일괄로 산정하도록 개선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학생이 학교의 장이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학교 등으로 전출·전입할 경우, 그 수업료의 산정은 일괄 계산으로 함(제4조제4항제3호)
- 나. 제4조제4항제3호의 신설에 따라 수업료의 산정을 일괄로 계산한 학교의 경우 수업료의 반환도 일괄로 계산함(제6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356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운영해 왔으나, 행정자치부에서 2013.12.11. 현행 조례의 내용을 포괄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635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 희 연 인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회현동1가 100번지의 177호”를 “소파로 46 (회현동1가)”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봉천동 238번지”를 “낙성대로 101 (봉천동)”으로 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방배3동 630번지”를 “남부순환로 2248 (방배동)”으로 한다.

제3장제4절의 제목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행현리 산136번지”를 “축령로45번길 40-135”로 한다.

제3장제5절의 제목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사직동 1-27번지”를 “사직로9길 15-8 (사직동)”으로 한다.

제3장제6절의 제목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신문로2가 2번지 64호”를 “송월길 48 (신문로2가)”로 한다.

제3장제7절의 제목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잠실동 10번지 3호”를 “올림픽로 25 (잠실동)”으로 한다.

제3장제10절의 제목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교육시설관리사업소”)”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이하 “교육시설관리본부”)”로,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시설관리사업소”를 “교육시설관리본부”로 하고, “후암동 168번지”를 “두텁바위로 27 (후암동)”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소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을 “교육시설관리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으로 한다.

제41조 중 “교육시설관리사업소”를 “교육시설관리본부”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속기관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개정규정에 따라 그 명칭 및 주소가 변경되는 종전의 직속기관(이하 “종전의 직속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이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직속기관의 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직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장”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으로 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분원의 명칭 · 위치(제12조의5 관련)

분관명	소재지
남산분관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46 (회현동1가)
동부분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23길 20 (면목동)
남부분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7나길 21 (구로동)

[별표 2]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명칭 · 위치(제20조 관련)

구분	분원 및 야외교육장명	소재지
분원	가평영어교육원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불기산길 88
	대성리교육원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모꼬지로 61
	대천임해교육원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3길 26 (신축동)
	퇴촌야영교육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1152-51
야외교육장	천마산야영교육장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14번길 10-656 (호평동)

[별표 3]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 분관의 명칭 · 위치(제28조 관련)

분관명	소재지
강서분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280 (신월동)

[별표 4]

평생학습관의 명칭 · 위치(제30조제2항 관련)

평생 학습관명	소재지
서울특별시교육청마포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익로2길 16 (서교동)
서울특별시교육청노원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4길 13 (중계동)
서울특별시교육청고덕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95 (고덕동)
서울특별시교육청영등포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5길 10 (당산동)

[별표 5]

평생학습관 분관의 명칭 · 위치(제33조 관련)

분 관 명	소재지
서울특별시교육청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24 (아현동)

[별표 6]

도서관의 명칭 · 위치(제35조제2항 관련)

도서관명	소재지
서울특별시교육청정독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길 48 (화동)
서울특별시교육청종로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9길 15-14 (사직동)
서울특별시교육청남산도서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 109 (후암동)
서울특별시교육청동대문도서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4길 22 (신설동)
서울특별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9길 7 (사직동)
서울특별시교육청용산도서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160 (후암동)
서울특별시교육청도봉도서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556 (쌍문동)
서울특별시교육청강남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6길 45 (삼성동)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51나길 29 (등촌동)

도서관명	소재지
서울특별시교육청개포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4길 30 (개포동)
서울특별시교육청강동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16길 57 (길동)
서울특별시교육청구로도서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15 (구로동)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412 (연희동)
서울특별시교육청고척도서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45길 31 (고척동)
서울특별시교육청양천도서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13 (목동)
서울특별시교육청동작도서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94 (노량진동)
서울특별시교육청송파도서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263 (오금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직속기관 명칭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설치·운영 기관임이 나타나지 않아 이용자가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혼란이 있어 명칭을 변경하여 교육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기존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직속기관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육수요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기관임을 알 수 있도록 직속기관 명칭 개정(안 제3장제1절부터 제7절까지 및 제10절의 제목, 제10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 제41조,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 나. 기존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직속기관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변경(안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0조의2제2항, 제21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39조제2항,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6358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 회 연 인
2016년 12월 29일

제1조(「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공보담당관”을 “대변인”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지역교육청”을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직장협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7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의2제5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명칭란 중 “7 서울강서교육발전자문위원회, 8 서울강남교육발전자문위원회, 11 서울성북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7 서울강서양천교육발전자문위원회, 8 서울강남서초교육발전자문위원회, 11 서울성북강북교육발전자문위원회”로, 해당 교육지원청란 중 “7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8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11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을 “7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8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11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0조(「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5조제31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같은 조 제33호 중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제2항”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초등학교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수강료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초등학교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수강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보훈기본법」”를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단서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하계동 78”을 “공릉로 264 (하계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서울공업고등학교[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1길 46 (대방동)]

제25조(「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체육건강청소년과장”을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하급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4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8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발주기관명란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으로 한다.

제4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현행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가운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상당수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명확성, 신뢰성 등을 높여 시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입법기술상 효율적인 방식인 일괄정비 형식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 변경(제1조 외)
- 나. 「정부조직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에 따른 중앙부처 및 본청 부서의 명칭 변경(제1조 외)
-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및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제2조 외)
- 라. 상위법령 및 조례의 제명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 반영(제5조 외)
- 마. 「지방공무원법」, 「개인정보보호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제19조 외)
- 바. 기존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일부학교의 주소체계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변경(제2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359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구분란 중 “남부교육지원청(63교)”을 “남부교육지원청(64교)”으로, “금천구(16교)”를 “금천구(17교)”로, “강동송파교육지원청(65교)”을 “강동송파교육지원청(66교)”으로, “강동구(26교)”를 “강동구(27교)”로, 강서교육지원청을 “강서양천교육지원청”으로, “강남교육지원청”을 “강남서초교육지원청”으로, “성북교육지원청”을 “성북강북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1 남부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서울탑동초등학교”란 다음에 “서울금나래초등학교”란을,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서울한산초등학교”란 다음에 “서울강솔초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구 분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남부교육지원청	금천구	서울금나래초등학교	금천구 독산동 441-28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동구	서울강솔초등학교	강동구 강일동 414-2

별표 2 구분란 중 “강서교육지원청”을 “강서양천교육지원청”으로, “강남교육지원청”을 “강남서초교육지원청”으로, “성북교육지원청”을 “성북강북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3 중 “본청(115교)”을 “본청(117교)”으로, “성동광진(9교)”을 “성동광진(11교)”으로, “성동구(6교)”를 “성동구(8교)”로 하고, 교육지원청란 중 “강서”를 “강서양천”으로, “강남”을 “강남서초”로, “성북”을 “성북강북”으로 한다.

별표 3 본청의 명칭란 중 “성수공업고등학교”란 다음에 “도선고등학교”와 “금호고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구 분	교육지원청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본 청	성동광진	성동구	도선고등학교	성동구 하왕십리동 533
			금호고등학교	성동구 금호1가동 339

별표 4부터 별표 5까지의 교육지원청란 중 “강남”을 “강남서초”로, “성북”을 “성북강북”으로 한다.

별표 6 구분란 중 “본청(6교)”을 “본청(7교)”으로, 교육지원청란 중 “강남”을 “강남서초”로, 중부의 명칭란 중 “서울다솜학교”를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로 하고, “서울산업정보학교”란 다음에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교육지원청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본청	남부	금천구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금천구 남부순환로 128길 42 (독산동)

별표 7 중 “남부교육지원청(24교)”을 “남부교육지원청(25교)”으로, “금천구(4교)”를 “금천구(5교)”로, “북부교육지원청(13교)”을 “북부교육지원청(14교)”으로, “노원구(10교)”를 “노원구(11교)”로, “중부교육지원청(11교)”을 “중부교육지원청(12교)”으로, “중구(3교)”를 “중구(4교)”로, “강동송파교육지원청(20교)”을 “강동송파교육지원청(21교)”으로, “강동구(8교)”를 “강동구(9교)”로

교)로, “강서교육지원청(22교)”을 “강서양천교육지원청(23교)”으로, “양천구(11교)”를 “양천구(12교)”로, “강남교육지원청”을 “강남서초교육지원청”으로, “성동광진교육지원청(16교)”을 “성동광진교육지원청(18교)”으로, “광진구(5교)”를 “광진구(6교)”로, “성동구(11교)”를 “성동구(12교)”로, “성북교육지원청”을 “성북강북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7 남부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서울탑동유치원”란 다음에 “서울금나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북부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서울태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상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중부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서울충무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광희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서울신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강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서울양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강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서울자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중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서울승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경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구분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남부교육지원청	금천구	서울금나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	금천구 독산동 441-28
북부교육지원청	노원구	서울상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노원구 상계로9길 39(상계동)
중부교육지원청	중구	서울광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중구 다산로 269(신당동)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동구	서울강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동구 강일동 414-2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양천구	서울강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양천구 신월로 97(신월동)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광진구	서울중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진구 긴고랑로13길 59(중곡동)
	성동구	서울경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성동구 독섬로 332(성수동1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17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 초등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각종학교 1개교, 병설유치원 7개원을 각각 신설하며, 각종학교 1개교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3개 교육지원청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별표 1) : 신설 2개교

- 남부교육지원청 : 서울금나래초등학교(금천구 독산동 441-28)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서울강솔초등학교(강동구 강일동 414-2)

나. 고등학교(별표 3) : 신설 2개교

- 도선고등학교(성동구 하왕십리동 533)
- 금호고등학교(성동구 금호1가동 339)

다. 각종학교(별표 6) : 명칭 변경 1개교, 신설 1개교

- 명칭 변경 : 서울다솜학교 ⇒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 신설 :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금천구 남부순환로 128길 42)

라. 유치원(별표 7) : 신설 7개원

- 남부교육지원청 : 서울금나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금천구 독산동 441-28)
- 북부교육지원청 : 서울상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노원구 상계로9길 39)
- 중부교육지원청 : 서울광희초등학교병설유치원(중구 다산로 269)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서울강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강동구 강일동 414-2)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서울강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양천구 신월로 97)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 서울중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광진구 긴고랑로13길 59)
 - 서울경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성동구 독섬로 332)

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 변경(별표 1부터 별표 7까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636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촉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분임경리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을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다만”을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한다.

제5조제4항은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16. 9.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 공무원(분임재무관)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제
2조)

나.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 규정 삭제(제3조제2항)

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규정 삭제(제5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361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 희 연 인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교시설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이나 단체 등의 교육·체
육·문화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에 따라”를 “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각급 학교”란”을 ““학교시설”이란” 으로, “를”을 “의 시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일시사용”이란”을 ““일시사용”이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로, “것을 말하며, “사용료”란 일시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를 “행위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용자”란 학교시설의 일시사용을 허가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개방의 원칙)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학교시설의 사용목적은 교육·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해당 학교의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자유로운 개별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례에 따라”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다만, 화장실은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교시설을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시작일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단기사용의 경우에는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 신청 기일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학교장이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자에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용허가기간) ① 학교시설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시작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갱신하는 사용허가기간은 갱신하기 전의 사용허가기간을 넘을 수 없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1일 사용허가시간 제한) ① 별표의 생활체육 중 구기종목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용자가 1일 기준 3시간 이내에서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추가사용허가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자에게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장

의 판단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⑤ 사용료 산정기준에 미달하는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 ⑥ 사용시간은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을 포함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별표 중 공공요금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학교장은 사용자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활동과 학교시설의 유지·보존 및 활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지시”를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사용자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학교장이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경우
- 7. 학교에 취사도구를 반입하거나, 학교에서 취사, 음주,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 8. 공작물 등 정착물을 시설하는 경우
- 9.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 사용허가 받은 학교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전대하려는 경우

제10조제2항 중 “제2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는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시”는 “요구”로, “주의의무”는 “질서유지 및 주의의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사용자는 학교 내에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축조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영리로 보는 행위) ① 제10조제1항제9호의 영리로 보는 사용자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회원을 모집하여 금전을 받고 가르치는 행위
- 2. 리그 또는 토너먼트 등의 경기 참가자에게 금전을 받는 행위

- 3. 제1호와 제2호의 목적으로 모집광고를 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리로 보지 아니한다.
 - 1. 관할청에 비영리로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가 선수육성 또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위로써 비영리임을 입증한 경우
 - 2. 그 밖에 사용자가 회원 또는 참가자로부터 물품구입이나 사용료 납부 등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받는 경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전대로 보는 행위) 제10조제1항제10호의 전대로 보는 사용자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사용허가 받은 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 2. 사용자가 사용허가 받은 학교시설을 대관하거나 그 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별표]

학교시설 사용료(제4조 및 제8조 관련)

(단위 : 원, 기준 : 1시간)

시설명		생활체육·평생교육	일반·행사	비고	
일반교실		10,000	2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체육관		360㎡ 미만	15,000		40,000
		360㎡ 이상 720㎡ 미만	20,000		50,000
		720㎡ 이상	25,000		60,000
운동장	일반	20,000	50,000	1시간	
	인조잔디 (천연잔디포함)	40,000	100,000		
샤워시설		30,000		1개월	
창고(물품보관)		30,000			
그밖의 학교시설 (특별교실, 시청각실, 컴퓨터실, 수영장, 농구장, 테니스장, 도서관 등)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			

※ 체육관의 면적기준은 실제 사용면적을 의미함.

[별지 제1호서식]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제5조 관련)

신 청 인	성 명		전 화	
	주 소		FAX	
사용 시 설명				
사용 목적				
사용 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일간)
사용 인원				
기 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의 규정을 지킬 것을 서약하고, 같은 조례 제5조(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학교장 귀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학교시설의 개방 취지와는 다르게 특정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특정단체의 독점사용으로 학생들과 다수의 주민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본래의 학교시설 개방취지를 살려 누구나 학교의 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지는 부작용을 해소하며, 이용자의 위법·부당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취소규정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시설의 개방의 원칙 신설(제3조)

- 1)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방함
- 2) 사용허가여부는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
- 3) 사용목적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
- 4) 학생과 인근주민들의 개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함

나. 사용시작일 7일 전까지 허가 받아야 하는 등 사용허가 신청 및 조정 규정 수정(제5조)

다. 사용허가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 규정 신설(제6조)

라. 구기종목의 경우 1일 사용허가시간 3시간 범위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제6조의2)

마. 체육관 사용료 조정(제8조 별표)

바. 공공요금 감면조항 적용 제외(제9조)

사. 사용허가 취소 조항 추가(제10조)

- 1) 민원이 제기되어 시정요구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는 경우
- 2) 취사도구를 반입하거나 학교에서 취사, 음주,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 3) 공작물 등 정착물을 시설하는 경우
- 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5)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경우

아. 사용허가 취소 사유로 추가된 영리 및 전대로 보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신설 (제13조 및 제1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36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 희 연 인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2호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호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우리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중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출하여 조성되는 기금 재원은 실질적으로 “전출금”이 아닌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므로 건립 기금의 조성재원의 명칭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립 기금의 조성재원 중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변경함(제3조제2호)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503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16.7.12.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를 정비·보완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 개정내용
 - 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대부료·변상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 조정(안 제 8조제1항 제2호·제3호·제4호·제5호, 제20조2제1항·제2항)
 - 나. 구청장에게 위임한 체비지 변상금의 징수교부율 조정(안 제25조제2항)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재생본부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활성화과[전화 : 02)2133-4654, FAX : 02)2133-4908 E-mail : seawater@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516호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노후된 서울역 고가도로를 재활용하여 보행로로 조성중인 ‘서울로 7017’을 이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운영관리하는 근거규정으로 「서울로 7017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이용허가 신청, 허가, 취소 및 사용료 납부와 관련된 사항(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나. 물건투척, 음주·흡연·눅는행위, 쓰레기투기 및 시설물 훼손 등 금지(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 다. 광장, 보행로, 무대 등 시설 및 프로그램 참가비 등 사용료 규정(안 제11조, 별표 1)

라.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마. 명칭 및 상징물의 사용승인(안 제21조, 제22조,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푸른도시국장,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 조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경과[전화 : 02)2133-2119, FAX : 02)2133-1802, E-mail : biotopia@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조경과 - 조경과장 이원영, 조경시설팀장 하재호, 담당 온수진								
4. 근거법령명등	-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관 련 규 제 수	5건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서울로 7017(이하 서울로) 일부 공간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 서울로 이용객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없음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행사, 공연 등을 위하여 서울로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제7조) - 시장은 각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8조) - 시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제9조) -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 변경할 수 있다(제10조) - 누구든지 서울로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제13조)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서울로 7017(이하 서울로)’은 1970년 준공된 서울역 고가도로가 노후되어 철거를 검토하던 중, 그 구조물을 재활용하여 철도와 도로로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는 보행로이자 도심 녹지공간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설치됨. 그 과정에서 만리동 고가하부 청소차고지 등으로 활용되던 공간과 기존 교통섬, 그리고 도로 선형 조정을 통해 약 1만㎡ 규모 만리광장 등 크고 작은 지상 녹지 및 광장공간을 신설중에 있으며, '17년 4월 전면 준공을 앞두고 있음
- 특히, 만리광장은 키 큰나무를 열식한 형태로 조성될 예정으로, 기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에 비해 나무와 그늘이 많고, 폭이 좁고, 중간부가 고가램프로 단절되어 대단위 집회 등 행사에는 부적합한 형태이며, 서울시는 이 공간을 시민의 문화 및 정서함양을 위한 행사 및 공연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임
- 이에 따라 동 공간 등을 활용한 행사 및 공연을 위한 신청, 행사 및 공연내용에 대한 사전검토(허가), 취소 등 관련 규정이 필요함
- 또한, ‘서울로’에서 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게 하고, ‘서울로’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도심 공공공간은 많은 이용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이며 이러한 공간내에서 진행되는 행사 및 공연은 그 공간 성격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공간 성격(보행친화·녹색·문화)에 부합하는 행사를 사전검토(허가)하는 방식을 통해, 규제목적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 중복 여부

- 이용허가(조례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와 관련하여 ‘서울로’는 도시계획상 ‘도로(보행전용도로)’로 도로법 제61조에서 규정한 ‘도로의 점용허가’가 유사한 기능으로 판단되나, 점용허가 대상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에 대한 것으로, 광장 공간에 대한 행사 및 공연 등에 대한 이용과는 상이하며, 대체수단 및 중복이 없음
- 행위제한(조례안 제13조)과 관련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의 내용을 발취·준용하였으며, ‘서울로’에 부합하도록 재구성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규제로 인한 비용은 기존 조직·인력으로 대체 가능

나. 규제의 편익분석

- ‘서울로’가 새롭게 조성된 도심 공공공간으로 보행친화도시, 녹색도시, 문화도시의 지향점에 부합하게 운영됨에 따라, 수준높은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포괄적 편익 발생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동 사항은 비용에 비해 포괄적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됨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 가.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규제의 기준은 보행친화·녹색·문화로 제시된 ‘서울로’ 조성목적과 합치여부, 보행환경 저해여부, 타 법령 제한여부이며(이상 이용허가),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공연과 전시회 등 비영리행사, 어린이, 청소년, 여성, 어르신 관련 행사(우선순위), 목적외 용도 사용, 허가조건 위반(허가의 취소 등), 물건투척, 흡연·음주 등(행위제한)으로 명확함
- 이용허가 신청 - 허가 - 허가 변경·취소 - 원상회복 절차 명확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법적근거
 -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 존속기한의 타당성 : 2017년 4월 준공예정인 ‘서울로 7017’은 공공공간 성격상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므로 존속할 필요성이 있음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서울로 7017 공간 이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이용허가 신청서, 서울로 명칭 및 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비서류로 제안하였으며, 이용 및 사용허가에 대한 처리절차를 명시함.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10호

도시계획시설(공원)명칭 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은평구, 서초구 등 관내 신규 조성한 공원과 공원명과 위치 불일치로 이용 시민의 혼란을 야기한 공원에 대하여 부시장 방침 행정과-110325호(1995.3.20)에 의거 그 명칭을 제·개정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공원(근린·문화공원)명칭 제정내역

연 번	구 분	위 치	규모(㎡)	제정 공원명칭	비고(기존명칭)
1	근린공원	강서구 방화1동 210-1	17,283	마곡나루	마곡2
2	근린공원	강서구 공항동 1220	24,597	마곡하늬	마곡3
3	문화공원	강서구 가양1동 1499	3,783.8	탑산	가양동
4	문화공원	강서구 내발산동 226-4	3,838	새개	마곡1
5	문화공원	강서구 가양1동 765	8,298	한다리	마곡2
6	문화공원	강서구 가양1동 379-4	2,574	늦다리	마곡3
7	문화공원	강서구 마곡동 295-1	3,090	뚝고랑	마곡4
8	문화공원	강서구 가양1동 172-20	2,582	선두암	마곡5
9	근린공원	은평구 진관동 11-16	4,789.8	상림	은평뉴타운제3호
10	근린공원	은평구 진관동 206-21	12,018.2	신도	은평뉴타운제9호
11	근린공원	서초구 반포동 114-3	26,092.2	반포	반포1
12	근린공원	서초구 반포동 18-5 등	13,606.8	신반포	반포2
13	근린공원	서초구 반포동 20-47 등	9,941.7	원촌	반포3
14	근린공원	강남구 율현동 77-9	157,535	율현	세곡2

2. 공원(근린·역사공원)명칭 개정내역

연 번	구 분	위 치	규모(㎡)	개정 공원명칭	비고(기존명칭)
1	근린공원	강서구 가양동 1471 등	29,843.8	허준근린공원	구암근린공원
2	역사공원	강동구 암사동 211-1	101,510	암사역사공원	암사역사생태공원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02-2133-2038) 및 강서구 공원 녹지과(☎02-2600-6434), 은평구 공원녹지과(☎02-351-8009), 서초구 공원녹지과(☎02-2155-6864), 동부공원녹지사업소(☎02-351-8009), 강동구 푸른도시과(☎02-351-8009)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18호

장충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호(2009. 1. 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0호(2015. 4. 30)로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중구 장충동2가 197번지 일원 장충단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장충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장충단근린공원내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공연장 면적 정정 및 실측에 의한 옥외 공용화장실의 면적을 정정하여 효율적 시설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97번지 일대

3. 면 적 : 289,209㎡

4.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 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84)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3783-5966)

장충단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67번지 일원)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건 축 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건 축 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건 축 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건 축 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계	289,209.00	98,928.08	15	18,876.28	51,355.08	84	289,209.00	98,928.08	15	18,939.73	51,302.01	87	289,209.00	98,928.08	15	18,939.73	51,302.01	87	289,209.00	98,928.08	15	18,939.73	51,302.01	87	바닥면적(증) 63.45㎡ 연면적(감) 53.07㎡	
소계	37,230.18	27,470.18				11	37,230.18	27,470.18				11	37,230.18	27,470.18				11	37,230.18	27,470.18						
기반 시설	30,642.30	20,882.30 (9,760.00)				(11)	30,642.30	20,882.30 (9,760.00)				(11)	30,642.30	20,882.30 (9,760.00)				(11)	30,642.30	20,882.30 (9,760.00)				(11)		
광장	6,587.88	6,587.88					6,587.88	6,587.88					6,587.88	6,587.88					6,587.88	6,587.88						
조경 시설	5,428.79	5,428.79				10	5,428.79	5,428.79				10	5,428.79	5,428.79				10	5,428.79	5,428.79				10		
유회 시설	201.00	201.00				7	201.00	201.00				7	201.00	201.00				7	201.00	201.00				7		
휴양 시설	1,935.21	1,935.21	2	222.52	434.76	15	1,935.21	1,935.21	2	222.52	434.76	15	1,935.21	1,935.21	2	222.52	434.76	15	1,935.21	1,935.21	2	222.52	434.76	15		
교양 시설	21,283.14	21,283.14	3	11,343.91	37,124.39	8	21,283.14	21,283.14	3	11,421.91	37,099.11	8	21,283.14	21,283.14	3	11,421.91	37,099.11	8	21,283.14	21,283.14	3	11,421.91	37,099.11	8	바닥면적(증) 78.00㎡ 연면적(감) 25.28㎡	
운동 시설	31,757.94	31,757.94	4	6,091.74	12,489.76	36	31,757.94	31,757.94	4	6,091.74	12,489.76	36	31,757.94	31,757.94	4	6,091.74	12,489.76	36	31,757.94	31,757.94	4	6,091.74	12,489.76	36		
편익 시설	8,959.54	8,959.54	5	494.14	539.23		8,959.54	8,959.54	5	479.59	511.44		8,959.54	8,959.54	5	479.59	511.44		8,959.54	8,959.54	5	479.59	511.44		바닥면적(감) 14.55㎡ 연면적(감) 27.79㎡	
관리 시설	1,892.28	1,892.28	1	723.97	766.94		1,892.28	1,892.28	1	723.97	766.94		1,892.28	1,892.28	1	723.97	766.94		1,892.28	1,892.28	1	723.97	766.94			
누지 및 기타	180,520.92						180,520.92						180,520.92						180,520.92							
시설율 (법정 40%)	$(98,928.08 / 289,209.00) \times 100 = 34.21\%$																									
건폐율 (법정 10%)	$(18,876.28 / 289,209.00) \times 100 = 6.53\%$																									
	$(98,928.08 / 289,209.00) \times 100 = 34.21\%$																									
	$(18,939.73 / 289,209.00) \times 100 = 6.55\%$ (증)0.02%																									

2. 시설조서

구분	변경				전경				변경				후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비투면적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비투면적		건축물 (㎡)	공작물 (기)
합계			289,209.00	98,928.08		15	18,876.28	51,355.08	84			289,209.00	98,928.08		15	18,939.73	51,302.01	87	비투면적(증) 63.46㎡ 연면적(감) 53.07㎡
	소계		37,230.18	27,470.18					11			37,230.18	27,470.18					11	
도로			30,642.30	20,882.30					(11)			30,642.30	20,882.30					(11)	
				(9,760.00)									(9,760.00)						
광장	가		6,587.88	6,587.88						가		6,587.88	6,587.88						
	가-1	중구 장충동 2가 197	(520.61)	(520.61)						가-1	중구 장충동 2가 197	(520.61)	(520.61)						
	가-2	중구 장충동 2가 197	(707.37)	(707.37)						가-2	중구 장충동 2가 197	(707.37)	(707.37)						
	가-3	중구 장충동 2가 197	(258.07)	(258.07)						가-3	중구 장충동 2가 197	(258.07)	(258.07)						
	가-4	중구 장충동 2가 197	(821.00)	(821.00)						가-4	중구 장충동 2가 197	(821.00)	(821.00)						
소계			5,428.79	5,428.79					10			5,428.79	5,428.79					10	
	바		3,147.61	3,147.61					(8)	바		3,147.61	3,147.61					(8)	
계류	비-1	중구 장충동2가 신6-5	(588.49)	(588.49)					(1)	비-1	중구 장충동2가 신6-5	(588.49)	(588.49)					(1)	
	비-2	중구 장충동2가 신6-5	(650.71)	(650.71)						비-2	중구 장충동2가 신6-5	(650.71)	(650.71)						
	비-3		(862.37)	(862.37)					(1)	비-3		(862.37)	(862.37)					(1)	
	비-4	중구 장충동2가 신6-5	(309.20)	(309.20)					(4)	비-4	중구 장충동2가 신6-5	(309.20)	(309.20)					(4)	
	비-5	중구 장충동2가 신6-5	(77.47)	(77.47)					(2)	비-5	중구 장충동2가 신6-5	(77.47)	(77.47)					(2)	
소계			5,428.79	5,428.79					10			5,428.79	5,428.79					10	
	바		3,147.61	3,147.61					(8)	바		3,147.61	3,147.61					(8)	

구 분	범						경						경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조 경 시 설	사	중구 장충동2가 산6-5외 3필지	2,133.33	2,133.33				(2)	사	중구 장충동2가 산6-5외 3필지	2,133.33	2,133.33				(2)			
	㉠	중구 장충동2가 산6-5외 3필지	(435.00)	(435.00)				(1)	㉠	중구 장충동2가 산6-5외 3필지	(435.00)	(435.00)				(1)			
	카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50	50				(1)	카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50	50				(1)			
	하	중구 장충동2가 산6-5외 3필지	97.85	97.85					하	중구 장충동2가 산6-5외 3필지	97.85	97.85							
유 의 시 설	소 계		201.00	201.00			4			201.00	201.00					4			
휴 양 시 설	타	중구 장충동2가 197	201.00	201.00			(4)		타	중구 장충동2가 197	201.00	201.00				(4)			
	다		1,935.21	1,935.21			15		다		1,935.21	1,935.21			2	15			
	다-1	중구 장충동2가 197	(750.00)	(750.00)	철근 콘크리트조	(1)	(213.52)		다-1	중구 장충동2가 197	(750.00)	(750.00)	철근 콘크리트조	(1)	(213.52)	(425.76)			
	다-2	중구 장충동2가 197	(31.50)	(31.50)		(1)	(9.00)		다-2	중구 장충동2가 197	(31.50)	(31.50)		(1)	(9.00)	(9.00)			
교 양 시 설	다-3	중구 장충동2가 산14-67	(1,068.97)	(1,068.97)			(12)		다-3	중구 장충동2가 산14-67	(1,068.97)	(1,068.97)				(12)			
	다-4	중구 장충동2가 산14-67	(84.74)	(84.74)			(3)		다-4	중구 장충동2가 산14-67	(84.74)	(84.74)				(3)			
	소 계		21,283.14	21,283.14			8			21,283.14	21,283.14			3	11,421.91	37,099.11			
	국립극장	4	중구 장충동2가 산14-67	12,914.26	12,914.26	철근 콘크리트조	1	9,579.64	33,829.78		12,914.26	12,914.26	철근 콘크리트조	1	9,579.64	33,804.50			
비대면적(증) 78.00㎡ 연면적(감) 25.28㎡																			
비대면적(증) 78.00㎡ 연면적(감) 25.28㎡																			

구 분	경						경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별오름 극장	5	중구 장충동2가 신14-67	3,155.97	3,155.97	철근 콘크리트조	1	942.15	1,893.53	공작물 (기)	간축물 (㎡) 면적	연면적	942.15	1,893.53		
															공작물 (기)
하늘극장	6	중구 장충동2가 신14-67	1,183.39	1,183.39	철근 콘크리트조	1	822.12	1,401.08				822.12	1,401.08		
															공작물 (기)
문화행 사미당	아	중구 장충동2가 197	572.15	572.15											
															공작물 (기)
동상 기념비	자		3,457.37	3,457.37					(8)					(8)	
															공작물 (기)
사명대 사상	자-1	중구 장충동2가 197-28	(305.00)	(305.00)					(1)					(1)	
															공작물 (기)
장충단비	자-2	중구 장충동2가 197	(16.00)	(16.00)					(1)					(1)	
															공작물 (기)
파리장 서비	자-3	중구 장충동2가 7-27	(270.00)	(270.00)					(1)					(1)	
															공작물 (기)
이준열 사상	자-4	중구 장충동2가 197	(345.00)	(345.00)					(1)					(1)	
															공작물 (기)
최현배 기념비	자-5	중구 장충동2가 신7-24	(1,000.00)	(1,000.00)					(1)					(1)	
															공작물 (기)
유관순상	자-6	중구 장충동2가 신6-1	(390.95)	(390.95)					(1)					(1)	
															공작물 (기)
3·1 기념탑	자-7	중구 장충동2가 신14-81	(860.42)	(860.42)					(1)					(1)	
															공작물 (기)
김영환상	자-8	중구 장충동2가 신14-21	(270.00)	(270.00)					(1)					(1)	
															공작물 (기)
소 계	라		31,757.94	31,757.94		4	6,091.74	12,489.76	36			4	6,091.74	12,489.76	36
운동공간	라		30,356.35	30,356.35		3	6,057.79	12,421.86				3	6,057.79	12,421.86	
장충 체육관	라-1	중구 장충동 2가 200-12	(9,142.82)	(9,142.82)	철근 콘크리트조	(1)	(5,464.01)	(11,429.00)				(1)	(5,464.01)	(11,429.00)	

교 양 시 설

문 방 시 설

구 분	법						경						법						경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장충수영장 동국제운동장 석호정	라-2	장구 장충동 2가 산7-22	(5,697.00)	(5,697.00)	철근 콘크리트조	(1)	(459.90)	(858.98)		라-2	장구 장충동 2가 산7-22	(5,697.00)	(5,697.00)	철근 콘크리트조	(1)	(459.90)	(858.98)											
	라-3	장구 장충동 2가 산7-22	(14,500.00)	(14,500.00)						라-3	장구 장충동 2가 산7-22	(14,500.00)	(14,500.00)															
	라-4	장구 장충동 2가 산14-21	(1,016.53)	(1,016.53)	철근 콘크리트조	(1)	(133.88)	(133.88)		라-4	장구 장충동 2가 산14-21	(1,016.53)	(1,016.53)	철근 콘크리트조	(1)	(133.88)	(133.88)											
	마		1,401.59	1,401.59		1	33.95	67.90	(36)	마		1,401.59	1,401.59		1	33.95	67.90	(36)										
안동시설 체력 단련장	마-1	장구 장충동2가 197	(62.19)	(62.19)					마-1	장구 장충동2가 197	(62.19)	(62.19)																
	마-2	장구 장충동2가 197	(33.75)	(33.75)					마-2	장구 장충동2가 197	(33.75)	(33.75)																
	마-3	장구 장충동2가 산7-22	(500.00)	(500.00)					마-3	장구 장충동2가 산7-22	(500.00)	(500.00)							(17)								(17)	
	마-5	장구 장충동2가 산14-21	(805.65)	(805.65)	연외조	(1)	(33.95)	(67.90)	(19)	마-5	장구 장충동2가 산14-21	(805.65)	(805.65)	연외조	(1)	(33.95)	(67.90)	(19)									(19)	
	소 계			8,959.54	8,959.54		5	494.14	539.23				8,959.54	8,959.54		5	494.14	539.23										
시민 휴게시설 화장실	2		504.17	504.17		5	494.14	539.23		2		504.17	504.17		5	494.14	539.23											
	2-1	장구 장충동2가 197	(243.00)	(243.00)		(1)	(243.00)	(243.00)		2-1	장구 장충동2가 197	(243.00)	(243.00)		(1)	(243.00)	(243.00)											
	2-2	장구 장충동2가 산14-67	(62.00)	(62.00)	철근콘크리트조	(1)	(62.00)	(62.00)		2-2	장구 장충동2가 산14-67	(62.00)	(62.00)	철근콘크리트조	(1)	(47.45)	(34.21)										비대면적(감) 14.55㎡ 연면적(감) 27.79㎡	
	2-3	장구 장충동2가 산14-21	(65.88)	(65.88)	철근콘크리트조	(1)	(65.88)	(65.88)		2-3	장구 장충동2가 산14-21	(65.88)	(65.88)	철근콘크리트조	(1)	(65.88)	(65.88)											
	2-4	장구 장충동2가 산14-21	(67.57)	(67.57)	철근콘크리트조	(1)	(67.57)	(82.36)		2-4	장구 장충동2가 산14-21	(67.57)	(67.57)	철근콘크리트조	(1)	(67.57)	(82.36)											
2-5	장구 장충동2가 200-102	(65.72)	(65.72)	연외조	(1)	(55.69)	(85.99)		2-5	장구 장충동2가 200-102	(65.72)	(65.72)	연외조	(1)	(55.69)	(85.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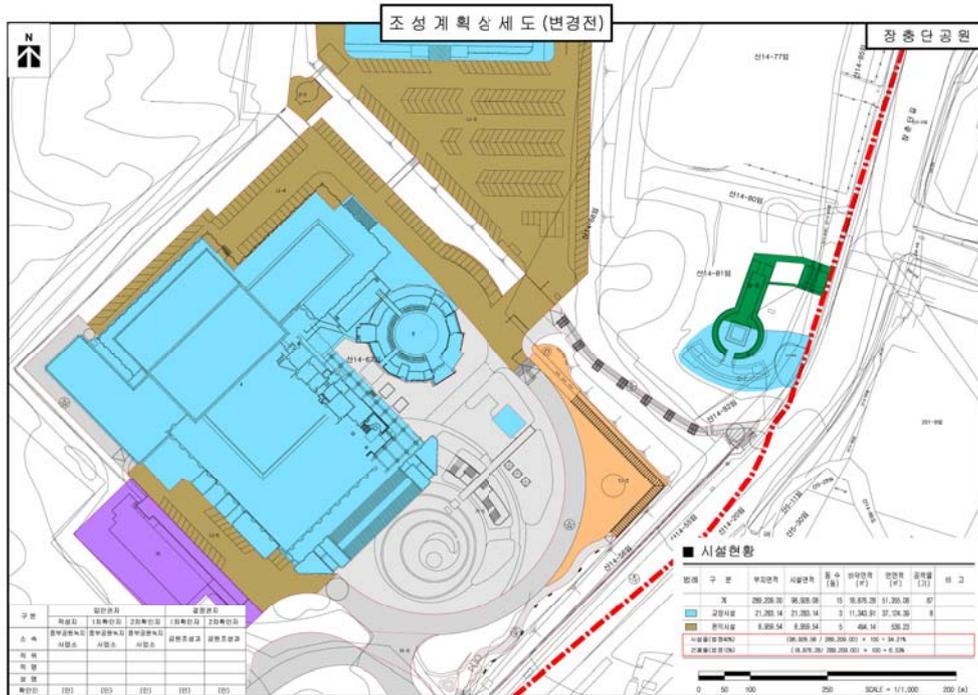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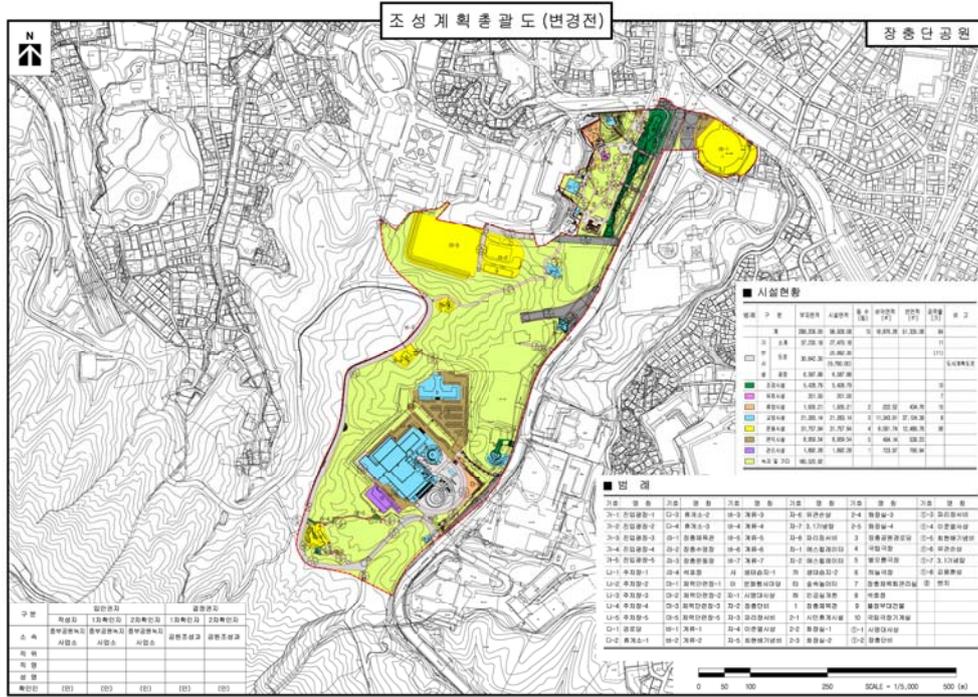
구 분	경 변										경 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주차장	나		8,353.52	8,353.52						나											
	나-1	중구 장충동2가 200-102	(471.74)	(471.74)						나-1	중구 장충동2가 200-102										
	나-2	중구 장충동2가 196-1 외 1필지	(260.00)	(260.00)						나-2	중구 장충동2가 196-1 외 1필지										
	나-3	중구 장충동2가 산14-67	(4,987.84)	(4,987.84)						나-3	중구 장충동2가 산14-67										
	나-4	중구 장충동2가 산14-67	(1,882.94)	(1,882.94)						나-4	중구 장충동2가 산14-67										
	나-5	중구 장충동2가 산14-67	(751.00)	(751.00)						나-5	중구 장충동2가 산14-67										
에스컬레이터	차		101.85	101.85					차												
	차-1	중구 장충동2가 197	31.30	31.30					차-1	중구 장충동2가 197											
	차-2	중구 장충동2가 200-101	70.55	70.55					차-2	중구 장충동2가 200-101											
소 계			1,892.28	1,892.28		1	723.97	766.94													
국립극장 기계실	10	중구 장충동2가 산14-67	1,892.28	1,892.28	철근콘크리트조	1	723.97	766.94													
소 계			180,520.92																		
녹지 및 기타	지하철입구																				
	녹지 및 기타			180,52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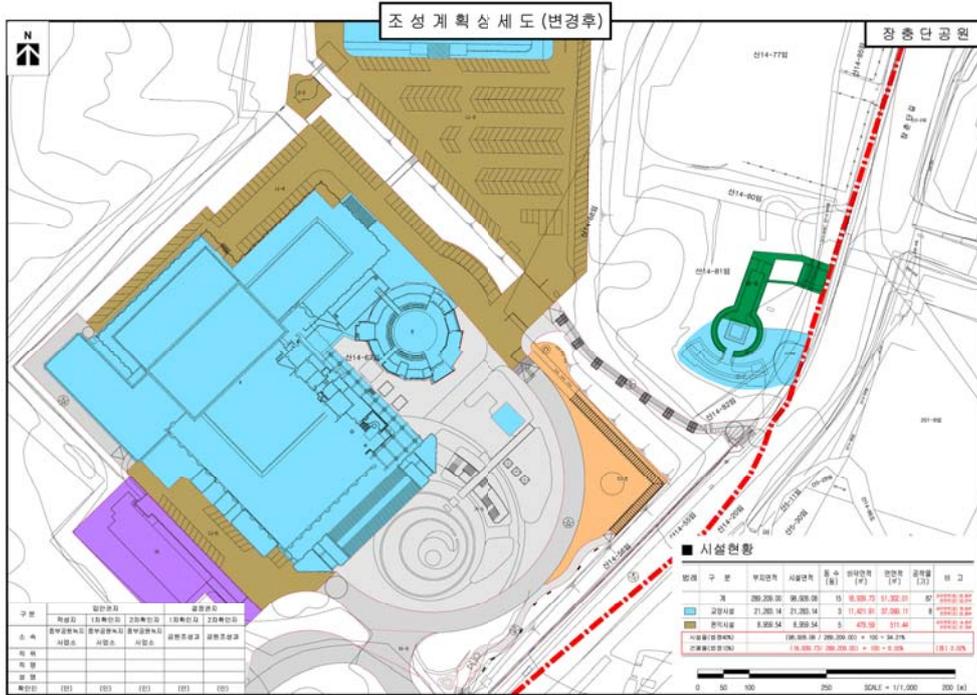
3. 도로조서
 - 공원내 도시계획결정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20.882.30					
당초	중로	계				3,929.00					
당초		1	1	25	90.0	2,250.00	부진입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1	2	20	45.0	(900.00)	도시계획도로	공원경계	중로 1-3		
당초		1	3	20	150.0	(3,000.00)	도시계획도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1	4	20	175.0	(3,500.00)	도시계획도로	공원경계			
당초		1	5	20	100.0	(2,000.00)	도시계획도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1	6	14.6	115.0	1,679.00	부진입	중로1-3	공원경계		
당초		3	1	12	30.0	(360.00)	도시계획도로	중로 1-4	공원경계		
※ 도시계획도로는 부지면적에 산입, 시설면적에는 ()로 표시하여 미 산입시킴으로서 시설물에 미포함.											
당초		소로	계				10,570.00				
당초	1		1	10	115.0	1,150.00	부진입로	중로 1-3	공원경계		
당초	1		2	10	90.0	900.00	부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1		3	8.5	510.0	4,335.00	남부순환로	소로 3-7	공원경계		
당초	1		4	10	175.0	1,750.00					
당초	3		1	5	40.0	200.00	부진입로	중로 1-3	산책로5		
당초	3		2	4	35.0	140.00	부진입로	중로 1-3	산책로6		
당초	3		3	7	75.0	525.00	부진입로	소로 1-2			
당초	3		4	4	60.0	240.00	부진입로	공원경계	남산2호터널관리소		
당초	3		5	7	150.0	1,050.00		주차장5	주차장4		
당초	3		6	4	85.0	340.00		주차장4	주차장5		
당초	3		7	6	165.0	990.00	남산순환로	공원경계	소로 1-3		
당초	3		8	5	20.0	100.00	남산순환로	소로 1-3	공원경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계				6,383.30				
당초		-	1	2.3	35.0	80.50	산책로	산책로18	사명대사상	
당초		-	2	4	77.0	308.00	산책로	공원경계	광장 가-2	
당초		-	3	4	23.0	92.00	산책로	광장 가-1	광장 가-2	
당초		-	4	5	76.0	380.00	산책로	광장 가-2	산책로28	
당초		-	5	4	33.0	132.00	산책로	광장 가-2	산책로22	
당초		-	6	3	41.0	123.00	산책로	산책로22	산책로19	
당초		-	7	4	126.0	504.00	산책로	산책로20	광장 가-5	
당초		-	8	4	144.0	576.00	산책로	광장 가-2	광장 가-5	
당초		산책로	-	9	3.7	14.0	51.80	산책로	산책로23	산책로22
당초	-		10	1.5	24.0	36.00	산책로	산책로23	산책로22	
당초	-		11	2	50.5	101.00	산책로	산책로22	산책로27	
당초	-		12	2	70.0	140.00	산책로	산책로28	광장 가-5	
당초	-		13	7	40.0	280.00	산책로	산책로19	산책로29	
당초	-		14	4	48.5	194.00	산책로	산책로28	광장 가-5	
당초	-		15	1.5	13.0	19.50	산책로	산책로28	산책로31	
당초	-		16	6	14.0	84.00	산책로	산책로29	문화행사마당	
당초	-		17	4.5	9.0	40.50	산책로	이준열사상	광장 가-5	
당초	-		18	1.5	20.0	30.00	산책로	산책로9	학습공간5	
당초	-		19	3	300.0	900.00	산책로	소로 1-1	소로 1-3	
당초	-		20	2.5	10.0	25.00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		21	1	60.0	60.00	산책로	주차장3	운동공간9	
당초	-		22	2.5	94.0	235.00	산책로	중로 1-5	주차장2	
당초	-		23	4	19.0	76.00	산책로	중로 1-5	휴게공간3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	29	2.5	76.0	190.00	산책로	중로1-5	휴게공간3	
당초		-	24	2.5	40.0	100.00	산책로	소로 1-3	운동공간11	
당초		-	25	1	10.0	10.00	산책로	체력단련장4	소로 1-3	
당초		-	26	2	10.0	20.00	산책로	체력단련장4	소로 1-3	
당초		-	27	1.5	120.0	180.00	산책로	체력단련장4	휴게소-3	
당초		-	28	4	40.0	160.00	산책로	소3-7	휴게소-3	
당초		-	30	4	107.0	428.00	산책로	소3-2	소 1-1	
당초		-	31	4	70.0	280.00	산책로	소3-2	소 3-1	
당초		-	32	4	110.0	440.00	산책로	소3-1	중 1-2	
당초		-	33	2.5	70.0	107.00	산책로	산책로24	체력단련장5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19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철도 및 부대시설)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1. 서울특별시고시 제35호(1982.1.28)로 도시계획시설 지적승인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02호(1982.3.9) 및 제219호(1982.6.5)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되고, 동 고시 제507호(1982.12.9) 및 제508호(1982.12.9)에 의한 허가정정고시와 동 고시 제2015-384호(2015.12.3)로 변경인가 된 지하철 3,4호선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 2.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 도서는 서울메트로(총무처 ☎02-6110-5077)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1) 지하철 3호선 : 지축역~양재역
- (2) 지하철 4호선 : 상계역~사당역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지하철 3,4호선 도시철도(본선, 정거장 및 부대시설)건설사업
다. 사업의 규모 : 3호선-28.9km, 4호선-30.3km, 차량기지-2개소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1)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방배동)
- (2) 성명 : 당초 서울메트로 사장 이정원 → 변경 서울메트로 사장 김태호

마. 사업의 착수·준공예정년월일

- (1) 착수일 : 1982. 3. 9
- (2) 준공예정일 : 당초 2016.12.31 → 변경 2017.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과 사용기간, 면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변경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20호

강일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41호(2003.11.10)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29호(2004.12.27)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0호(2006.12.27)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86호(2007.12.27)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08호(2008.6.19)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90호(2009.12.10)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02호(2010.11.11)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59호(2011.6.23)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32호(2012.12.13)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67호(2013.5.30)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63호(2013.12.26.)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03호(2014.03.20.)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65호(2014.12.26.)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51호(2015.05.28.)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04호(2016.12.24.)로 고시된 「강일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신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따로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강일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 강일도시개발구역
- 나.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강일도시개발구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360번지 일원	895,637.6	

-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국민임대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
- 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 명 칭 : SH공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대표자의 성명 : 변 창 흡

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1) 사업시행 기간 :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행기간	2003.11.10.~2016.12.31	2003.11.10.~2017.12.31	

- 변경사유 : 부분준공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2) 사업시행 방식 : 변경없음

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895,637.6	-	895,637.6	100.0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79,196.0	-	879,196.0	100.0	98.2%		
주택 용지	소 계	373,855.1	-	373,855.1	42.5		
	공동주택	373,524.6	-	373,524.6	42.5		
	근린생활시설	330.5	-	330.5	0.0	새마을금고	
상업 시설	소 계	11,226.0	-	11,226.0	1.3		
강일도 시개발사업	소 계	494,114.9	-	494,114.9	56.2	도로·하천중복결정 (1,244.8㎡) 제외	
	도로	156,406.3	-	156,406.3	17.9	하천중복결정(1,244.8㎡) 포함	
	보행자전용도로	3,663.6	-	3,663.6	0.4		
	공공청사	2,572.0	-	2,572.0	0.3	2개소	
	체육시설	1,763.0	-	1,763.0	0.2	1개소	
	사회복지시설	5,226.3	-	5,226.3	0.6	3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984.0	-	1,984.0	0.2	1개소	
	학교	49,531.0	-	49,531.0	5.6	초2, 중1, 고1개소	
	유치원	1,187.0	-	1,187.0	0.1	2개소	
	종교용지	7,509.1	-	7,509.1	0.9	8개소	
	광장	1,493.3	-	1,493.3	0.2	1개소	
	근린공원	120,797.3	-	120,797.3	13.7	2개소	
	어린이공원	10,615.2	-	10,615.2	1.2	4개소	
	완충녹지	23,923.0	-	23,923.0	2.7	10개소	
	경관녹지	14,500.6	-	14,500.6	1.6	11개소	
	연결녹지	8,596.4	-	8,596.4	1.0	2개소	
	공공공지	1,297.9	-	1,297.9	0.1	1개소	
	하천	33,870.9	-	33,870.9	3.9	도로중복결정(1,244.8㎡) 포함	
	자동차관련시설	4,542.9	-	4,542.9	0.5	3개소	
	자동차정류장	33,855.9	-	33,855.9	3.9	존치(공영차고지)	
	주차장	8,703.0	-	8,703.0	1.0	1개소	
	변전시설	3,321.0	-	3,321.0	0.4	1개소	
	일단 의 주택 지 조성 사업	합 계	16,441.6	-	16,441.6	100.0	1.8%
주택 용지		소 계	11,200.0	증) 20.0	11,220.0	68.2	
		단독주택	11,200.0	증) 20.0	11,220.0	68.2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5,241.6	감) 20.0	5,221.6	31.8	
		도로	3,853.6	증) 291.7	4,145.3	25.2	
		근린공원	124.0	감) 124.0	-	-	
		어린이공원	76.0	감) 76.0	-	-	
		완충녹지	764.0	감) 15.5	748.5	4.6	2개소
	경관녹지	424.0	감) 96.2	327.8	2.0	1개소	

2) 기반시설계획(변경)

① 교통시설

(1) 도로(변경)

가) 도로 총괄표

구분	폭원 (m)	합계			강일지구			일단의주택지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	32	8,043	163,923.5	28	7,498	160,069.9	4	545	3,853.6		
	변경	-	34	8,052	164,213.2	28	7,498	160,069.9	6	554	4,143.3		
계	기정	-	27	7,717	155,408.0	23	7,172	151,554.4	4	545	3,853.6		
	변경	-	29	7,726	155,697.7	23	7,172	151,554.4	6	554	4,143.3		
일반 도로	대로	소계	기정	25	2	1,115	31,959.7	2	1,115	31,959.7	-	-	-
		3류	기정	25	2	1,115	31,959.7	2	1,115	31,959.7	-	-	-
	중로	소계	기정	-	14	5,181	110,615.0	14	5,181	110,615.0	-	-	-
		1류	기정	20~22	7	4,130	96,614.8	7	4,130	96,614.8	-	-	-
		2류	기정	15	2	302	4,625.2	2	302	4,625.2	-	-	-
	소로	3류	기정	12	5	749	9,375.0	5	749	9,375.0	-	-	-
			변경	-	11	1,421	12,833.3	7	876	8,979.7	4	545	3,853.6
		소계	변경	-	13	1,430	13,123.0	7	876	8,979.7	6	554	4,143.3
		2류	기정	10	4	295	2,992.9	4	295	2,992.9	-	-	-
			기정	8	4	905	8,435.9	3	581	5,986.8	1	324	2,449.1
	변경		8	8	1,057	9,716.5	3	581	5,986.8	5	476	3,729.7	
	3류	기정	6	3	221	1,404.5	-	-	-	3	221	1,404.5	
		변경	6	1	78	413.6	-	-	-	1	78	413.6	
	보행자 전용 도로	계	기정	-	5	326	3,663.6	5	326	3,663.6	-	-	-
중로		2류	기정	15	2	149	2,240.3	2	149	2,240.3	-	-	-
		2류	기정	9	1	128	1,157.5	1	128	1,157.5	-	-	-
소로		3류	기정	6	2	49	265.8	2	49	265.8	-	-	-
	기타 도로부지	기정	-	-	-	4,851.9	-	-	4,851.9	-	-	-	

■ 변경 사유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변경사항 반영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57	25	주간선 도로	1,440 (591)	- 강일동 571-6	- 강일동 366-11	일반 도로		'00. 5.15	
기정	대로	3	1	25	주간선 도로	576 (524)	- 강일동 22-14	중1-1 강일동 472-1	일반 도로		'04.12.27	강일육교포함 (B=26m, L=52m)
기정	중로	1	1	20	주간선 도로	1,428	- 강일동 472-1	- 강일동 64-2	일반 도로		'04.12.27	
기정	중로	1	2	22	보조간선 도로	236	중1-3 강일동 299-9	- 강일동 89-16	일반 도로		'04.12.27	
기정	중로	1	3	22	보조간선 도로	497	대3-157 강일동 316-7	중1-7 강일동 333-2	일반 도로		'04.12.27	
기정	중로	1	7	22	보조간선 도로	453	중1-3 강일동 333-2	대3-157 강일동 367-1	일반 도로		'04.12.27	
기정	중로	1	4	22	보조간선 도로	828	대3-157 강일동 315-8	대3-157 강일동 367-2	일반 도로		'04.12.27	
기정	중로	1	5	22	집산 도로	114	중1-1 강일동 415-1	중1-6 강일동 431	일반 도로		'04.12.27	
기정	중로	1	6	22	보조간선 도로	574	중1-4 강일동 435-1	대3-1 강일동 471-9	일반 도로		'04.12.27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179	중1-1 강일동 63-7	중1-3 강일동 348-32	일반 도로		'04.12.27	
기정	중로	2	2	15	집산 도로	123	중1-3 강일동 302-1	중3-4 강일동 289-14	일반 도로		'04.12.27	
기정	중로	2	3	15	특수 도로	75	대3-157 강일동 359-78	- 강일동 359-42	보행자 전용 도로		'09. 4. 9	
기정	중로	2	4	15	특수 도로	74	대3-157 강일동 317-12	- 강일동 383-3	보행자 전용 도로		'09. 4. 9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170	중1-2 강일동 280	소2-2 강일동 277-9	일반 도로		'04.12.27	
기정	중로	3	2	12	국지 도로	130	중3-4 강일동 316-2	중2-2 강일동 304-3	일반 도로		'04.12.27	
기정	중로	3	3	12	집산 도로	190	3-157 강일동 575-8	중2-2 강일동 289-4	일반 도로		'04.12.27	
기정	중로	3	4	12	국지 도로	138	중1-3 강일동 316-2	중3-3 강일동 306-2	일반 도로		'04.12.27	
기정	중로	3	6	12	집산 도로	121	중1-4 강일동 450-1	소1-4 강일동 550-1	일반 도로		'04.12.27	

* ()는 사업지구내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71	중3-2 강일동 304-7	중3-3 강일동 304-4	일발 도로		'04.12.27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79	중3-2 강일동 304-13	중3-3 강일동 305	일발 도로		'04.12.27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60	중3-6 강일동 550-1	- 강일동 551-10	일발 도로		'04.12.27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85	중3-6 강일동 550-1	- 강일동 546-1	일발 도로		'04.12.27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324	중1-2 강일동 280	중1-2 강일동 328-14	일발 도로		'02. 9.26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부지
변경	소로	2	1	8	국지 도로	143 (110)	중1-2 강일동 280	중3-10 강일동 331-1	일발 도로		'02. 9.26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부지
변경	소로	2	9	8	국지 도로	108	소3-10 강일동 327	중1-2 강일동 328-14	일발 도로		'02. 9.26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부지
변경	소로	3	10	6	국지 도로	78	소2-1 강일동 331-1	소2-9 강일동 327	일발 도로		'02. 9.26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부지
기정	소로	2	2	8	집사로	303	중3-1 강일동 277-9	중2-2 강일동 289-4	일발 도로		'04.12.27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249	소2-3 강일동 571-1	소2-4 강일동 551-8	일발 도로		'04.12.27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29	중1-3 강일동 301	- 강일동 301	일발 도로		'09. 4. 9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67	소2-1 강일동 331-1	- 강일동 333-15	일발 도로		'02. 9.26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부지
변경	소로	2	10	8	국지 도로	67	소2-1 강일동 331-1	- 강일동 331-1	일발 도로		'02. 9.26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부지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65	소2-1 강일동 328-1	소2-1 강일동 328-4	일발 도로		'02. 9.26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부지
변경	소로	2	11	8	국지 도로	66	소2-1 강일동 328-1	소2-9 강일동 328-4	일발 도로		'02. 9.26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부지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89	소3-2 강일동 328-1	소2-1 강일동 333-5	일발 도로		'02. 9.26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부지
변경	소로	2	12	8	국지 도로	92	소2-11 강일동 328-18	소3-10 강일동 333-5	일발 도로		'02. 9.26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부지
기정	소로	3	8	6	특수 도로	39	대3-157 강일동 306-10	중3-4 강일동 304-2	보행자 전용 도로		'04.12.27	
기정	소로	3	9	3	특수 도로	10	대3-1 강일동 469-11	- 강일동 469-2	보행자 전용 도로		'10.11.11	
기정	소로	2	8	9	특수 도로	128	중1-6 강일동 435-1	중1-1 강일동 413	보행자 전용 도로		'13.05.30	

(2) 주차장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기정	1	주차장	노외주차장	강일동 292-2 일원	8,703	8,703	-	'00.3.20	

(3) 자동차정류장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기정	1	자동차정류장	자동차정류장	강동구 강일동 307-2일원	33,855.9	33,855.9	-	'98.10.7	강동권역 공영차고지

② 공간시설

(1) 녹지(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합계	기정			23개소	48,208.0	47,020.0	1,188.0		
	변경			23개소	48,096.3	47,020.0	1,076.3		
소계	기정			10개소	24,687.0	23,923.0	764.0		
	변경			10개소	24,671.5	23,923.0	748.5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강일동 300-3 일원	1,508.4	1,508.4	-	'04.12.27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강일동 308-3 일원	2,067	2,067	-	'04.12.27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강일동 449-1 일원	1,547.2	1,547.2	-	'04.12.27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강일동 469 일원	1,590.7	1,590.7	-	'04.12.27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강일동 419-1 일원	13,224.7	13,224.7	-	'04.12.27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강일동 371 일원	1,565	1,565	-	'04.12.27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강일동 368-9 일원	769.7	769.7	-	'04.12.27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강일동 331-1 일원	359.0	-	359.0	'04.12.27	
변경	9	녹지	완충녹지	강일동 331-1 일원	285.1	-	285.1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강일동 328-14 일원	615.6	615.6	-	'04.12.27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강일동 328-8 일원	1,439.7	1,034.7	405.0	'02. 9.26	
변경	11	녹지	완충녹지	강일동 328-8 일원	1,498.1	1,034.7	463.4	'02. 9.26	
소계	기정			11개소	14,924.6	14,500.6	424.0		
	변경			11개소	14,828.4	14,500.6	327.8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강일동 347-5 일원	711.2	711.2	-	'04.12.27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강일동 396 일원	1,283.8	1,283.8	-	'04.12.27	
기정	5	녹지	경관녹지	강일동 469-2 일원	677.1	677.1	-	'04.12.27	
기정	6	녹지	경관녹지	강일동 327-2 일원	424	-	424.0	'02. 9.26	
변경	6	녹지	경관녹지	강일동 327-2 일원	327.8	-	327.8	'02. 9.26	
기정	7	녹지	경관녹지	강일동 433 일원	200	200	-	'04.12.27	
기정	8	녹지	경관녹지	강일동 470-6 일원	182.8	182.8	-	'04.12.27	
기정	9	녹지	경관녹지	강일동 471-3 일원	2,158.8	2,158.8	-	'04.12.27	
기정	10	녹지	경관녹지	강일동 289-19일원	5,505	5,505	-	'04.12.27	
기정	11	녹지	경관녹지	강일동 565 일원	987.7	987.7	-	'04.12.27	
기정	12	녹지	경관녹지	강일동 541-2 일원	846.1	846.1	-	'04.12.27	
기정	13	녹지	경관녹지	강일동 450-5 일원	1,948.1	1,948.1	-	'10.11.11	
소계		녹지	연결녹지	2개소	8,596.4	8,596.4	-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강일동 325-1 일원	7,031.1	7,031.1	-	'09. 4. 9	
기정	2	녹지	연결녹지	강일동 409 일원	1,565.3	1,565.3	-	'13.05.30	

(2) 공원(변경)

가) 공원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합계	기정			6개소	131,488.5	131,412.5	200		
	변경			6개소	131,412.5	131,412.5	-		
소계	기정			2개소	120,797.3	120,673.3	124		
	변경			2개소	120,673.3	120,673.3	-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강일동 332-5 일원	34,591.6	34,467.6	124	'04.12.27	
변경	1	공원	근린공원	강일동 332-5 일원	34,467.6	34,467.6	-	'04.12.27	
기정	2	공원	근린공원	강일동 산8-1 일원	86,205.7	86,205.7	-	'04.12.27	
소계	기정			4개소	10,691.2	10,615.2	76		
	변경			4개소	10,615.2	10,615.2	-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강일동 333-1 일원	3,125.3	3,049.3	76	'04.12.27	
변경	1	공원	어린이공원	강일동 333-1 일원	3,049.3	3,049.3	-	'04.12.27	
기정	2	공원	어린이공원	강일동 317-1 일원	3,177.5	3,177.5	-	'04.12.27	
기정	3	공원	어린이공원	강일동 448-1 일원	2,588.4	2,588.4	-	'04.12.27	
기정	4	공원	어린이공원	강일동 429-1 일원	1,800	1,800	-	'04.12.27	

(3) 광장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기정	1	광장	일반광장	강일동 304-2 일원	1,493.3	1,493.3	-	'04.12.27	

(4) 공공공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기정	1	공공공지	공공공지	강일동 306-10 일원	1,297.9	1,297.9	-	'04.12.27	

③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기정	1	전기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강일동 543-2 일원	3,321	3,321	-	'04.12.27	

④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계				4개소	49,531	49,531	-		
기정	1	학교	중학교	강일동 347-3일원	11,839	11,839	-	'04.12.27	
기정	3	학교	초등학교	강일동 373-3일원	12,575	12,575	-	'92.10.22	
기정	4	학교	고등학교	강일동 439-2일원	14,075	14,075	-	'04.12.27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강일동 414-2일원	11,042	11,042	-	-	

(2) 공공청사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계				2 개소	2,572	2,572	-		
기정	1	공공청사	공공청사	강일동 304-13 일원	1,252	1,252	-	'04.12.27	
기정	2	공공청사	공공청사	강일동 304-5 일원	1,320	1,320	-	'04.12.27	

(3) 청소년수련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기정	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강일동 301 일원	1,984	1,984	-	'09. 4. 9	

(4)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계				3 개소	5,226.3	5,226.3	-		
기정	1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강일동 465-4일원	1,455.4	1,455.4	-	'04.12.27	
기정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강일동 301일원	1,227	1,227	-	'06.12.21	
기정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강일동 470 일원	2,543.9	2,543.9	-	'09. 4. 9	

(5) 체육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기정	1	체육시설	체육시설	강일동 301 일원	1,763	1,763	-	'04.12.27	

⑤ 방재시설
(1) 하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k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하천	지방 하천	강일동 346-1 (강일동 63-15)	고덕동 108 (강일동 89-6)		1.30 (0.86)	41,264 (33,870.9)	'01.2.28	() 강일지구내

사. 토지 등의 세목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생략

아.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 실시계획(변경) 인가사항 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변경 결정 내용과 같음

자. 도시관리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 변경(해제)결정(변경)

- 기존 개발계획을 기본으로 일부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을 입지여건을 고려한 토지이용 계획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6,441.6	-	16,441.6	100.0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주택용지	소 계	11,200.0	증)20.0	11,220.0	68.2	
		단 독 주택	11,200.0	증)20.0	11,220.0	68.2	
	공공시설용지	소 계	5,241.6	감)20.0	5,221.6	31.8	
		도 로	3,853.6	증)291.7	4,145.3	25.2	
		근 린 공 원	124.0	감)124.0	-	-	
		어 린 이 공 원	76.0	감)76.0	-	-	
		완 충 녹 지	764.0	감)15.5	748.5	4.6	2개소
		경 관 녹 지	424.0	감)96.2	327.8	2.0	1개소

2. 강일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 강일도시개발구역

나.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국민임대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

다.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강일도시개발구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360번지 일원	895,637.6	

라. 시행자 (변경없음)

- 명 칭 : SH공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대표자의 성명 : 변 창 흠

마. 시행기간 (변경)

1) 사업시행 기간 :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행기간	2003.11.10 ~ 2016.12.31	2003.11.10 ~ 2017.12.31	

- 변경사유 : 부분준공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2) 사업시행 방식 : 변경없음

바. 시행방식 (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

사. 수용인구 및 주택공급계획(변경없음)

1) 수용인구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384,724.6	100.0	6,824	19,107	2.8인/호	
강일지구	공동주택	373,524.6	97.0	6,756	18,917	
일단의 주택지	단독주택	기정	11,200	3.0	68	190
		변경	11,220	3.0	68	190

2) 주택공급계획

획지번호		면적(㎡)	세대수(호)	인구수(인)	용적률(%)	층 고	비 고
합계	기정	373,524.6	6,756	18,917		15층이하	임대 · 일반
1BL	기정	24,550	282	790	160	15층이하	
2BL	기정	34,098.3	442	1,238	160	15층이하	
3BL	기정	46,915	987	2,764	200	15층이하	
4BL	기정	38,390	748	2,094	200	15층이하	
5BL	기정	36,913	722	2,022	200	15층이하	
6BL	기정	29,879	553	1,548	200	15층이하	
7BL	기정	32,357	731	2,046	200	15층이하	
8BL	기정	27,450.9	410	1,148	160	15층이하	
9BL	기정	52,188.6	841	2,355	180	15층이하	
10BL	기정	40,971.8	694	1,943	200	15층이하	
11BL	기정	9,811	346	969	180	10층이하	

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변경)

1) 용도지역 결정조서

①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895,637.6	-	895,637.6	100.0	
주 거 지 역	651,703.9	-	651,703.9	72.8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378.2	-	20,378.2	2.3	
제2종 일반주거지역	631,325.7	-	631,325.7	70.5	
일 반 상 업 지 역	22,418.3	-	22,418.3	2.5	
자 연 녹 지 지 역	221,515.4	-	221,515.4	24.7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일원	895,637.6	-	895,637.6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① 교통시설

(1) 도로(변경)

가) 도로 총괄표

구분	폭원 (m)	합계			강일지구			일단의주택지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	32	8,043	163,923.5	28	7,498	160,069.9	4	545	3,853.6		
	변경	-	34	8,052	164,213.2	28	7,498	160,069.9	6	554	4,143.3		
계	기정	-	27	7,717	155,408.0	23	7,172	151,554.4	4	545	3,853.6		
	변경	-	29	7,726	155,697.7	23	7,172	151,554.4	6	554	4,143.3		
일반 도로	대로	소계	기정	25	2	1,115	31,959.7	2	1,115	31,959.7	-	-	-
		3류	기정	25	2	1,115	31,959.7	2	1,115	31,959.7	-	-	-
	중로	소계	기정	-	14	5,181	110,615.0	14	5,181	110,615.0	-	-	-
		1류	기정	20~22	7	4,130	96,614.8	7	4,130	96,614.8	-	-	-
		2류	기정	15	2	302	4,625.2	2	302	4,625.2	-	-	-
	소로	소계	기정	-	11	1,421	12,833.3	7	876	8,979.7	4	545	3,853.6
			변경	-	13	1,430	13,123.0	7	876	8,979.7	6	554	4,143.3
		1류	기정	10	4	295	2,992.9	4	295	2,992.9	-	-	-
		2류	기정	8	4	905	8,435.9	3	581	5,986.8	1	324	2,449.1
			변경	8	8	1,057	9,716.5	3	581	5,986.8	5	476	3,729.7
		3류	기정	6	3	221	1,404.5	-	-	-	3	221	1,404.5
			변경	6	1	78	413.6	-	-	-	1	78	413.6
	보행자 전용 도로	계	기정	-	5	326	3,663.6	5	326	3,663.6	-	-	-
		중로	2류	기정	15	2	149	2,240.3	2	149	2,240.3	-	-
2류			기정	9	1	128	1,157.5	1	128	1,157.5	-	-	-
3류		기정	6	2	49	265.8	2	49	265.8	-	-	-	
기타 도로부지	기정	-	-	-	4,851.9	-	-	4,851.9	-	-	-		

나)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57	25	주간선 도로	1,440 (591)	- 강일동 571-6	- 강일동 366-11	일반 도로		'00. 5.15	
기정	대로	3	1	25	주간선 도로	576 (524)	- 강일동 22-14	중1-1 강일동 472-1	일반 도로		'04.12.27	강일육교포함 (B=26m, L=52m)
기정	중로	1	1	20	주간선 도로	1,428	- 강일동 472-1	- 강일동 64-2	일반 도로		'04.12.27	
기정	중로	1	2	22	보조간선 도로	236	중1-3 강일동 299-9	- 강일동 89-16	일반 도로		'04.12.27	
기정	중로	1	3	22	보조간선 도로	497	대3-157 강일동 316-7	중1-7 강일동 333-2	일반 도로		'04.12.27	
기정	중로	1	7	22	보조간선 도로	453	중1-3 강일동 333-2	대3-157 강일동 367-1	일반 도로		'04.12.27	
기정	중로	1	4	22	보조간선 도로	828	대3-157 강일동 315-8	대3-157 강일동 367-2	일반 도로		'04.12.27	
기정	중로	1	5	22	집사로	114	중1-1 강일동 415-1	중1-6 강일동 431	일반 도로		'04.12.27	
기정	중로	1	6	22	보조간선 도로	574	중1-4 강일동 435-1	대3-1 강일동 471-9	일반 도로		'04.12.27	
기정	중로	2	1	15	집사로	179	중1-1 강일동 63-7	중1-3 강일동 348-32	일반 도로		'04.12.27	
기정	중로	2	2	15	집사로	123	중1-3 강일동 302-1	중3-4 강일동 289-14	일반 도로		'04.12.27	
기정	중로	2	3	15	특수 도로	75	대3-157 강일동 359-78	- 강일동 359-42	보행자 전용 도로		'09. 4. 9	
기정	중로	2	4	15	특수 도로	74	대3-157 강일동 317-12	- 강일동 383-3	보행자 전용 도로		'09. 4. 9	
기정	중로	3	1	12	집사로	170	중1-2 강일동 280	소2-2 강일동 277-9	일반 도로		'04.12.27	
기정	중로	3	2	12	국지 도로	130	중3-4 강일동 316-2	중2-2 강일동 304-3	일반 도로		'04.12.27	
기정	중로	3	3	12	집사로	190	3-157 강일동 575-8	중2-2 강일동 289-4	일반 도로		'04.12.27	
기정	중로	3	4	12	국지 도로	138	중1-3 강일동 316-2	중3-3 강일동 306-2	일반 도로		'04.12.27	
기정	중로	3	6	12	집사로	121	중1-4 강일동 450-1	소1-4 강일동 550-1	일반 도로		'04.12.27	

※ ()는 사업지구내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71	중3-2 강일동 304-7	중3-3 강일동 304-4	일반 도로		'04.12.27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79	중3-2 강일동 304-13	중3-3 강일동 305	일반 도로		'04.12.27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60	중3-6 강일동 550-1	- 강일동 551-10	일반 도로		'04.12.27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85	중3-6 강일동 550-1	- 강일동 546-1	일반 도로		'04.12.27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324	중1-2 강일동 280	중1-2 강일동 328-14	일반 도로		'02. 9.26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부지
변경	소로	2	1	8	국지 도로	143 (110)	중1-2 강일동 280	중3-10 강일동 331-1	일반 도로		'02. 9.26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부지
변경	소로	2	9	8	국지 도로	108	소3-10 강일동 327	중1-2 강일동 328-14	일반 도로		'02. 9.26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부지
변경	소로	3	10	6	국지 도로	78	소2-1 강일동 331-1	소2-9 강일동 327	일반 도로		'02. 9.26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부지
기정	소로	2	2	8	집사로	303	중3-1 강일동 277-9	중2-2 강일동 289-4	일반 도로		'04.12.27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249	소2-3 강일동 571-1	소2-4 강일동 551-8	일반 도로		'04.12.27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29	중1-3 강일동 301	- 강일동 301	일반 도로		'09. 4. 9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67	소2-1 강일동 331-1	- 강일동 333-15	일반 도로		'02. 9.26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부지
변경	소로	2	10	8	국지 도로	67	소2-1 강일동 331-1	- 강일동 331-1	일반 도로		'02. 9.26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부지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65	소2-1 강일동 328-1	소2-1 강일동 328-4	일반 도로		'02. 9.26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부지
변경	소로	2	11	8	국지 도로	66	소2-1 강일동 328-1	소2-9 강일동 328-4	일반 도로		'02. 9.26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부지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89	소3-2 강일동 328-1	소2-1 강일동 333-5	일반 도로		'02. 9.26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부지
변경	소로	2	12	8	국지 도로	92	소2-11 강일동 328-18	소3-10 강일동 333-5	일반 도로		'02. 9.26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부지
기정	소로	3	8	6	특수 도로	39	대3-157 강일동 306-10	중3-4 강일동 304-2	보행자 전용 도로		'04.12.27	
기정	소로	3	9	3	특수 도로	10	대3-1 강일동 469-11	- 강일동 469-2	보행자 전용 도로		'10.11.11	
기정	소로	2	8	9	특수 도로	128	중1-6 강일동 435-1	중1-1 강일동 413	보행자 전용 도로		'13.05.30	

(2) 주차장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기정	1	주차장	노외주차장	강일동 292-2 일원	8,703	8,703	-	'00.3.20	

(3) 자동차정류장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기정	1	자동차정류장	자동차정류장	강동구 강일동 307-2일원	33,855.9	33,855.9	-	'98.10.7	강동권역 공영차고지

② 공간시설

(1) 녹지(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합계	기정			23개소	48,208.0	47,020.0	1,188.0		
	변경			23개소	48,096.3	47,020.0	1,076.3		
소계	기정			10개소	24,687.0	23,923.0	764.0		
	변경			10개소	24,671.5	23,923.0	748.5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강일동 300-3 일원	1,508.4	1,508.4	-	'04.12.27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강일동 308-3 일원	2,067	2,067	-	'04.12.27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강일동 449-1 일원	1,547.2	1,547.2	-	'04.12.27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강일동 469 일원	1,590.7	1,590.7	-	'04.12.27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강일동 419-1 일원	13,224.7	13,224.7	-	'04.12.27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강일동 371 일원	1,565	1,565	-	'04.12.27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강일동 368-9 일원	769.7	769.7	-	'04.12.27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강일동 331-1 일원	359.0	-	359.0	'04.12.27	
변경	9	녹지	완충녹지	강일동 331-1 일원	285.1	-	285.1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강일동 328-14 일원	615.6	615.6	-	'04.12.27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강일동 328-8 일원	1,439.7	1,034.7	405.0	'02. 9.26	
변경	11	녹지	완충녹지	강일동 328-8 일원	1,498.1	1,034.7	463.4	'02. 9.26	
소계	기정			11개소	14,924.6	14,500.6	424.0		
	변경			11개소	14,828.4	14,500.6	327.8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강일동 347-5 일원	711.2	711.2	-	'04.12.27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강일동 396 일원	1,283.8	1,283.8	-	'04.12.27	
기정	5	녹지	경관녹지	강일동 469-2 일원	677.1	677.1	-	'04.12.27	
기정	6	녹지	경관녹지	강일동 327-2 일원	424	-	424.0	'02. 9.26	
변경	6	녹지	경관녹지	강일동 327-2 일원	327.8	-	327.8	'02. 9.26	
기정	7	녹지	경관녹지	강일동 433 일원	200	200	-	'04.12.27	
기정	8	녹지	경관녹지	강일동 470-6 일원	182.8	182.8	-	'04.12.27	
기정	9	녹지	경관녹지	강일동 471-3 일원	2,158.8	2,158.8	-	'04.12.27	
기정	10	녹지	경관녹지	강일동 289-19일원	5,505	5,505	-	'04.12.27	
기정	11	녹지	경관녹지	강일동 565 일원	987.7	987.7	-	'04.12.27	
기정	12	녹지	경관녹지	강일동 541-2 일원	846.1	846.1	-	'04.12.27	
기정	13	녹지	경관녹지	강일동 450-5 일원	1,948.1	1,948.1	-	'10.11.11	
소계		녹지	연결녹지	2개소	8,596.4	8,596.4	-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강일동 325-1 일원	7,031.1	7,031.1	-	'09. 4. 9	
기정	2	녹지	연결녹지	강일동 409 일원	1,565.3	1,565.3	-	'13.05.30	

(2) 공원(변경)

가) 공원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합계	기정			6개소	131,488.5	131,412.5	200		
	변경			6개소	131,412.5	131,412.5	-		
소계	기정			2개소	120,797.3	120,673.3	124		
	변경			2개소	120,673.3	120,673.3	-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강일동 332-5 일원	34,591.6	34,467.6	124	'04.12.27	
변경	1	공원	근린공원	강일동 332-5 일원	34,467.6	34,467.6	-	'04.12.27	
기정	2	공원	근린공원	강일동 산8-1 일원	86,205.7	86,205.7	-	'04.12.27	
소계	기정			4개소	10,691.2	10,615.2	76		
	변경			4개소	10,615.2	10,615.2	-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강일동 333-1 일원	3,125.3	3,049.3	76	'04.12.27	
변경	1	공원	어린이공원	강일동 333-1 일원	3,049.3	3,049.3	-	'04.12.27	
기정	2	공원	어린이공원	강일동 317-1 일원	3,177.5	3,177.5	-	'04.12.27	
기정	3	공원	어린이공원	강일동 448-1 일원	2,588.4	2,588.4	-	'04.12.27	
기정	4	공원	어린이공원	강일동 429-1 일원	1,800	1,800	-	'04.12.27	

(3) 광장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기정	1	광장	일반광장	강일동 304-2 일원	1,493.3	1,493.3	-	'04.12.27	

(4) 공공공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기정	1	공공공지	공공공지	강일동 306-10 일원	1,297.9	1,297.9	-	'04.12.27	

③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기정	1	전기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강일동 543-2 일원	3,321	3,321	-	'04.12.27	

④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계				4개소	49,531	49,531	-		
기정	1	학교	중학교	강일동 347-3일원	11,839	11,839	-	'04.12.27	
기정	3	학교	초등학교	강일동 373-3일원	12,575	12,575	-	'92.10.22	
기정	4	학교	고등학교	강일동 439-2일원	14,075	14,075	-	'04.12.27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강일동 414-2일원	11,042	11,042	-	-	

(2) 공공청사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계				2 개소	2,572	2,572	-		
기정	1	공공청사	공공청사	강일동 304-13 일원	1,252	1,252	-	'04.12.27	
기정	2	공공청사	공공청사	강일동 304-5 일원	1,320	1,320	-	'04.12.27	

(3) 청소년수련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기정	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강일동 301 일원	1,984	1,984	-	'09. 4. 9	

(4)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계				3 개소	5,226.3	5,226.3	-		
기정	1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강일동 465-4일원	1,455.4	1,455.4	-	'04.12.27	
기정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강일동 301일원	1,227	1,227	-	'06.12.21	
기정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강일동 470 일원	2,543.9	2,543.9	-	'09. 4. 9	

(5) 체육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기정	1	체육시설	체육시설	강일동 301 일원	1,763	1,763	-	'04.12.27	

⑤ 방재시설
(1) 하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k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하천	지방 하천	강일동 346-1 (강일동 63-15)	고덕동 108 (강일동 89-6)		1.30 (0.86)	41,264 (33,870.9)	'01.2.28	() 강일지구내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획지번호	면 적(㎡)	세대수(호)	인구수(인)	용적률(%)	주택유형	층 고	비 고	
A1	기정	24,550	282	790	160	X3, X4	15층이하	임대 • 일반
A2	기정	34,098.3	442	1,238	160	X3, X4, X5	15층이하	
A3	기정	46,915	987	2,764	200	X1, X3, X4	15층이하	
A4	기정	38,390	748	2,094	200	X2, X3, X4	15층이하	
A5	기정	36,913	722	2,022	200	X2, X3, X4	15층이하	
A6	기정	29,879	553	1,548	200	X1, X3, X4	15층이하	
A7	기정	32,357	731	2,046	200	X1, X3, X4	15층이하	
A8	기정	27,450.9	410	1,148	160	X2, X3, X4	15층이하	
A9	기정	52,188.6	841	2,355	180	X2, X3, X4, X5	15층이하	
A10	기정	40,971.8	694	1,943	200	X2, X3, X4, X5	15층이하	
A11	기정	9,811	346	969	180	X0	10층이하	
합계	기정	373,524.6	6,756	18,917	-	X0, X1, X2, X3, X4, X5	15층이하	

(2) 상업용지(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	비 고
C-1	1	533		C-3	1	351	
	2	560			2	384	
C-2	1	678			3	364	
	2	651			4	389	
	3	664			5	459	
	4	655			6	372	
	5	642			7	381	
C-4	1	772		8	353		
	2	800		C-5	1	1,218	
	3	1,000		계	-	11,226	

(3) 기타용지(변경없음)

용 지 분 류		구분	획지번호	면 적 (㎡)	비 고
종 교 시 설 용 지		기정	종-1	660	
		기정	종-2	660	
		기정	종-3	1,749	
		기정	종-4	660	
		기정	종-5	660	
		기정	종-6	660.2	
		기정	종-7	1,799.5	
		기정	종-8	660.4	
교 육 시 설 용 지	유치원	기정	유-1	542	
		기정	유-2	645	
기 타 시 설 용 지	체육시설	기정	체-1	1,763	
	자동차관련시설	기정	자-1	1,569.2	
		기정	자-2	1,552.9	
		기정	자-3	1,420.8	

②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 용도계획(변경없음)

가)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구 분	지 정 용 도	불 허 용 도
공동주택용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 지정용도 이외용도

나)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지 정 용 도
근린생활시설용지	- 새마을금고법 제28조에 의한 새마을금고 사업(신용사업 50%이상)

※ 주변 주거지 여건을 감안하여 지정용도의 허용용도 제한

다)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용 도	
불허 용도	단 독 주 택	전체불허
	공 동 주 택	전체불허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실외골프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동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화물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의 료 시 설	격리병원, 장례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학교, 자연권수련시설
	운 동 시 설	골프연습장
	업 무 시 설	-
	숙 박 시 설	전체불허
	위 락 시 설	전체불허
	공 장	전체불허
	창 고 시 설	전체불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불허(주유소에 한하여 허용)
	자동차관련시설	불허(주차장, 세차장에 한하여 허용)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전체불허
	공공용시설	불허(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에 한하여 허용)
	관광휴게시설	불허(휴게소에 한하여 허용)

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서울시조례에서는 허용하는 용도이나 지구단위계획에서 불허용도로 지정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2조②항 근거에 의하여 공동주택 인근 상업시설내 위락시설 불허

라) 자동차관련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지 정 용 도	불 허 용 도
자동차관련시설용지	- 택시차고지 및 그 부속건물	- 지정용도 이외용도

※ 기존 택시업체 용지공급 등 여건을 감안하여 지정용도의 허용용도 제한

라)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지 정 용 도	불 허 용 도
종교시설용지	- 종교집회장(①~⑤, ⑦~⑧) 종교집회장 및 노유자시설(⑥)	- 지정용도 이외용도

※ 기존 종교시설용지⑥ 내 노유자시설 추가허용

마)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지 정 용 도	불 허 용 도
종교시설용지	- 종교집회장(①~⑤, ⑦~⑧) 종교집회장 및 노유자시설(⑥)	- 지정용도 이외용도

- ※ 기존 종교시설용지⑥ 내 노유자시설 추가허용
- ③ 건축물 용적률·건폐율·높이계획(변경없음)
- (1)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구 분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공동주택용지	40%이하	180%이하(A11)	최고 10층 이하
		160%이하 (A1, A2, A8)	최고 15층 이하
		180%이하 (A9)	
		200%이하 (A3, A4, A5, A6, A7, A10)	

※ 공동주택용지 A1의 경우 고속도로변으로부터의 소음 등 환경악영향 저감 차원에서 고속도로변 대지경계선에서부터 50m까지 5층 이하 적용

- (2)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상업시설용지	60%이하	600%이하	최고 10층(40m) 이하

- (3) 기타 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기 정	변 경
주차장	60%이하	400%이하	최고 7층 이하	-
자동차정류장	20%이하	50%이하	최고 3층(12m) 이하	-
학교시설	60%이하	200%이하	최고 5층(20m) 이하	-
공공청사	60%이하	300%이하	최고 5층(25m) 이하	-
사회복지시설	60%이하	200%이하	최고 5층(20m) 이하	-
근린생활시설	60%이하	200%이하	최고 5층(20m) 이하	-
전기공급설비	50%이하	150%이하	최고 3층(12m) 이하	-
종교시설	60%이하	200%이하	최고 3층(15m) 이하	-
청소년수련시설	60%이하	200%이하	최고 5층(20m) 이하	-
자동차관련시설	60%이하	200%이하	최고 3층(12m) 이하	-
유치원	60%이하	200%이하	최고 3층(12m) 이하	-

④ 배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제 어 요 소 (건축한계선)	내 용
공동주택용지		3m, 6m	• 대지경계선에서 20m이상 주요간선가로변 6m, 그 외 지역 3m 건축한계선을 설정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 공동주택용지의 진입부 • 부대복리시설 : 주요 보행결절점
상업용지	이면부 (C-1,3,4)	1m	• 대지경계선에서 1m 건축한계선을 설정하여 전면공지 조성
	간선가로변 (C-2, 5)	3m	• 대지경계선에서 3m 건축한계선을 설정하여 전면공지 조성
종교시설용지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유치원 청소년 수련시설 근린생활시설		1m, 3m	• 대지경계선에서 1m, 3m 건축한계선을 설정하여 전면공지 조성 (주요간선도로변 3m, 주요간선도로의 도로변(광장 포함) 1m) ※ 지구내 일단의주택단지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계획 변경에 따른 종교용지 일부 건축한계선 폐지
전기공급설비 자동차관련시설		3m, 6m	• 대지경계선에서 3m, 6m 건축한계선을 설정하여 차폐조경 설치 • 차폐조경을 통한 주거위해시설로부터 주거환경보호

⑤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제어요소	적 용 구 간	제 어 내 용
전면공지	•간선가로변 건축한계선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이면부 건축한계선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차폐조경	•자동차관련시설, 전기공급시설(주거위해시설)	•폭 3m, 6m 건축한계선을 설정하여 주거환경을 보호

5)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기 정	변 경
제 38 조 (전면공지에 관한 사항) ① 상업용지 시행지침 제24조를 준용한다.	제 38 조 (전면공지에 관한 사항) ① 건축선후퇴에 따른 전면공지내에는 주차장, 담장 등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하여야 한다. 1.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인접보도의 포장재 및 높이가 같도록 조성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변에 조성되는 전면공지는 보행자통행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3. 단, 학교시설 용지에 대해 전면공지의 일체화된 조경공간 조성을 위한 조경은 가능하다.

자.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관계기관(부서)과 사전 협의사항 이행 (변경없음) : 생략

차.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지형도면고시 도서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14일 이상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02)2133-4647)
 -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02)3425-6024)
 - SH공사 택지계획부(☎ 02)3410-759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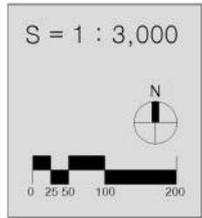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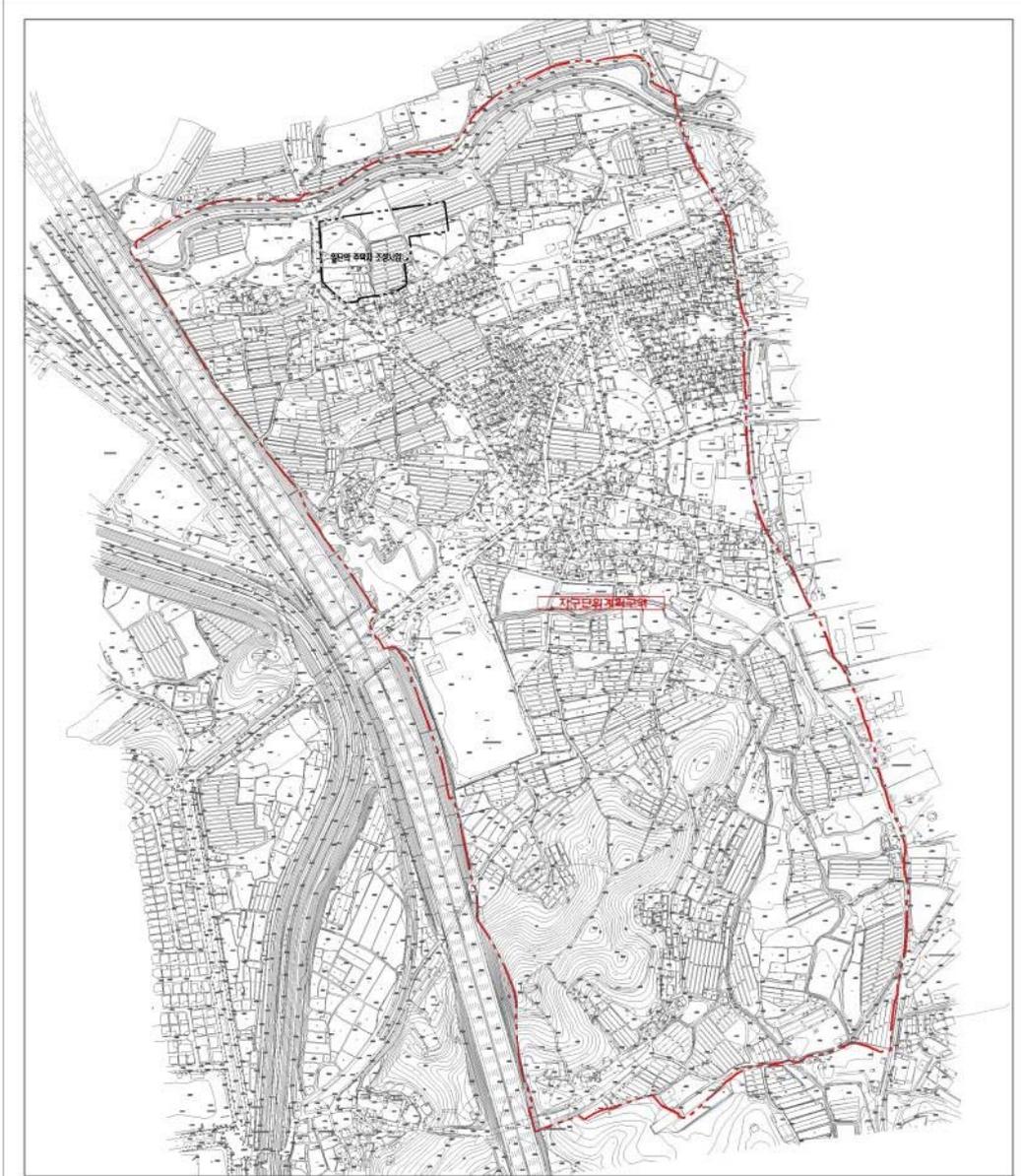
강 일 도시
개 발 사업

토지이용계획도

시우계	임수난수연시설	공영차고지
방음벽	학 교(유, 초, 중, 고)	민 천 소
공공광장	과 장	주 차 장
공동주택 단지-중고층	종교용지	도 로
공동주택 단지-중저층	공원공원	보행자친용도로
근린생활시설용지	어린이공원	
말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부지	완충녹지	
상업시설용지	완충녹지	
공공청사	환경 녹지	
체육시설	지동차관현시설	
사회복지시설	하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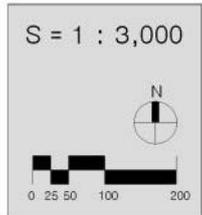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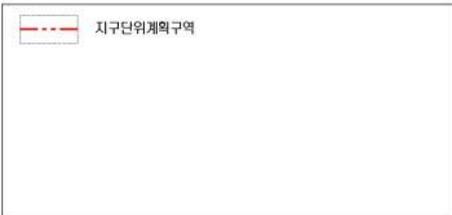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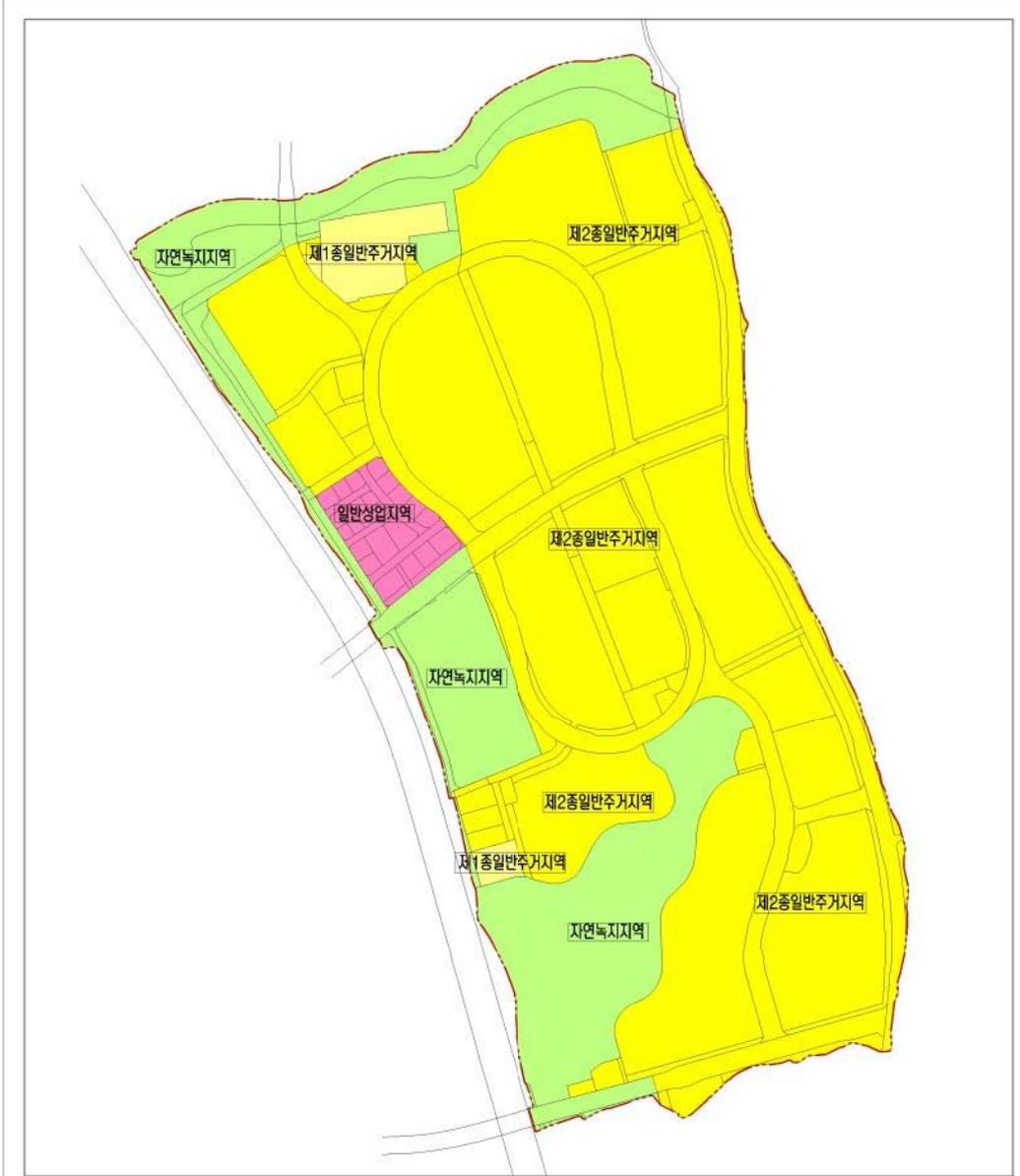


**강 일 도 시
개 발 사 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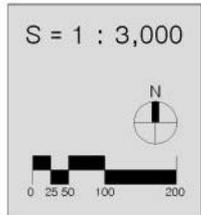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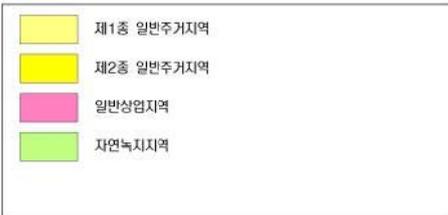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강 일 도 시
개 발 사 업**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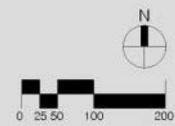


강 일 도 시
개 발 사 업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주거장	경소년수련시설
자동차정류장	체육시설
근린공원	사립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전기공급설비
관공복지	공공공지
경관복지	야 전
일반광장	대 로
관광정사	중 로
역 교(주,중,고)	소 로
	보행자도로

S = 1 : 3,000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변경)



**강 일 도 시
개 발 사 업**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주거지역		도로
	공업지역		철도
	공공시설		수역
	녹지		기념물
	수역		기념물

S = 1 : 3,000

N

0 25 50 100 2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22호

**도시관리계획(한남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2호(2013. 11. 28.)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된 용산구 한남동 93번지 일원 「한남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한남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 기 결정('13. 11. 28.)된 한남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특별계획구역 내 부정형 획지를 정형화하고, 획지계획 변경에 따른 적정 공공시설 확보를 위하여 한남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자 함.

II. 한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①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③ 획지 및 건축물에 등에 관한 결정 (변경)
 -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나. 공동개발 결정(변경)조서

도 면 표시번호	지번	면적(m ²)		계획내용	계획사유	비고	
		기정	변경				
B 4	합계	6,283.0	6,283.0	특별계획구역②	• 획지 정형화를 위한 획지 선형 및 면적 변경 - ②-1 : 1단계 - ②-2 : 2단계 - 90-1대, 91-5대, 91-6도, 93대, 97-1대는 ②-1, ②-2에 각각 포함		
	소계	3,308.0	3,530.4				
	87-1전	3.0	3.0				②-1
	87-4대	101.0	101.0				②-1
	87-5전	148.0	148.0				②-1
	87-6전	76.0	76.0				②-1
	89-1대	168.0	168.0				②-1
	89-3대	88.0	88.0				②-1
	90-3대	50.0	50.0				②-1
	91-1대	344.0	344.0				②-1
	91-2대	165.0	165.0				②-1
	91-3대	149.0	149.0				②-1
	91-4대	-	149.0				②-1
	91-8대	3.0	3.0				②-1
	93대	651.0	648.4				②-1/②-2
	94-1대	165.0	165.0				②-1
	94-2대	116.0	116.0				②-1
	94-3대	119.0	119.0				②-1
	94-4대	132.0	132.0				②-1
	94-5대	10.0	10.0				②-1
	94-6대	16.0	16.0				②-1
	94-8대	69.0	69.0				②-1
	240-5대	11.0	11.0				②-1
	90-1대	336.1	342.4				②-1/②-2
	91-5대	-	41.8				②-1/②-2
	91-6도	46.3	74.2				②-1/②-2
97-1대	341.6	341.6			②-1/②-2		
소계	2,975.0	2,752.6					
B 4	91-4대	149.0	-			②-2	
	91-5대	165.0	123.2			②-1/②-2	
	95-1대	126.0	126.0			②-2	
	95-2대	166.0	166.0			②-2	
	95-12대	360.0	360.0			②-2	
	95-13대	357.0	357.0			②-2	
	95-14대	357.0	357.0			②-2	
	95-15대	188.0	188.0			②-2	
	95-16대	79.0	79.0			②-2	
	95-17대	66.0	66.0			②-2	
	95-19도	4.0	4.0			②-2	
	96-1대	334.0	334.0			②-2	
	96-5대	380.0	380.0			②-2	
	90-1대	33.9	27.6			②-1/②-2	
	91-6도	45.7	17.8			②-1/②-2	
	93대	-	2.6			②-1/②-2	
97-1대	164.4	164.4			②-1/②-2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특별계획구역② 내 획지 선형 및 면적 변경 - ②-1 획지 : 3,308m ² →3,530.4m ² (증 222.4m ²) - ②-2 획지 : 2,975m ² →2,752.6m ² (감 222.4m ²)	•특별계획구역② 내 획지 정형화를 위한 획지 선형 및 면적 변경 ※ 특별계획구역 면적(6,283.0m ²)은 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②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안)
면적		• 6,283㎡	• 변경없음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5,788.8㎡), 준주거지역(494.2㎡) → 변경 없음 : 구역변경에 따른 일부제척	• 변경없음
건폐율		• 60%이하 - 고층부 탐상형구조시 40%이하 권장	• 변경없음
용적률		• 기준용적률 : 310%이하 • 허용용적률 : 600%이하 • 상한용적률 : 800%이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포함한 연면적은 전체연면적의 70%이하 ※비주거용도(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는 용적률의 10%이상 ※주택연면적 비율 : 60%이상 ~ 70%미만 적용	• 변경없음
높이		• 최고높이 : 55m이하	• 변경없음
용도	권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숙박시설(「관광진흥법」상 호텔) - 관광호텔 추가 인센티브 제공은 미반영 (추가 인센티브는 별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 숙박시설과 주거시설 복합 불허	• 변경없음
	불허	•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창고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장례식장	• 변경없음
건축선		• 건축한계선: 소로변 2m, 대로변 3m	• 변경없음
공개공지		• 위치 지정 : 독서당길변 대상지 중앙부 - 대상지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공공보행 통로와 연계할 수 있도록 독서당길변으로 위치 지정	• 변경없음
공공보행통로		• 대상지의 개방감확보 및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공개공지와 독서당길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조성 (6m이상)	• 변경없음
기반시설설치		• 중로 및 소로 개설 • 특별계획구역 ① 미시행으로 북측현황도로를 유지함에 따라 공원 미개설	• 중로 및 소로 개설 • 특별계획구역 ① 미시행으로 북측현황도로를 유지함에 따라 공원 미개설 • 공공시설 (건축물)용도 - ②-1 : 사회복지시설, ②-2 :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시설제공비율 (순부담률)		• 순부담률 : 27.3% - 도로 : 17.2%, 건축물 : 10.1%	• 변경없음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 보행동선은 공원과 연계성 확보	• 변경없음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 일반상업지역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준수 • 주거복합계획의 건축물 형태(탐상형)는 35%이하 계획시 인센티브 완화적용	• 변경없음
기타		• 순부담률 : 27.3% - 도로 : 17.2%, 건축물 : 10.1%	• 변경없음

-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 Ⅲ.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 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가. 특별계획구역②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②	특별계획구역②	한남동 93번지 일원	6,283	-	6,283	-

-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6,283.0	-	6,283.0	100.0	
준주거지역	494.2	-	494.2	7.9	
일반상업지역	5,788.8	-	5,788.8	92.1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 1) 미관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3	미관지구	중심지	독서당길변	16,800 (1,039)	700 (92)	양측12	서고73호 (82.02.18)	

※ ()는 특별계획구역② 사항임

-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연번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 용 형 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1	기정	대로	3	26	20~25	보조 간선도로	7,800 (1,115)	한남동 548-2	한남동 2-23	일반도로	총고 제722호 ('36.12.26)	
2	기정	중로	1	464	20~24	보조 간선도로	300	한남동 88-1	한남동 522-45	일반도로	서고 제17호 ('02.01.15)	
3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320	한남동 87-9	한남동 520-6	일반도로	서고 제17호 ('02.01.15)	
4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46	한남동 97-1	한남동 97-1	일반도로	서고 제2011-262호 ('11.09.08.)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획 지				구성비 (%)	비고
		위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283.0	-	6,283.0	100.0	
②-1 획지	특별계획 구역②	한남동 93번지 일원	2,700.2	증) 215.3	2,915.5	46.4	대지
			607.8	증) 7.1	614.9	9.8	도로(기부채납)
②-2 획지	특별계획 구역②	한남동 93번지 일원	2,502.2	감) 215.3	2,286.9	36.4	대지
			472.8	감) 7.1	465.7	7.4	도로(기부채납)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획지 선형 및 면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1 획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 : 2,700.2㎡ → 2,915.5㎡ (증 215.3㎡) · 도로 : 607.8㎡ → 614.9㎡ (증 7.1㎡) - ②-2 획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 : 2,502.2㎡ → 2,286.9㎡ (감 215.3㎡) · 도로 : 472.8㎡ → 465.7㎡ (감 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계획구역② 내 획지 정형화를 위한 획지 선형 및 면적 변경 ※ 특별계획구역 면적(6,283.0㎡)은 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공공시설 부담에 관한 계획 (변경)

가.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

- 특별계획구역② 단계별 개발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계획 수립
 - 획지정형화에 따른 획지별 기반시설 부담계획 변경
- 특별계획구역② 기반시설 부담 기준(변경없음) : 순부담 17.2%

구분	도면 번호	공공시설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②-1	소 계		607.8	증) 7.1	614.9	획지정형화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면적 변경
	I	독서당길변 동측 도로확폭, 도로개설	607.8	증) 7.1	614.9	
②-2	소 계		472.8	감) 7.1	465.7	
	II	독서당길변 동측 도로확폭, 도로개설	472.8	감) 7.1	465.7	
계	-	기부채납면적	1,080.6		1,080.6	순부담률: 17.2%

주)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은 조정 가능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획지 별 기반시설 부담면적 변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②-1획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 : 607.8㎡ → 614.9㎡ (증 7.1㎡) 2) ②-2획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 : 472.8㎡ → 465.7㎡ (감 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계획구역② 획지 정형화에 따른 획지 별 기반시설 부담면적 변경 ※ 총 기부채납면적(1,080.6㎡) 및 순부담률(17.2%)은 변경없음

나. 공공시설 설치계획 : 변경

- 상한용적률 800%이하 범위 내 공공시설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 획지정형화에 따른 공공시설 면적 및 위치 변경 : 총 공공시설연면적 2,493.8㎡→2,495.0㎡ (증 1.2㎡)
- 특별계획구역 ②구역 공공시설 부담기준(변경없음) : 순부담 10.1%[637.4㎡→637.73㎡ (증 0.33㎡)]

1) 획지 ②-1

구분	내용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공시설연면적	1,212.0㎡	1,330.0㎡	• 청소년수련시설	• 사회복지시설
표준공사비	1,630,000원/㎡		• 국토해양부 고시 (2012년도 표준공사비)	
부지가액	12,480,000원/㎡		• 일반상업지역 최고 개별공시지가 : 6,240,000원/㎡ • 특별계획구역 ② 내 최고 공시지가 • 인근토지 실거래사례 없음 : 개별공시지가 2배	
부속토지	151.50㎡	166.25㎡	• 공공시설연면적 ÷ 상한용적률	
			· 1,212.0㎡ ÷ 800% = 151.50㎡ ※대지면적(2,700.2㎡)의 5.6%	· 1,330.0㎡ ÷ 800% = 166.25㎡ ※대지면적(2,915.5㎡)의 5.7%
환산 부지면적	158.30㎡	173.71㎡	• 표준건축비 × 공공시설연면적 ÷ 부지가액	
			· 1,630,000 원/㎡ × 1,212.0㎡ ÷ 12,480,000원/㎡ = 158.3㎡ ※대지면적(2,700.2㎡)의 5.9%	· 1,630,000 원/㎡ × 1,330.0㎡ ÷ 12,480,000원/㎡ = 173.71㎡ ※대지면적(2,915.5㎡)의 5.96%
총기부채납면적	309.80㎡	339.96㎡	• 11.5% (부지 5.6%, 건축물 5.9%)	• 11.7% (부지 5.7%, 건축물 5.96%)

2) 획지 ②-2

구분	내용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공시설연면적	1,281.8㎡	1,165.0㎡	• 청소년수련시설	
표준공사비	1,630,000원/㎡		• 국토해양부 고시 (2012년도 표준공사비)	
부지가액	12,480,000원/㎡		• 일반상업지역 최고 개별공시지가 : 6,240,000원/㎡ • 특별계획구역 ② 내 최고 공시지가 • 인근토지 실거래사례 없음 : 개별공시지가 2배	
부속토지	160.2㎡	145.62㎡	• 공공시설연면적 ÷ 상한용적률	
			· 1,281.8㎡ ÷ 800% = 160.2㎡ ※대지면적(2,502.2㎡)의 6.4%	· 1,165.0㎡ ÷ 800% = 145.62㎡ ※대지면적(2,286.9㎡)의 6.37%
환산 부지면적	167.4㎡	152.16㎡	• 표준건축비 × 공공시설연면적 ÷ 부지가액	
			· 1,630,000 원/㎡ × 1,281.8㎡ ÷ 12,480,000원/㎡ = 167.4㎡ ※대지면적(2,502.2㎡)의 6.7%	· 1,630,000 원/㎡ × 1,165.0㎡ ÷ 12,480,000원/㎡ = 152.16㎡ ※대지면적(2,286.9㎡)의 6.65%
총기부채납면적	327.6㎡	297.77㎡	• 13.1% (부지 6.4%, 건축물 6.7%)	• 13.0% (부지 6.37%, 건축물 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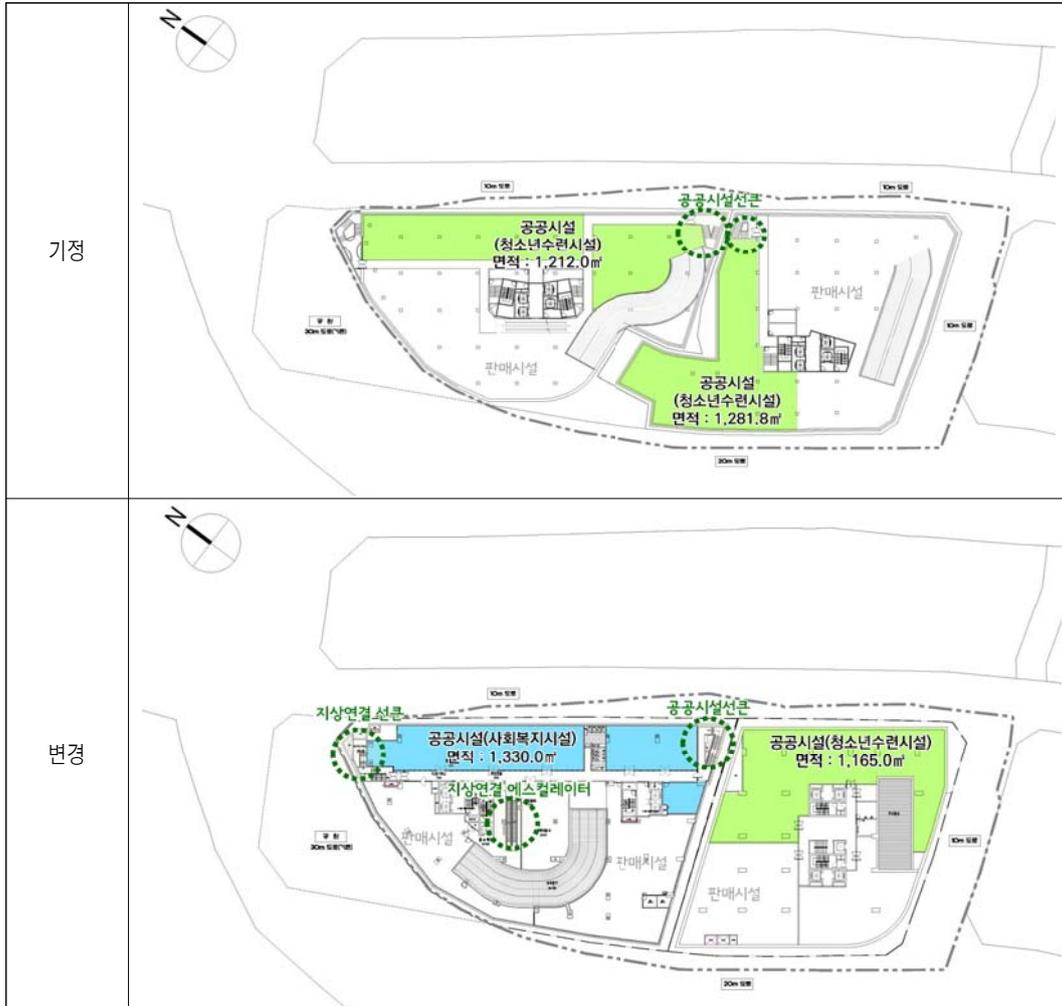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시설 설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1 획지 공공시설 용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시설 → 사회복지시설(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산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내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추진 계획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도가 높은 공공시설로 용도변경 -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시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시설연면적 및 위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설치연면적 : 2,493.8㎡→2,495.0㎡ (증 1.2㎡) - ②-1 획지 : 1,212.0㎡→1,330.0㎡ (증 118㎡) - ②-2 획지 : 1,281.8㎡→1,165.0㎡ (감 11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획지 정형화에 따른 공공시설연면적 및 위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 총 순부담률(10.1%)은 변경없음

3) 공공시설 설치계획

시설구상	<p>[②-1 획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산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내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추진 계획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설치 : 일자리경제과 운영 - 일자리경제과 :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회서비스 확대) <p>[②-2 획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중심의 기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 (용산구 시설운영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산구 가정복지과 문화센터 건립계획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 자기실현(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문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교육과 문화증진, 사회적 창의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 - 청소년의 자존감 향상 및 권익증진을 도모코자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 노래연습실, 댄스연습실, 보드게임실, 자료열람실, 인터넷검색실, 휴게실 등. 끝 ○ 설치계획 (지하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1 : 1,330.0㎡ (사회복지시설 :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 ②-2 : 1,165.0㎡ (청소년수련시설)
------	--

■ 설치계획(지하1층)



- 4. 건축물의 건축선·형태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IV.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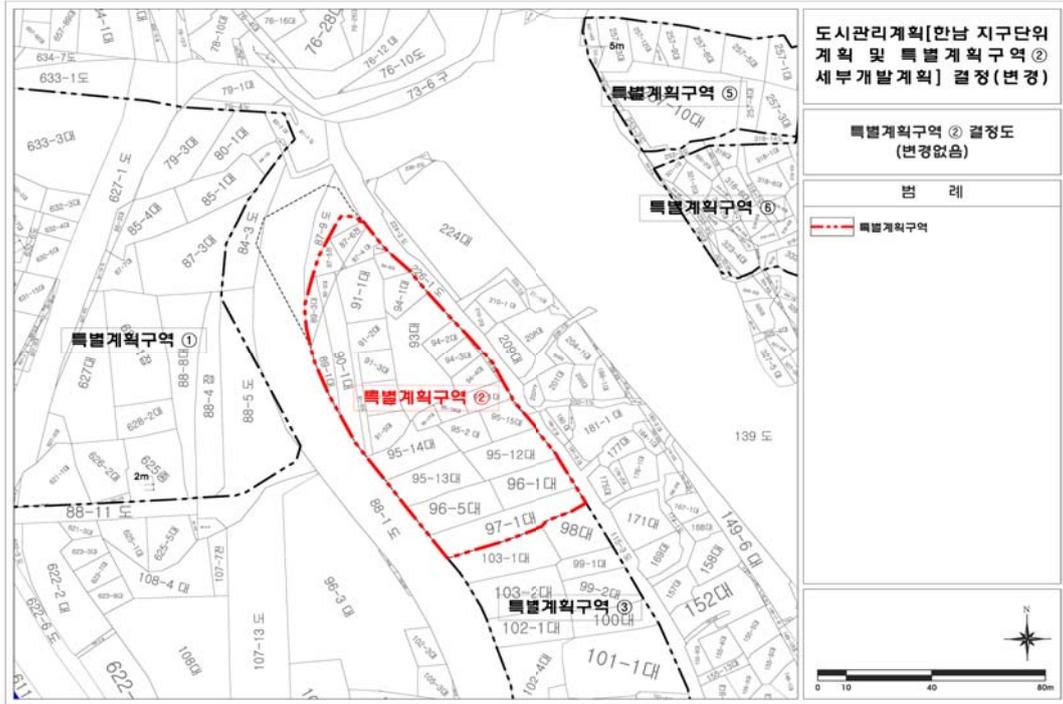
V.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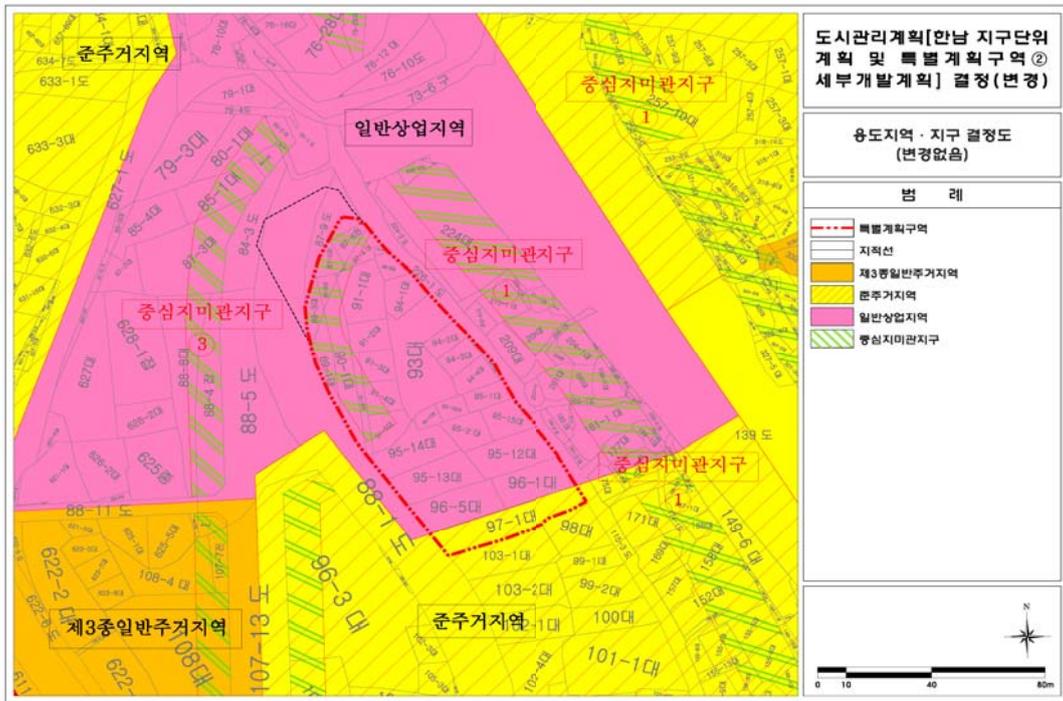
VI.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5) 및 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42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n.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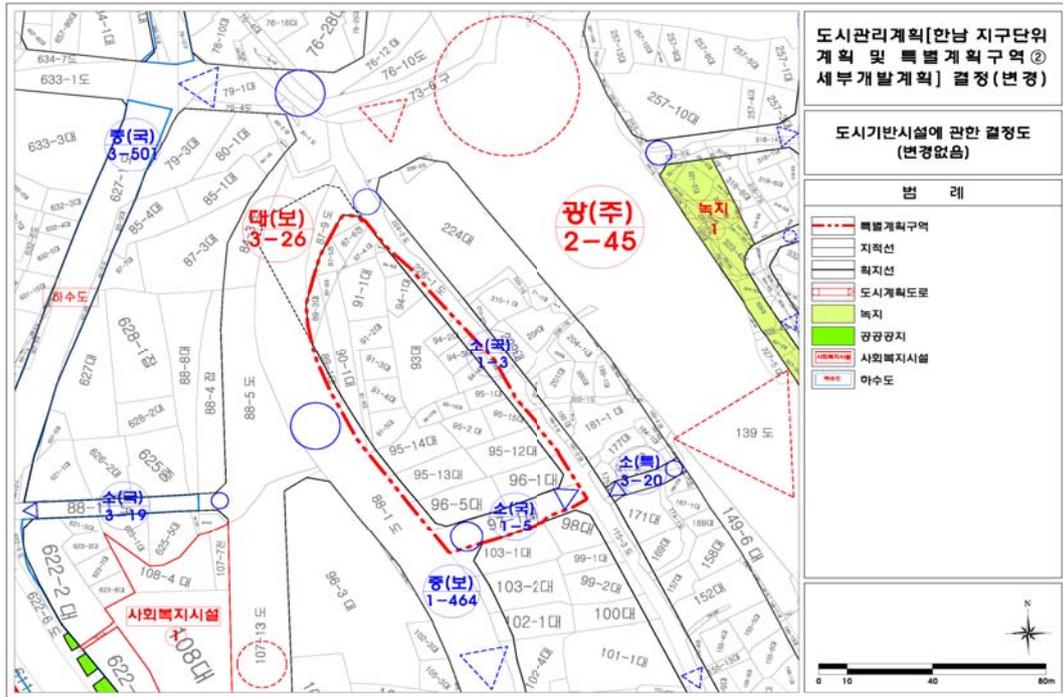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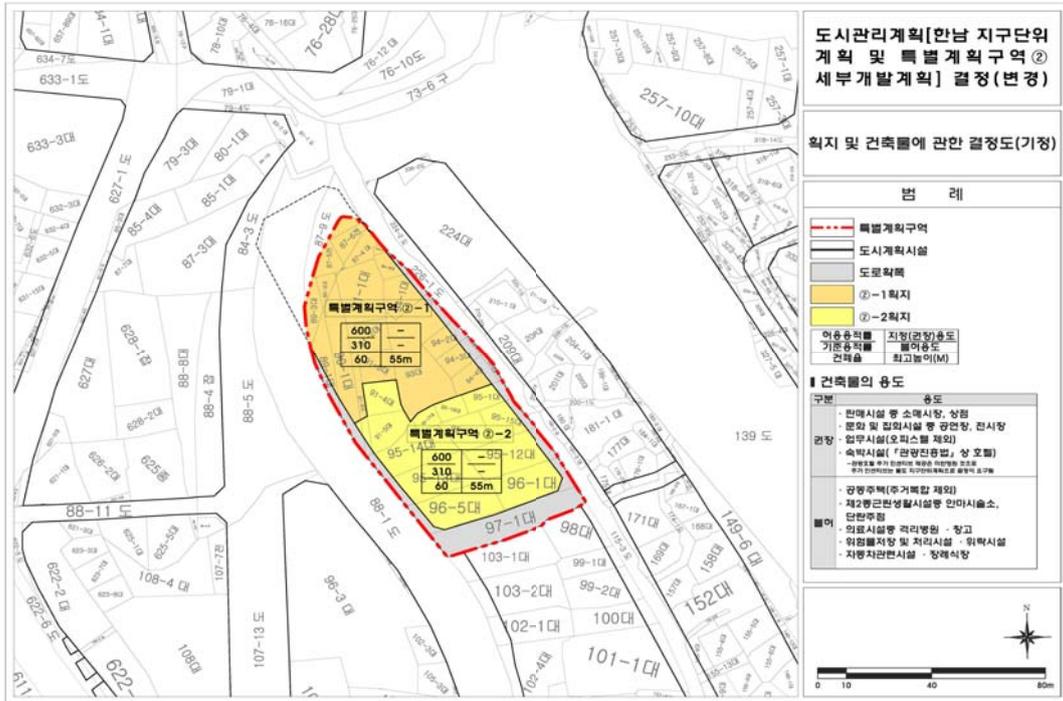
■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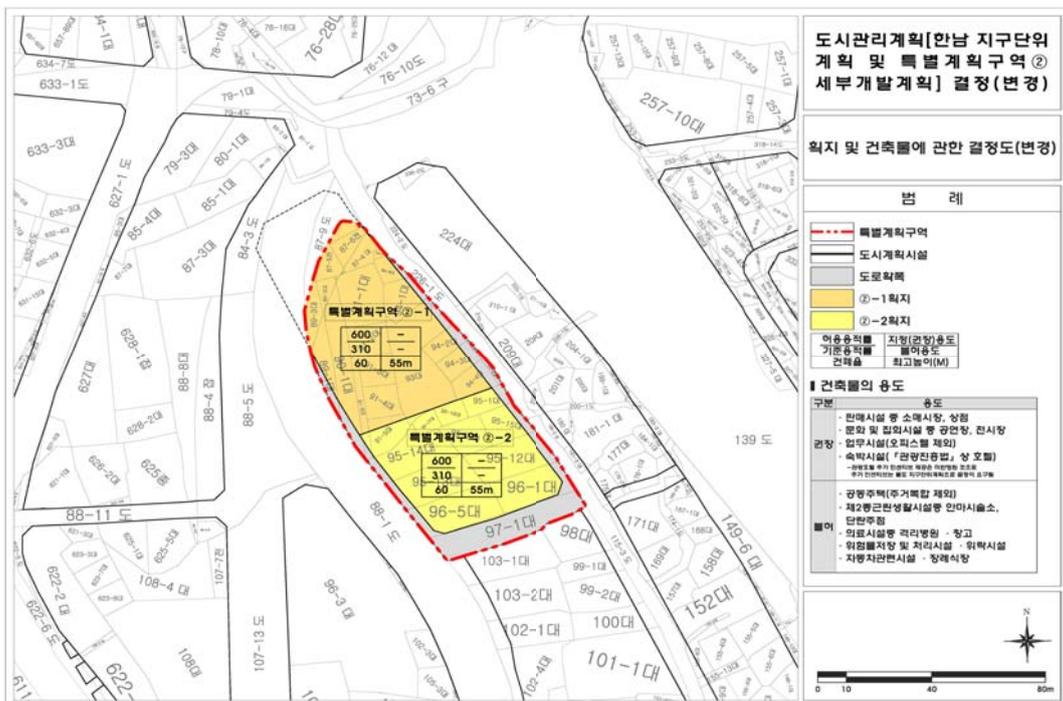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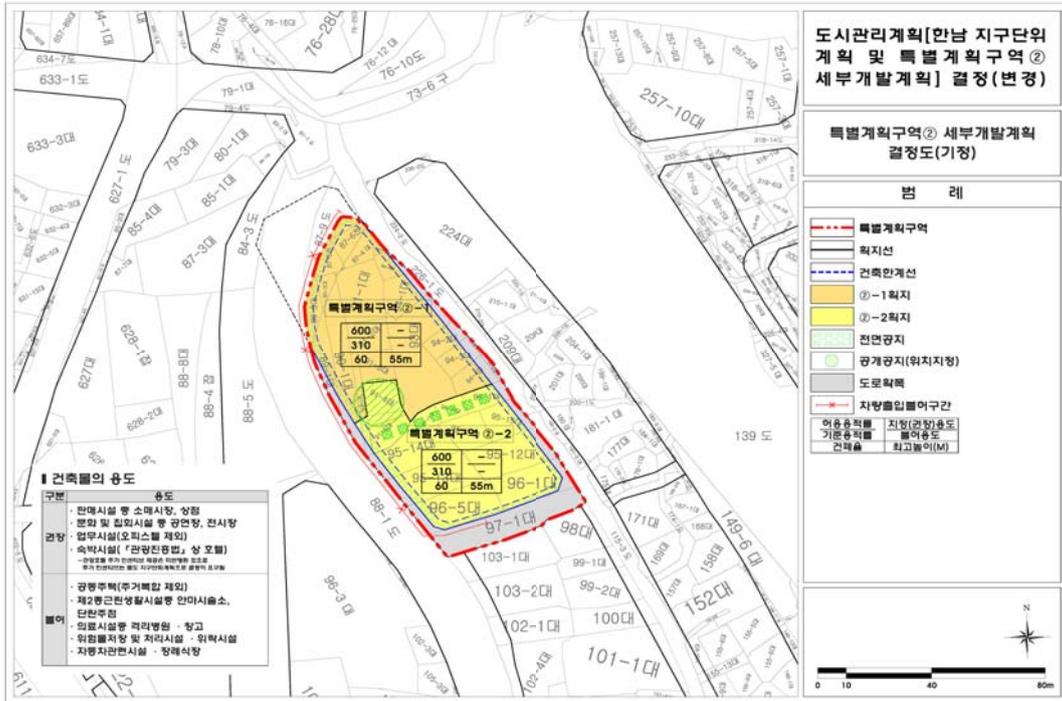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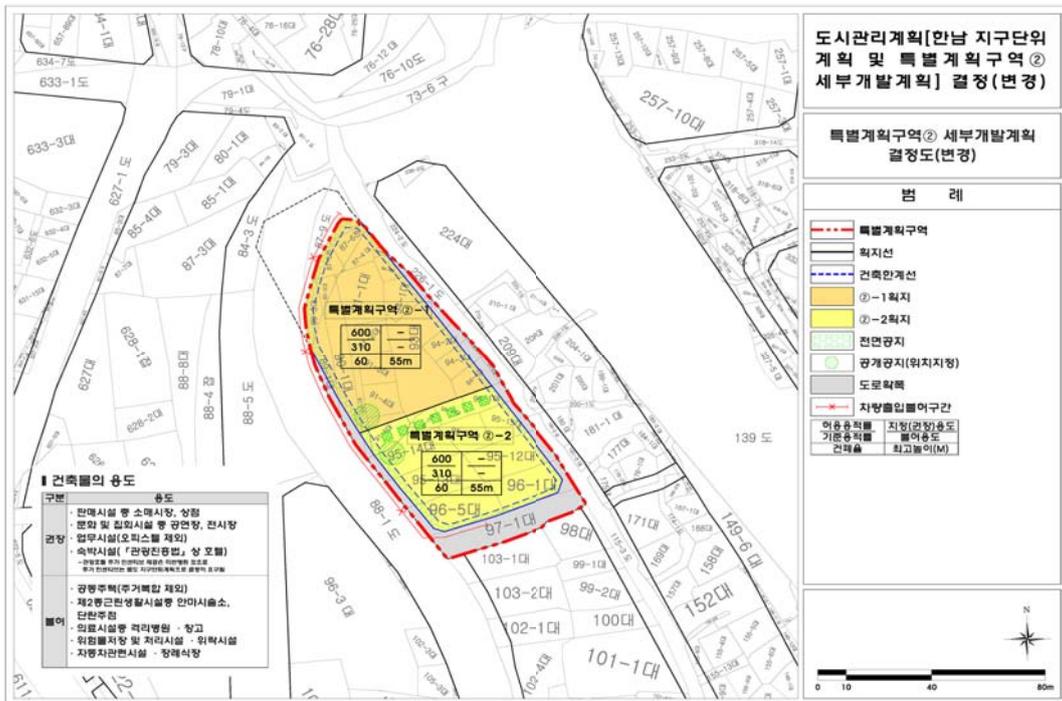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변경)



■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기정)



■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23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 ·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고시 제1993-425호(1993.12.2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을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15호(2013.7.11)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일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1.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일대에 위치한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통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구역구분, 밀도계획 등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을 결정(변경) 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조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종류	구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교	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전체		81,127	-	81,127	서울시고시 제1993-425호 (1993.12.29)	
			1캠퍼스	동대문구 이문동 270-1일대	80,508	-	80,508		
			2캠퍼스	동대문구 이문동 329-20일대	619	-	619		

2)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1) 구역계획

구역	구분	면적(㎡)	구역	구분	면적(㎡)
일반관리구역	①	30,073	상징경관구역	⑤	9,150
	②	20,218		소 계	9,150
	③	16,281	외부활동구역	⑥	4,786
	④	619			
소 계		66,572	소 계		4,786
합 계					81,127

(2) 밀도계획(건폐율)

구 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법정 건폐율(%)	사용건폐율(%)		관리 건폐율(%)	비고
			기정	변경		
1캠퍼스	제2종일반주거지역	77,899	27.04	26.65	38.00	
	일반상업지역	2,609				
2캠퍼스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619	51.44	51.44	55.00	
합 계		81,127	27.23	26.84	38.00	

※기정 사용 건폐율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15호(2013.7.11.)의 변경(결정)된 내용을 기준함.

(3) 구역별 밀도계획(용적률·높이)

구역구분	용적률 (%)						관리 높이(m)	비 고
	법정 용적률	사용 용적률		계획 용적률	이전 용적률	관리 용적률		
		기 정	변 경					
①	220.0	102.80	102.68	212.12	-	220.0	• 지표로부터 최대 36m~52m이하	일반관리구역
②	200.0	260.18	258.93	258.93	+60.0	260.0	• 지표로부터 최대 40m이하 (단, 대학본부는 지표면 +65m이하 국제학사는 지표면 +50m이하)	일반관리구역 ⑤⑥구역에서 용적률 이전 받음
③	252.8	177.31	175.53	224.67	-	240.0	• 지표로부터 최대 40m이하	일반관리구역
④	200.0	268.26	268.26	200.00	-	200.0	• 지표로부터 최대 36m이하	일반관리구역
⑤	211.4	18.42	18.42	18.42	-181.4	30.0	• 지표로부터 최대 16m이하 (기존 건물의 증·개축 및 부속시설에 한하여 허용)	상징경관구역 ②구역으로 용적률이전
⑥	200.0	-	-	2.09	-195.0	5.0	• 지표로부터 최대 6m이하 (외부활동 관련 및 지하 출입시설 에 한하여 허용)	외부활동구역 ②구역으로 용적률이전

※ 상징경관구역, 외부활동구역에 부여된 여유 관리용적률은 해당 구역의 특성을 강화하거나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

(4) 변경 건축물조서

구분	건물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지상층면적(㎡)				층수 (지하)		비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구역	교사,식당	인문과학관	1,364.01	1,364.01	-	-	6,916.55	6,916.55	-	-	6,885.71	6,885.71	-	-	지상 6층 (지하)	지상 6층 (지하)	명칭변경
	교사	교수학습 개발원	1,074.39	1,074.39	-	-	7,564.68	7,564.68	-	-	6,490.29	6,490.29	-	-	지상 6층 (지하)	지상 6층 (지하)	명칭변경
	강의실,연구실	대학원	1,787.01	1,787.01	-	-	8,733.23	8,733.23	-	-	7,761.91	7,761.91	-	-	지상 6층 (지하)	지상 6층 (지하)	명칭변경
	생활관	외국어 연수평가원	731.04	731.04	-	-	3,964.94	3,964.94	-	-	3,488.90	3,488.90	-	-	지상 5층 (지하)	지상 5층 (지하)	명칭변경
	수위실	정문안내실	81.18	81.18	0.33	0.33	81.18	81.18	0.33	0.33	81.18	81.18	0.33	0.33	지상 1층	지상 1층	명칭변경
	통역대학원	국제관	1,167.45	1,167.45	-	-	5,669.32	5,669.32	-	-	5,005.03	5,005.03	-	-	지상 6층 (지하)	지상 6층 (지하)	명칭변경
	인문과학관 및 시청각교육원 연결통로	인문과학관 및 교수학습 개발원 연결통로	77.24	77.24	-	-	77.24	77.24	-	-	77.24	77.24	-	-	지상 2층	지상 2층	명칭변경
창고	-	36.00	-	-	-	36.00	-	-	-	36.00	-	-	-	지상 1층	-	철거	
2구역	본관	대학본부	3,552.80	3,552.80	-	-	33,378.54	33,378.54	-	-	17,937.71	17,937.71	-	-	지상 13층 (지하3)	지상 13층 (지하3)	명칭변경
	교사,사무실	사회과학관	1,069.19	1,069.19	-	-	6,167.49	6,167.49	-	-	5,513.32	5,513.32	-	-	지상 5층 (지하)	지상 5층 (지하)	명칭변경
	학생회관 및 기숙사	학생회관 및 국제학사	3,002.08	3,002.08	-	-	29,956.13	29,956.13	-	-	24,124.31	24,124.31	-	-	지상 12층 (지하2)	지상 12층 (지하2)	명칭변경
	창고	-	254.55	-	-	-	254.55	-	-	-	254.55	-	-	-	지상 1층	-	철거
3구역	휴게소	휴게소 아비	129.60	129.60	-	-	129.60	129.60	-	-	129.60	129.60	-	-	지상 1층	지상 1층	명칭변경
	교수연구동	교수회관	1,252.76	1,252.76	411.88	411.88	9,532.04	9,532.04	3,133.93	3,133.93	6,949.46	6,949.46	2,284.83	2,284.83	지상 8층 (지하2)	지상 8층 (지하2)	명칭변경
	사이버강의동	사이버관	1,994.18	1,741.70	383.62	607.88	13,006.76	12,697.78	3,904.61	3,803.39	8,614.45	8,399.47	2,716.13	2,640.33	지상 8층 (지하2)	지상 8층 (지하2)	명칭변경 및 사용승인에 의한 면적 변경
4구역	연구동	교수연구동	318.39 (7층이하)	318.39 (7층이하)	-	-	1,990.95 (7층이하)	1,990.95 (7층이하)	-	-	1,660.50 (7층이하)	1,660.50 (7층이하)	-	-	지상 6층 (지하)	지상 6층 (지하)	명칭변경
5구역	교사	역사관	628.45	628.45	-	-	12,439.89	12,439.89	-	-	1,685.59	1,685.59	-	-	지상 3층 (지하3)	지상 3층 (지하3)	명칭변경
계			18,520.32	17,977.29	795.83	1,020.09	139,899.09	139,299.56	7,038.87	6,937.65	96,695.75	96,190.22	5,001.29	4,925.49			
			합 543.03		증 224.26		합 599.53		합 101.22		합 505.53		합 75.80				

※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 상세내용은 고시도면(건축물 조서 포함)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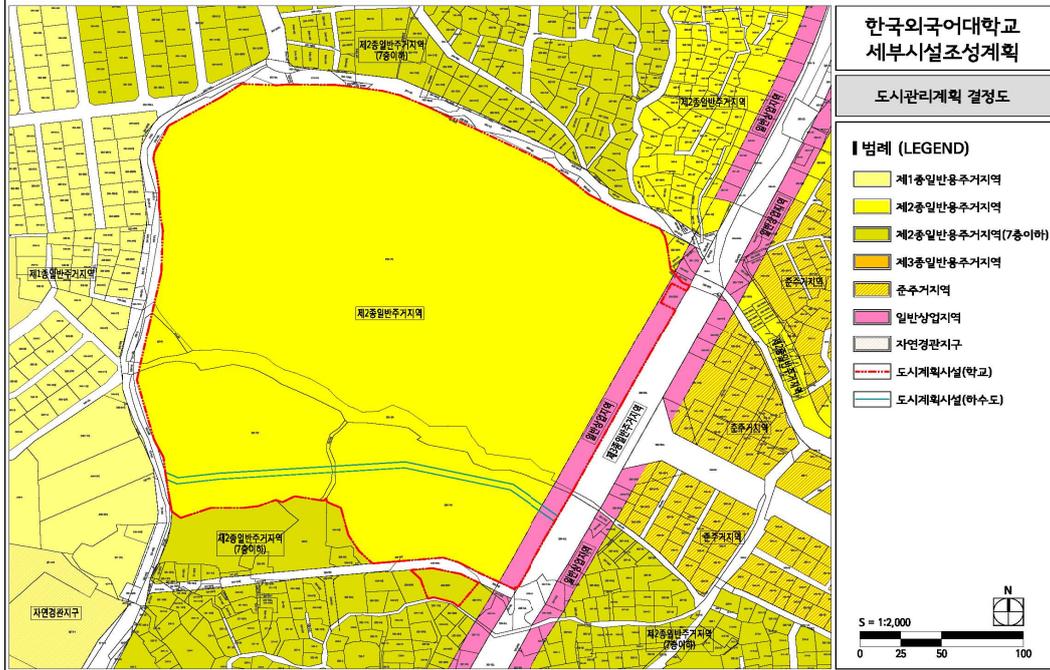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도면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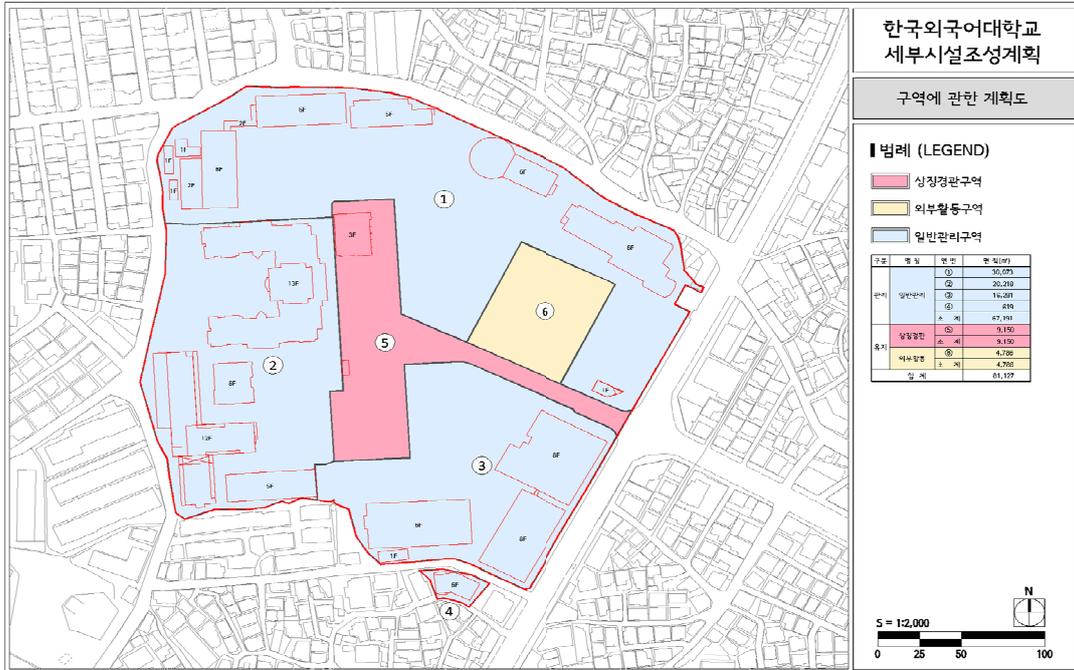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2133-8411) 및 동대문구 도시계획과(전화 2127-4583)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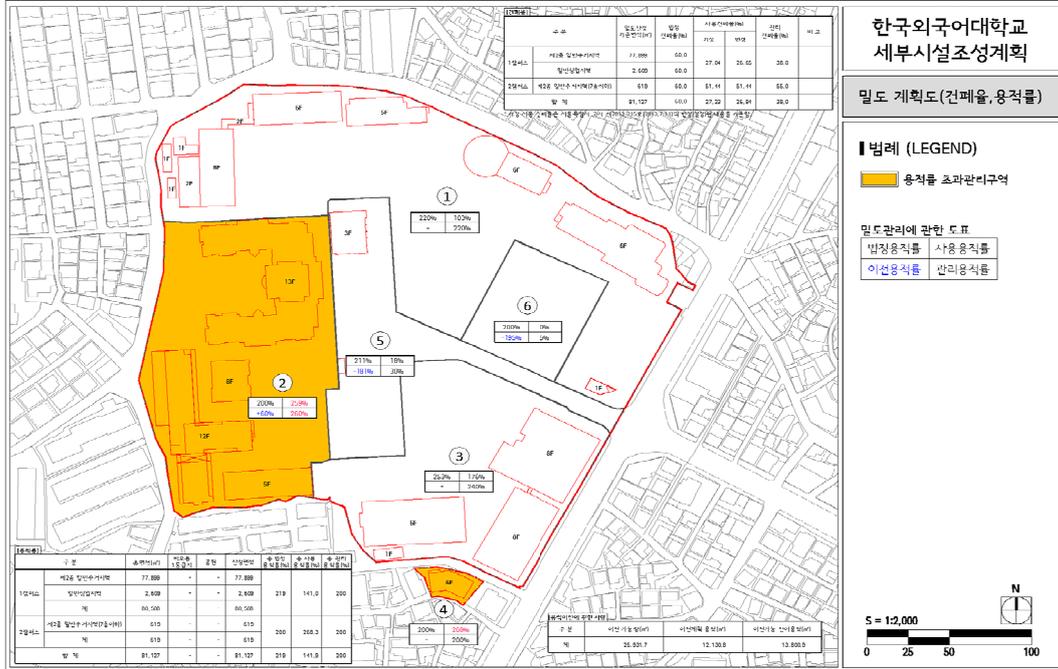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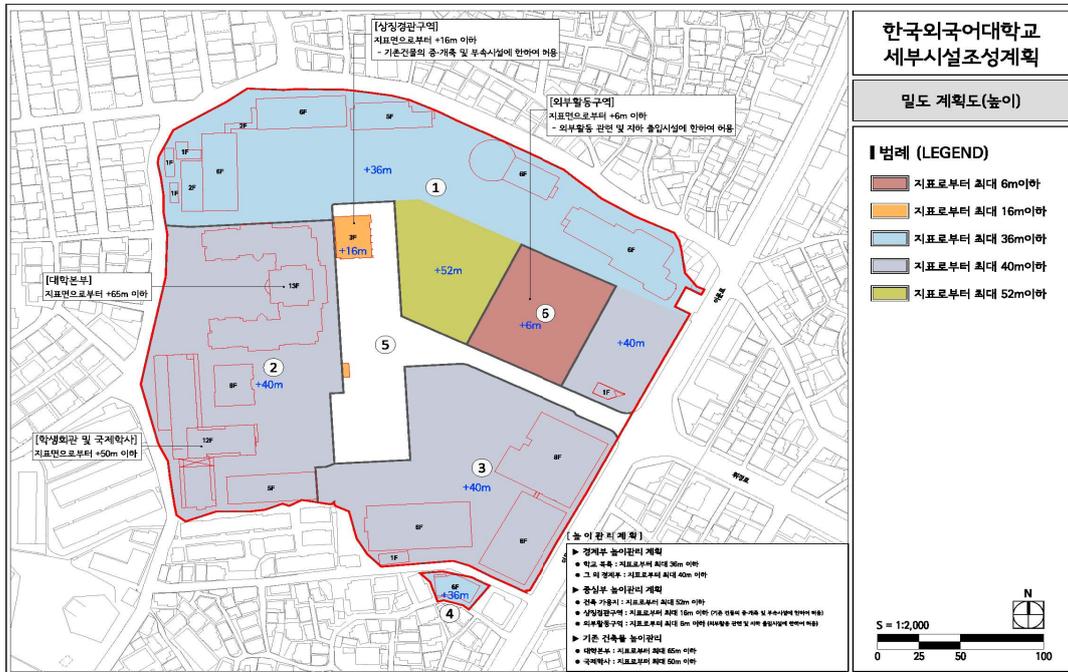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관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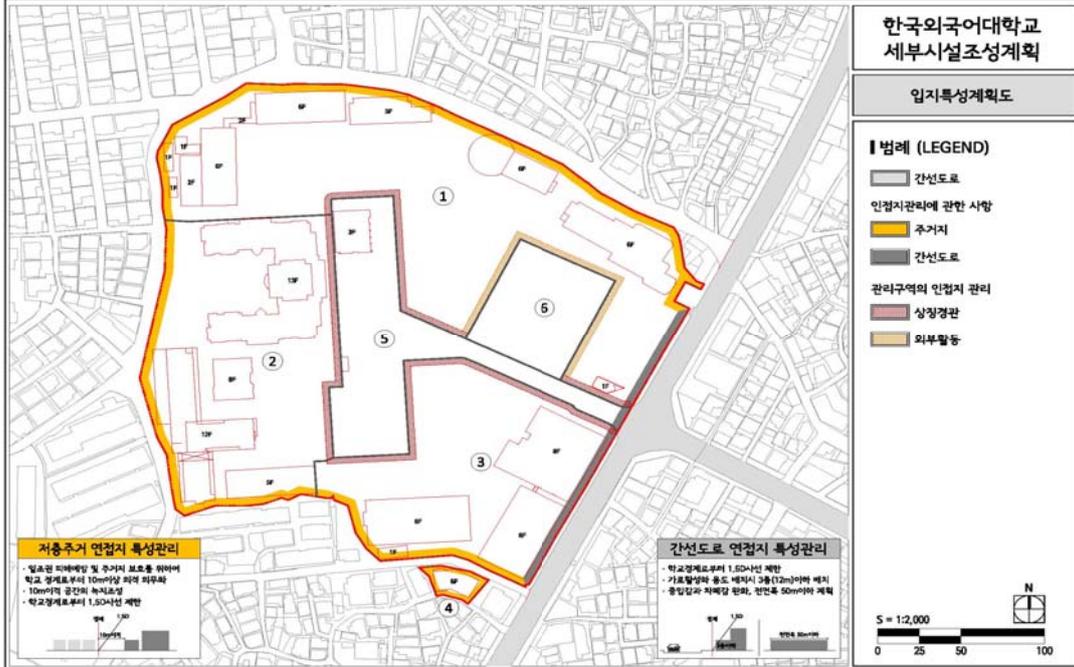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 (건폐율·용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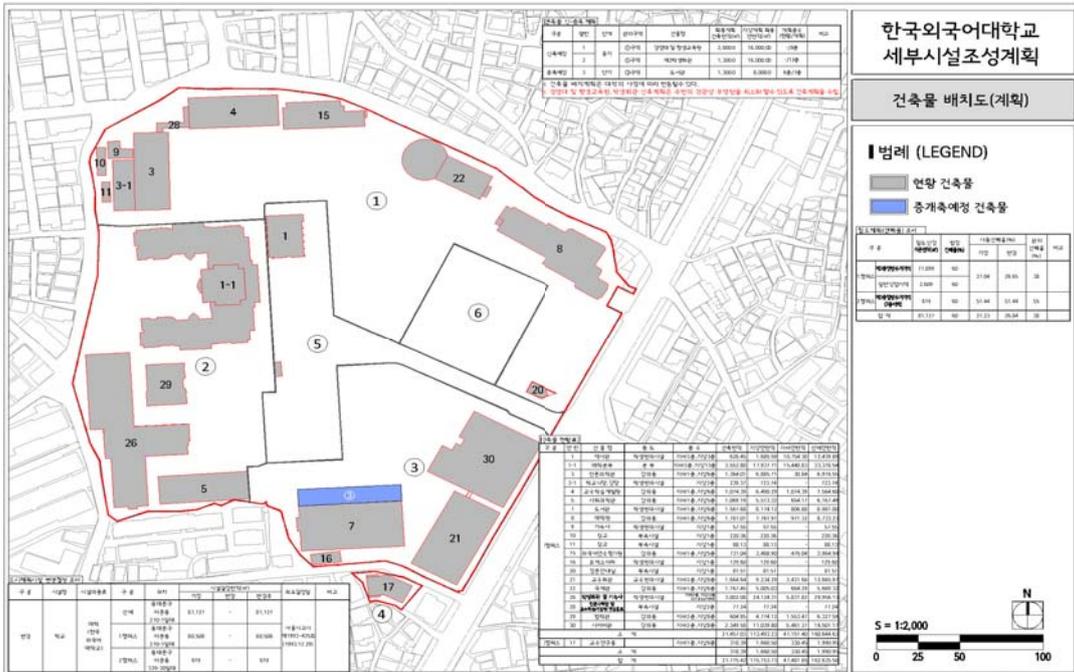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 (높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입지특성계획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축배치계획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24호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1호(2007.12.28.)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8호(2008.12.30.)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9호(2010.2.11.)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수립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9호(2010.9.30.)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74호(2011.9.22.)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8호(2011.12.29.)로 1지구, 2지구 실시계획 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9호(2011.12.29.)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0호(2012.10.11.)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8호(2013.7.25.)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79호(2013.11.14.)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3호(2014.5.8.)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7호(2014.7.3.)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정정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53호(2014.12.26.)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50호(2015.5.28.)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25호(2016.7.28.)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마곡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1) 마곡 도시개발구역

나.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마곡 도시개발구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일대	3,665,722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1)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신경제 거점 및 전문성과 창의성으로 육성하는 특화도시로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동북아 관문도시 조성
- 2) 차세대 서울 경제를 견인하는 융합산업의 전초지로서 첨단기술과 산업이 융합되는 지식산업 혁신기지 조성
- 3) 친환경,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가치를 지향하는 미래의 녹색도시 조성

라.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1) 사업시행자

- 당초 :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변창흠
- 변경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2)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1) 시행기간

- 당초 : 2007년 12월 28일 ~ 2016년 12월 31일
- 변경 : 2007년 12월 28일 ~ 2018년 12월 31일

2)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변경없음)

바. 지구분할 (변경없음)

(단위 : m²)

구 분	1지구	2지구	3지구
사업지구분할	1,066,132	1,902,671	696,919

사.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계	1지구	2지구	3지구		
합 계		3,665,722	1,066,132	1,902,671	696,919	100.0	
주거용지	소 계	595,340	595,340	-	-	16.2	
	단독주택용지	4,250	4,250	-	-	0.1	
	공동주택용지	591,090	591,090	-	-	16.1	
상업용지	일 반 상 업	82,814	10,341	72,473	-	2.3	
업무용지	업 무 용지	305,846	-	305,846	-	8.3	
산업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729,785	-	729,785	-	19.9	
지원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81,326	-	81,326	-	2.2	
도시 기반시설용지	소 계	1,789,166	419,576	685,483	684,107	48.8	
	도 로	648,756 (1,727)	157,677	460,248	30,831 (1,727)	17.7	
	보행자도로	1,146	591	555	-	0.0	
	철도용지	16,729	-	7,329	9,400	0.5	
	의 료 시 설	33,360	-	33,360	-	0.9	
	공 공 청 사	59,764	58,703	1,061	-	1.6	
	학 교	84,411	63,212	21,199	-	2.3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1지구	2지구	3지구		
도시 기반시설용지	보육시설	990	-	990	-	0.0	
	사회복지시설	1,700	1,700	-	-	0.0	
	광 장	12,979	-	12,979	-	0.3	
	근 린 공 원	545,755	41,880	-	503,875	14.9	
	어린이공원/소공원	16,637	16,637	-	-	0.5	
	문화공원	20,382	-	20,382	-	0.6	
	경 관 녹 지	2,747	1,581	928	238	0.1	
	연 결 녹 지	175,761 (176,359)	69,756	106,005 (106,603)	-	4.8	
	주 차 장	25,620	5,471	20,149	-	0.7	
	열공급설비	24,140	-	-	24,140	0.7	
	전기공급설비	2,034	-	-	2,034	0.1	
	방 수 설 비	8,575	2,368	-	6,207	0.2	
	유수지	107,382	-	-	107,382	2.9	
	저류지	(50,000)			(50,000)	0.0	
기타시설용지	소계	82,043	40,875	28,356	12,812	2.3	
	주유소	3,200	800	1,600	800	0.1	
	가스충전소	4,000	-	4,000	-	0.1	
	종교시설	2,947	2,947	-	-	0.1	
	편익시설	61,891	37,128	12,751	12,012	1.7	
	택시차고지	10,005	-	10,005	-	0.3	

※ 저류지는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 도로 일부는(중로2-35, 소로2-3) 유수지 및 근린공원과 중복결정[() 면적 : 중복 결정된 면적임]
 ※ 연결녹지 일부는 산업시설용지(연DP3)내 일부구간 상부를 입체도시계획시설(연결녹지) 결정(면적 : 598㎡)
 [() 면적 : 지상부 연결녹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포함 면적]
 ※ 근린공원내 가스정압기(근린2), 변전소(근린3) 점용

2)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구 분	1지구			2지구	3지구
	면 적(㎡)	가구수(호)	인구수(인)		
합 계	595,340	12,030	33,683	-	-
단독주택용지	4,250	15	42	-	-
공동주택용지	591,090	12,015	33,641	-	-

3)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 (변경없음)

자.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차.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해당없음)

카.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1)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고시한 날로부터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가)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 30일간 공람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남권사업과 (☎ 02) 2133-1536)
- 강서구청 마곡개발과 (☎ 02) 2600-5289)
-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사업부 (☎ 02) 3410-7684)

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2.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1) 마곡 도시개발사업

나.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1)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신경제 거점 및 전문성과 창의성으로 육성하는 특화도시로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동북아 관문도시 조성
- 2) 차세대 서울 경제를 견인하는 융합산업의 전초지로서 첨단기술과 산업이 융합되는 지식산업 혁신기지 조성
- 3) 친환경,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가치를 지향하는 미래의 녹색도시 조성

다.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마곡 도시개발구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일대	3,665,722	

라. 시행자

- 당초 :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변창흠
- 변경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마. 시행기간

- 당초 : 2007년 12월 28일 ~ 2016년 12월 31일
- 변경 : 2007년 12월 28일 ~ 2018년 12월 31일

바. 시행방식 (변경없음)

- 1) 수용 또는 사용방식

사. 지구분할 (변경없음)

(단위 : m²)

구 분	1지구	2지구	3지구
사업지구분할	1,066,132	1,902,671	696,919

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변경) 내용 (변경없음)

자.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1)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 공람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고시한 날부터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공람
-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남권사업과 (☎ 02) 2133-1536)
 - 강서구청 마곡개발과 (☎ 02) 2600-5289)
 -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사업부 (☎ 02) 3410-7684)

차.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관계 기관(부서)과 사전협의사항 이행}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17조, 제 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가) 일반산업단지 변경지정

-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가) 명 칭: 마곡 일반산업단지
- (나)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292답 일원
- (다) 면 적: 1,110,805m²

-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가) 서울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R&D 및 신기술산업의

-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목적이 있음
- (나) 산업단지 내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 (다) 산업단지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및 계획 취지에 부합하는 개발 유도
 - (라) 지식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서울특별시 및 국가의 산업·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적인 융합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가) 당초: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변창흠
 - (나) 변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 (가) 개발기간
 - 당초: 2007년 12월 28일 ~ 2016년 12월 31일
 - 변경: 2007년 12월 28일 ~ 2018년 12월 31일
 - (나) 개발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변경없음)
- (5)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 (가) 입주업종 : 마곡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다.
 - (나) 입주업종별 배치계획
 - 업종별 배치는 융복합 트렌드와 산업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 및 기업입주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권역(거점)별 배치
 - 클러스터는 지하철역, 도보생활권 등을 고려해 배치하고 클러스터별 특화산업의 분산배치를 통해 입주 업종별 거점화와 융복합화가 가능하도록 배치
 - 코어 클러스터는 마곡지구의 가장 중심지인 공항철도 및 9호선 환승역세권 지역에 배치
 - InT 클러스터는 기술발전단계를 고려하여 IT 기술중심의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코어클러스터 인근 배치
 - BiT 클러스터는 생명공학 연구와 IT기술 연계가 가능한 중앙공원과 환승역세권지역에 배치
 - GeT 클러스터는 주변 자연환경(저류지, 물재생센터, 공원 등)의 활용이 용이한 양천향교역 지역에 배치
 - BmT 클러스터는 의료, 제약 산업집적이 용이하도록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이 입주하는 지역 주변에 배치
 - 각 클러스터는 코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배치
-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110,805	-	1,110,805	100.0	
산업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729,485	-	729,485	65.7	
지원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81,326	-	81,326	7.3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녹지시설용지	소계	76,769	-	76,769	6.9	
	문화공원	20,382	-	20,382	1.8	
	녹지	56,387	-	56,387	5.1	
공공시설용지	소계	211,459	-	211,459	19.0	
	도로	211,459	-	211,459	19.0	
기타시설용지	소계	9,766	-	9,766	1.0	
	주차장	6,776	-	6,776	0.6	
	가스충전소	4,000	-	4,000	0.4	
	보육시설	990	-	990	0.1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8) 토지 등의 세목 및 그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나)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마곡 일반산업단지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가) 당초: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변창흠

(나) 변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서울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R&D 및 신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목적이 있음

(나) 산업단지 내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다) 산업단지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및 계획 취지에 부합하는 개발 유도

(라) 지식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서울특별시 및 국가의 산업·기술 발전을 도모 하고 세계적인 융합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292답 일원

(나) 면적 : 1,110,805m²

(5) 사업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변경없음)

(나) 시행기간

- 당초 : 2007년 12월 28일 ~ 2016년 12월 31일

- 변경 : 2007년 12월 28일 ~ 2018년 12월 31일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없음)

- 2)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변경없음)
-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변경없음)
-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변경없음)
-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변경없음)
-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변경없음)

카.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마곡 도시개발구역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 1) 유비쿼터스도시건설 사업계획 승인
 - 가) 사업의 명칭: 서울시 마곡지구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U-City)(변경없음)
 - 나) 사업 시행자(변경)
 - (가) 당초: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변창흠
 - (나) 변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 다) 사업 지구의 일반 현황(변경없음)
 - (1)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일원
 - (2) 대상면적: 3,665,722㎡
 - 라) 사업의 배경 및 목적(변경없음)
 - (1) 배 경
 - 동북아 관문도시로서 거점기반 구축 필요
 - 첨단기술 기반의 차세대 지식산업 혁신기지 조성
 - 지속가능한 가치를 지향하는 미래의 녹색도시로 개발
 - 미래형 산업도시에 부합하는 정보통신 기반 필요
 - (2) 목 적
 - 언제, 어디서나 정보접근이 가능한 정보통신 도시 구현
 - 첨단 기술이 융합되고 편리한 녹색안전 도시 조성
 - 다양한 기업이 입주하고 싶어하는 기업친화 도시 개발
 - 마) 사업시행기간: 2007.12.28 ~ 2017.06.30(변경없음)
 - 바) 사업의 범위(변경없음)

번호	영역	단위 서비스(시스템)	비고
1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서비스	스마트 방법	필수기반 서비스
		스마트 재난관리	
		스마트 교통	
		스마트 시설물 관리	
		U-정보제공	특화 서비스 (시민, 기업)
2	정보통신 인프라	유무선 통신망 구성	정보통신 도시구현을 위한 기반 인프라
		관련 H/W 설치 공정	
3	도시통합 운영센터	통합플랫폼 구축	
		운영 시스템 구축	
		인테리어 등 부대공사	

(1)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서비스

- 방 법: CCTV 카메라를 기반으로 영상을 공간별, 중요도별로 분석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도시생활을 보장함
- 재난관리: 이상기후에 대비한 우수관 수위감시 및 재난상황 전파 등 방재 서비스 제공
- 교 통: 마곡 지구 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종합적인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마곡 시민 및 기업의 교통수단 이용 관련 편의성을 제고함
- 시설물관리: 시설물 원격관리를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 정보제공: 시민 대상의 공공정보 제공 및 기업의 입주지원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

(2) 정보통신 인프라

분야	세부분야	도입기술
유선 인프라 설계	간선망(백본)	Metro Ethernet 등
	접속망	WDM
	무선망	Wi-Fi
기초 인프라 설계	광선로감시	광선로감시 소프트웨어
	관로/선로	COD, 인공/수공, 광케이블
	전원	개별수전, 접지

(3) 도시통합운영센터

- 전산장비실, 종합상황실, 사무 및 체험공간으로 구성

- 24시간 상황관계,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및 운영 시스템 관리 기능 수행

2) 유비쿼터스도시건설 실시계획 승인

가) 사업의 명칭: 서울시 마곡지구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U-City)(변경없음)

나) 사업 시행자 (변경)

(가) 당초: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변창흠

(나) 변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다) 사업 지구의 일반 현황(변경없음)

(1)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일원

(2) 대상면적: 3,665,722㎡

라) 사업의 배경 및 목적(변경없음)

(1) 배 경

- 동북아 관문도시로서 거점기반 구축 필요
- 첨단기술 기반의 차세대 지식산업 혁신기지 조성
- 지속가능한 가치를 지향하는 미래의 녹색도시로 개발
- 미래형 산업도시에 부합하는 정보통신 기반 필요

(2) 목 적

- 언제, 어디서나 정보접근이 가능한 정보통신 도시 구현
- 첨단 기술이 융합되고 편리한 녹색안전 도시 조성
- 다양한 기업이 입주하고 싶어하는 기업친화 도시 개발

마) 사업시행기간: 2007.12.28 ~ 2017.06.30 (변경없음)

바) 사업의 범위(변경없음)

번호	영역	단위 서비스(시스템)	비고
1	유비쿼터스도시기반서비스	스마트 방법	필수기반 서비스
		스마트 재난관리	
		스마트 교통	
		스마트 시설물 관리	
		U-정보제공	특화 서비스 (시민, 기업)
2	정보통신 인프라	유무선 통신망 구성	정보통신 도시구현을 위한 기반 인프라
		관련 H/W 설치 공정	
3	도시통합 운영센터	통합플랫폼 구축	
		운영 시스템 구축	
		인테리어 등 부대공사	

(1) 유비쿼터스도시기반서비스

- 방 법: CCTV 카메라를 기반으로 영상을 공간별, 중요도별로 분석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도시생활을 보장함
- 재난관리: 이상기후에 대비한 우수관 수위감시 및 재난상황 전파 등 방재 서비스 제공
- 교 통: 마곡 지구 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종합적인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마곡 시민 및 기업의 교통수단 이용 관련 편의성을 제고함
- 시설물관리: 시설물 원격관리를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 정보제공: 시민 대상의 공공정보 제공 및 기업의 입주지원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

(2) 정보통신 인프라

분야	세부분야	도입기술
유선 인프라 설계	간선망(백본)	Metro Ethernet 등
	접속망	WDM
	무선망	Wi-Fi
기초 인프라 설계	광선로감시	광선로감시 소프트웨어
	관로/선로	COD, 인공/수공, 광케이블
	전원	개별수전, 접지

(3) 도시통합운영센터

- 전산장비실, 종합상황실, 사무 및 체험공간으로 구성
- 24시간 상황관제, 유비쿼터스기반시설 및 운영 시스템 관리 기능 수행

사) 무상귀속 대상 시설물 및 관리청 지정(변경없음)

영역	구분	무상귀속 대상	관리청
U-서비스	스마트방법	서비스 시설물, 운영 시스템	강서구청
	스마트재난관리	서비스 시설물, 운영 시스템	강서구청
	스마트교통	주정차단속 제외한 나머지 교통시설물 및 운영 시스템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불법 주정차단속 시설물 및 운영 시스템	강서구청
	U-정보제공	(대) 시민 서비스 운영 시스템	강서구청
		(대) 기업 서비스 운영 시스템	서울시 (서남권사업과)
스마트시설물 관리	서비스 시설물, 운영 시스템	강서구청	
정보통신 인프라	유무선 통신망	현장 관로 및 선로	강서구청
	관련 시스템	전송 관련 장비 및 운영 시스템	강서구청
도시통합 운영센터	운영센터 인테리어, 영상/부대설비 및 H/W, S/W		강서구청

※ 서울식물원 내 U-시설물(방법, 통신관로, 무선 인터넷 등)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며, 강서구에 의한 운영 대행이 필요할 경우, 강서구와 서울시가 협의하여 결정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25호

행정용어 순화자료 고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의 행정순화어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장

행정용어 순화

차례	바뀌야 할 말 (순화대상어)	뜻풀이	권하는 말 (순화어)	비고
1	R&D	내년 예산은 R&D(→연구 개발) 사업비를 늘릴 예정이다	연구 개발	
2	ICT	정보처리, 정보통신 분야 관련 기술의 총칭/IT와 CT 복합어 (신조어)	정보통신기술, 정보문화기술	
3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기구	
4	Day	day	날	
5	NPO	NonProfitOrganization	비영리단체	
6	멘토, 멘토링	mentor/mentoring	(담당)지도자, 조연자, 상담	
7	푸드트럭	foodtruck	음식차, 음식트럭, 먹거리트럭	
8	위크	week	주간, 주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 (☎02-2133-6439)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26호

서울동남권유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391호(2004.11.25)로 유통단지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39호(2005.11.10) 실시계획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60호(2007.1.4) 실시계획 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14호(2007.4.26) 실시계획 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40호(2008.10.2) 실시계획 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5호(2010.3.18) 실시계획 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91호(2011.12.22) 실시계획 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16호(2012.8.9) 실시계획 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5호(2013.1.31) 실시계획 변경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57호(2014.12.26.)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서울동남권유통단지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23조 및 제2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동남권유통단지 지정변경,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장

I. 물류단지 변경지정

1. 물류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서울동남권유통단지
- 위 치 : 송파구 문정동 280 일원
- 면 적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560,694.0	
1공구	154,589.0	
2공구	145,067.0	
3공구	261,038.0	

2. 물류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물류체계를 효율화하여 물류비 절감
- 유통체계개선과 유통산업발전을 도모
- 물류 및 청계천 전문상가 이주단지를 포함한 상류시설을 집단화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 유도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변경없음)
- 명칭
 - 당초 : 서울특별시 SH공사
 - 변경 : 서울주택도시공사
- 대표자의 성명 : 변창흠 (변경없음)

4.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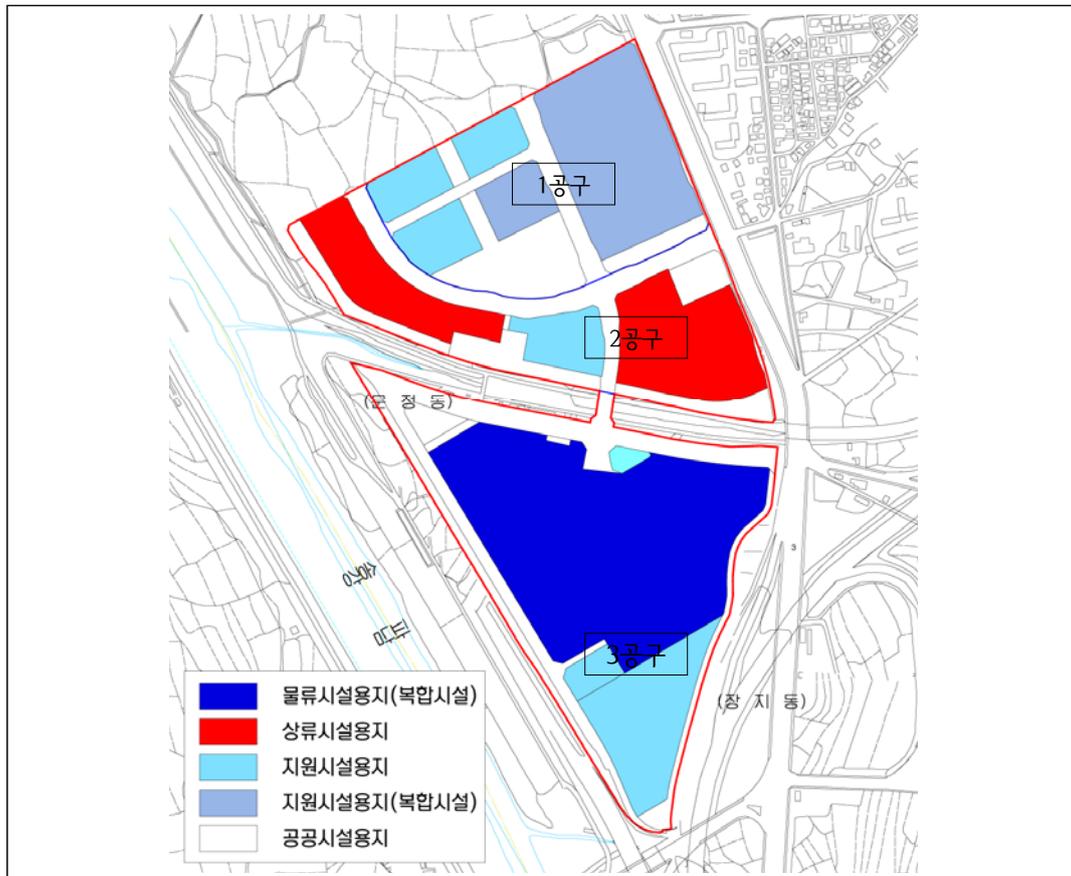
- 시행기간
 - 당초 : 2004. 11. 25 ~ 2016. 12. 31
 - 변경 : 2004. 11. 25 ~ 2017. 12. 31
- 시행방법 : 공영개발, 민·관합동개발, 민간개발 (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고	
	1공구	2공구	3공구	전체		
합 계	154,589.0	145,067.0	261,038.0	560,694.0		
물류 단지 시설	계	-	70,166.3	147,112.0	217,278.3	
	물류	-	-	147,112.0	147,112.0	
	상류	-	70,166.3	-	70,166.3	
지원시설	103,778.4	13,355.7	43,188.0	160,322.1		
공공시설	50,810.6	61,545.0	70,738.0	183,093.6		

토지이용계획도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고		
		1공구	2공구	3공구	전체				
합 계		154,589.0	145,067.0	261,038.0	560,694.0	100.0%			
물류 단 지 시 설	물류 시설	계		-	70,166.3	147,112.0	217,278.3	38.7%	
	상류 시설	복합시설(물류)	-	-	147,112.0	147,112.0	26.2%		
		전문 상가	소계	-	70,166.3	-	70,166.3	12.5%	
		1	-	41,732.1	-	41,732.1	7.4%		
		2	-	28,434.2	-	28,434.2	5.1%		
지원 시설	계		103,778.4	13,355.7	43,188.0	160,322.1	28.6%		
	가공·제조		-	13,355.7	-	13,355.7	2.4%		
	주유소		-	-	2,108.0	2,108.0	0.4%		
	열공급설비		-	-	5,380.0	5,380.0	1.0%		
	업무 시설	소계	19,691.2	-	-	19,691.2	3.5%		
		1	10,416.0	-	-	10,416.0	1.9%		
		2	9,275.2	-	-	9,275.2	1.6%		
	복합 시설 (지원)	소계	72,598.1	-	-	72,598.1	12.9%		
		1	11,367.1	-	-	11,367.1	2.0%		
		2	61,231.0	-	-	61,231.0	10.9%		
교육복합시설		11,489.1	-	-	11,489.1	2.0%			
폐기물처리시설		-	-	35,700.0	35,700.0	6.4%			
공공시설	계		50,810.6	61,545.0	70,738.0	183,093.6	32.7%		
	도로	소계	18,121.6	29,958.1	45,471.0	93,550.7	16.7%		
		보행	-	253.1	-	253.1	0.1%		
		일반	18,121.6	29,705.0	45,471.0	93,297.6	16.6%		
	공원	소계	32,689.0	16,196.6	-	48,885.6	8.7%		
		근공1	27,289.9	-	-	27,289.9	4.9%		
		근공2	5,399.1	5,986.7	-	11,385.8	2.0%		
		근공3	-	10,209.9	-	10,209.9	1.8%	유수지 1개소 포함	
	녹지	소계	-	15,312.3	20,845.0	36,157.3	6.4%		
		경관1	-	7,958.2	-	7,958.2	1.4%		
		경관2	-	7,354.1	-	7,354.1	1.3%		
		경관3	-	-	1,346.0	1,346.0	0.2%		
		원충1	-	-	11,532.0	11,532.0	2.1%	철탑 1개소 포함	
		원충2	-	-	7,967.0	7,967.0	1.4%	철탑 1개소 포함	
	저류시설		-	-	4,017.0	4,017.0	0.7%	공원내 중복면적 제외	
	철도	소계	-	78.0	405.0	483.0	0.2%		
		철도1	-	78.0	-	78.0	0.1%	8호선 출입구	
		철도2	-	-	405.0	405.0	0.1%	분당선 환기구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

구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합계	-	11	2	3	6	3,343	616	911	1,816	93,550.7	18,121.6	29,958.1	45,471.0		
일반도로	계	-	10	2	2	6	3,318	616	886	1,816	93,297.6	18,121.6	29,705.0	45,471.0	
	광로	-	-	-	-	-	-	-	-	-	2,737.6	1,348.9	1,388.7	-	송파대로 완화차로
	대로	25~55	6	1	2	3	2,046	335	886	825	66,987.3	11,048.0	28,316.3	27,623.0	1개노선 2,3공구중복
	중로	20	2	1	-	1	1,037	281	-	756	21,035.7	5,724.7	-	15,311.0	
	소로	10~11	2	-	-	2	235	-	-	235	2,537.0	-	-	2,537.0	
특수도로	소로	10	1	-	1	-	25	-	25	-	253.1	-	253.1	-	보행자 전용도로

2) 공원 • 녹지계획

○ 공 원

구분	번호	위치	면적(m ²)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	48,885.6	32,689.0	16,196.6	-	
근린공원	근1	문정동 286-1일원	27,289.9	27,289.9	-	-	
	근2	문정동 546일원	11,385.8	5,399.1	5,986.7	-	
	근3	문정동 572일원	10,209.9	-	10,209.9	-	

○ 녹 지

구분	번호	위치	면적(m ²)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	36,157.3	-	15,312.3	20,845.0	
경관 녹지	소계	-	16,658.3	-	15,312.3	1,346.0	
	경1	문정동 414-2일원	7,958.2	-	7,958.2	-	
	경2	문정동 586일원	7,354.1	-	7,354.1	-	
	경3	장지동 800-2일원	1,346.0	-	-	1,346.0	
완충 녹지	소계	-	19,499.0	-	-	19,499.0	
	완1	장지동 706-14일원	11,532.0	-	-	11,532.0	
	완2	장지동 636-7일원	7,967.0	-	-	7,967.0	

3) 유수지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m ²)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	7,123	-	3,106	4,017	
유수지	유1	송파구 문정동 292-2일원	3,106	-	3,106	-	근린공원3내 중복결정
	유2	송파구 장지동800일원	4,017	-	-	4,017	

4) 공급처리시설계획

구분	계획용량	공급계획
상수공급	계획급수량: 14,345m ³ /일	- 서울시 송파구 장지지역의 상수 공급은 송파대로에 기 매설된 광암정수장 수계의 기존 배수관로(D700mm ~ D500mm)에서 분기하여 지구내 계획도로로 인입시켜 배수관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단지내 용수 수요량은 유통단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종사례 조사를 이용하여 급수계획 인구적용은 목표년도 2017년의 지표를 적용하여 산출한 후 단지내 배수관망을 형성하여 공급토록 한다
오수처리	계획오수량: 18,858m ³ /일	- 본 사업지구는 처리구역상 장지배수분구 탄천처리구역에 위치하며, 사업지구 발생오수는 분류식으로 장치천 기준 북측부지는 탄천 및 장치천정비공사(송파구청) 신설차집관로 D800mm에 연결하고, 남측부지는 기존 D800mm 관로에 연결하여 탄천물재생센터 로 유입처리토록 계획수립
에너지공급	가스터빈 32mw 보일러 30ton/hr × 2기 냉방기기 60.5Gcal/hr 신재생에너지 설비 : 태양광발전설비 45kw	- 본 사업지구는 에너지사용계획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임

6. 주요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유치시설

- 단지내 시설은 물류단지시설(물류시설, 상류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로 구분
- 물류시설에는 물류터미널, 공동집배송센터, 차고지 등이 복합된 복합시설(물류)이 포함되며 상류시설에는 전문상가가 포함됨
- 지원시설에는 복합시설, 교육복합시설, 업무시설, 열공급설비,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있고 공공시설에는 도로, 공원, 녹지, 우수지 등이 포함됨

나. 설치기준

- 시설의 설치기준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물류단지개발지침 제11조에 의하며 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 등에 관한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7.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 생략)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주소 (변경없음 : 생략)

9. 물류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 생략)

10.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 해당없음

11. 관련도서 열람방법

주민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2133-2338),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3410-7595)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II.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서울동남권유통단지

2. 시행자의 성명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명칭 (변경)
 - 당초 : 서울특별시 SH공사
 - 변경 : 서울주택도시공사
- 대표자의 성명 : 변 창 흠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목 적

- 물류체계를 효율화하여 물류비 절감

- 유통체계개선과 유통산업발전을 도모
- 물류 및 청계천 전문상가 이주단지를 포함한 상류시설을 집단화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 유도

나. 개 요

물류단지시설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1공구	2공구	3공구	전체		
계		-	70,166.3	147,112.0	217,278.3	100.0%	
물류시설	복합시설(물류)	-	-	147,112.0	147,112.0	67.7%	
상류시설	전문상가	소계	70,166.3	-	70,166.3	32.3%	
		1	41,732.1	-	41,732.1	19.2%	
		2	28,434.2	-	28,434.2	13.1%	

지원시설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1공구	2공구	3공구	전체			
계		103,778.4	13,355.7	43,188.0	160,322.1	100.0%		
가공·제조		-	13,355.7	-	13,355.7	8.3%		
주유소		-	-	2,108.0	2,108.0	1.3%		
열공급설비		-	-	5,380.0	5,380.0	3.3%		
지원시설	업무시설	소계	19,691.2	-	-	19,691.2	12.3%	
		1	10,416.0	-	-	10,416.0	6.5%	
		2	9,275.2	-	-	9,275.2	5.8%	
	복합시설(지원)	소계	72,598.1	-	-	72,598.1	45.3%	
		1	11,367.1	-	-	11,367.1	7.1%	
		2	61,231.0	-	-	61,231.0	38.2%	
	교육복합시설		11,489.1	-	-	11,489.1	7.2%	
	폐기물처리시설		-	-	35,700.0	35,700.0	22.3%	

공공시설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1공구	2공구	3공구	전체				
공공시설	계	50,810.6	61,545.0	70,738.0	183,093.6	100.0%		
	도로	소계	18,121.6	29,958.1	45,471.0	93,550.7	51.1%	
		보행	-	253.1	-	253.1	0.1%	
		일반	18,121.6	29,705.0	45,471.0	93,297.6	51.0%	
	공원	32,689.0	16,196.6	-	48,885.6	26.7%	유수지 1개소 포함	
	녹지	-	15,312.3	20,845.0	36,157.3	19.7%	철탑 2개소 포함	
	저류시설	-	-	4,017.0	4,017.0	2.2%	공원내 중복면적 제외	
	철도	-	78.0	405.0	483.0	0.3%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송파구 문정동 280 일원
- 면 적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560,694.0	
1공구	154,589.0	
2공구	145,067.0	
3공구	261,038.0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시행기간
 - 당초 : 2004. 11. 25 ~ 2014. 12. 31
 - 변경 : 2004. 11. 25 ~ 2017. 12. 3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생략)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2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72호(2006.5.1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고시 제2008-38호(2008.7.1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23호(2015.12.31)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한 『동남권 유통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변경없음
 - 가. 대로 1-74호선
 - 시 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50-14
 - 종 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233-10 (금회 : 장지동 803-2)
 - 나. 대로 3-192호선
 - 시 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381-7
 - 종 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417-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나. 명 칭 : 동남권유통단지 기반시설(대로1-74, 3-192) 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정	대로	1	74	25~55	보조 간선도로	1,960	송파구 문정동150-14	송파구 장지동233-10	일반도로	
시행	"	"	"	"	"	1,592	"	송파구 장지동803-2	"	
결정	대로	3	192	27	도시 고속도로	9,416	송파구 장지동717	광진구 노유동964	자동차전용도로	
시행	"	"	"	5~7	"	482	송파구 문정동381-7	송파구 문정동417-3	"	진출램프 신설

4. 사업 시행자 명칭 및 주소, 성명
 -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나. 성 명 (변경)
 - 당 초 : SH공사 사장 변창흠
 - 변 경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가. 당 초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나. 변 경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8.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02-2133-2338)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 : 02-3410-7595)에 관련도면 및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2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방수설비, 철도)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24(2015.12.31.)호 내용중 당초(변경전) 내용을 정정하기 위한 고시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35호(2007.11.29)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09-11호(2009.4.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2호(2016.2.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방수설비, 철도)사업 실시계획변경 정정 고시한 「동남권 유통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방수설비, 철도)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변경없음
 - 가. 시 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116
 - 나. 종 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46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방수설비, 철도) 사업
 - 나. 명 칭 : 동남권유통단지 기반시설(중로 1-428, 방수설비, 철도) 조성사업
- 3. 사업의 규모 : 변경없음
 - 가. 도로(중로1-428) : 폭20m, 연장 1,250m
 - 나. 방수설비(빗물펌프장)
 - 1) 방수설비(율현2펌프장) : 면적 721㎡
 - 다. 철 도 : 면적 402㎡(환기구)
- 4.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성명 (변경)
 - 가.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개포동 14-5)
 - 나. 성명

- 당초 : SH공사 사장 변창흠
- 변경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가. 당초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나. 변경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8.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02-2133-2338)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 : 02-3410-7595)에 관련도면 및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31호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준주거시설2 공공준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주)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준주거시설2 공공준주택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1. 사업명 :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준주거시설2 공공준주택(오피스텔)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성명 : (주)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자 이정대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자 변창흠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83-6번지
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 : 붙임
5.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4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02-2133-7014) 및 서울투자운용(주) 사업관리팀(☎02-6958-238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준주거시설2 공공준주택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83-6	
② 대 지 면 적 (㎡)		6,388.900㎡	
③ 건 축 면 적 (㎡)		3,606.540㎡	
④ 건 축 연면적 (㎡)		36,425.396㎡	
⑤ 건 폐 율 (%)		56.450%	
⑥ 용 적 률 (%)		394.355%	
⑦ 주 택 규 모	동수 및 층수	2개동, 지하4층/지상20층	
	주택 형별	23A형(23.575㎡), 23B형(23.801㎡) 23C형(23.478㎡), 23D형(23.752㎡)	
	세대수	630세대	
⑧ 부대 복리 시설 현황	주민공동시설	113.567㎡	
	관리사무소	39.926㎡	
	방재실	39.960㎡	
	MDF실	15.702㎡	
	경로당	210.439㎡	
	사회적기업	133.312㎡	
	운동시설	2,107.007㎡	
	전기/발전기실	830.981㎡	
	펌프실 (빗물저류조)	390.022㎡(53.802㎡)	
	주 차 장	9,334.668㎡	
	경비실	26.526㎡	
근린생활시설	225.662㎡		
⑨ 공동저수시설(TON)		463TON	
⑩ 사 업 기 간		2017.02.01. ~ 2019.06.13	
⑪ 사 업 비		46,032,807,000원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계약면적		
㉔ 단위세 대면적	23A형	396	23.575	12.878	36.453	1.534	13.208	51.195	
	23B형	90	23.801	12.746	36.547	1.548	13.335	51.430	
	23C형	108	23.478	12.934	36.412	1.527	13.154	51.093	
	23D형	36	23.752	12.775	36.527	1.545	12.307	51.379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32호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BL2-14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주)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BL2-14 공공주택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장

1. 사업명 :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BL2-14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성명 : (주)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자 이정대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자 변창흠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235-28번지
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 : 붙임
5.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4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02-2133-7014) 및 서울투자운용(주) 사업관리팀 (☎02-6958-238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BL2-14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235-28	
② 대 지 면 적 (㎡)		11,197.600㎡	
③ 건 축 면 적 (㎡)		2,158.022㎡	
④ 건 축 연면적 (㎡)		29,557.874㎡	
⑤ 건 폐 율 (%)		19.272%	
⑥ 용 적 률 (%)		187.953%	
⑦ 주 택 규 모	동수 및 층수	3개동 지하1층/데크층/15층	
	주택 형별	39A형(39.487㎡), 39A형(주거약자)(39.487㎡) 39B형(39.624㎡), 39B형(주거약자)(39.624㎡), 44형(44.440㎡)	
	세대수	350 세대	
⑧ 부대 복리 시설 현황	관리사무소	90.108㎡	
	방재실	30.279㎡	
	MDF실	21.970㎡	
	작은도서관	759.928㎡	
	사회적기업	240.648㎡	
	경로당	155.663㎡	
	어린이집	288.046㎡	
	어린이놀이터	596.260㎡	
	전기/발전기실	253.214	
	펌프실 (빗물저류조)	207.571㎡(73.570㎡)	
	주 차 장	6,911.265㎡	
	경비실	14.000㎡	
	근린생활시설	123.120㎡	
⑨ 공동저수시설(TON)		267TON	
⑩ 사 업 기 간		2017.02.01. ~ 2019.01.25	
⑪ 사 업 비		31,604,799,000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계약면적		
㉔ 단위세대 면적	39A형	253	39.487	17.762	57.249	5.850	19.667	82.767	
	39A형 (주거약자)	24	39.487	17.762	57.249	5.850	19.667	82.767	
	39B형	24	39.624	17.677	57.301	5.871	19.736	82.907	
	39B형 (주거약자)	6	39.624	17.677	57.301	5.871	19.736	82.907	
	44형	43	44.440	20.353	64.793	6.585	22.134	93.512	
	계	35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33호

신정3지구 A6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주)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양천구 신정3지구 A6 공공주택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신정3지구 A6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성명 : (주)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자 이정대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자 변창흠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320-8번지
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 : 붙임
5.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4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서울신정3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신월동 일원	482,254.8 (10,233.8)	-	482,254.8 (10,233.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76호 (2005.12.29)

※ 면적 항목중 ()의 숫자는 계획대상지(신정동 1320-8대 일원)면적임.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82,254.8	-	482,254.8	100.0	-
주 거 지 역	310,688.0	-	310,688.0	64.4	-
제2종일반주거지역	268,045.0	-	268,045.0	55.6	-
제3종일반주거지역	13,218.0 (10,233.8)	-	13,218.0 (10,233.8)	2.7	-
준 주 거 지 역	29,425.0	-	29,425.0	6.1	-
자 연 녹 지 지 역	171,566.8	-	171,566.8	35.6	-

※ 면적 항목중 ()의 숫자는 계획대상지(신정동 1320-8대 일원)면적임.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변경없음)

(1) 도로

□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19	3,992	77,864.2	6	1,755	34,171.6	8	1,783	40,588.4	5	454	3,104.2
대로	2	1,069	30,253.8	1	564	8,735.6	1	505	21,518.2	-	-	-
중로	7	1,866	39,245.7	2	967	23,105.6	4	798	14,914.3	1	101	1,225.8
소로	10	1,057	8,364.7	3	224	2,330.4	3	480	4,155.9	4	353	1,878.4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36	30~41	주 간선도로	3,658 (505)	진명여고 사거리	서울시계	일반도로	-	'71.4.7 건고 제1971-198호	-
기정	대로	1	77	30~38	보조 간선도로	564	신정동 산125-28	신정동 805-13	일반도로	-	'97.10.30 서고 제1997-333호	-
기정	중로	1	438	22	집산도로	793	대로2-36	대로1-77	일반도로	-	'05.12.29 건고 제2005-476호	-
기정	중로	1	439	20.5	집산도로	174	대로2-36	중로2-455	일반도로	-	'05.12.29 건고 제2005-476호	-
기정	중로	2	455	18	집산도로	200	중로1-438	중로1-439	일반도로	-	'05.12.29 건고 제2005-476호	-
기정	중로	2	456	16	집산도로	203	대로1-77	중로1-439	일반도로	-	'05.12.29 건고 제2005-476호	-
기정	중로	2	457	16~20	집산도로	217	대로2-36	신정3지구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	'05.12.29 건고 제2005-476호	-
기정	중로	2	458	16	집산도로	178	대로2-36	소로2-2	일반도로	-	'05.12.29 건고 제2005-476호	-
기정	중로	3	452	12	집산도로	101	중로2-455	소로1-1	일반도로	-	'05.12.29 건고 제2005-476호	-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65	중로2-455	중로3-452	일반도로	-	'05.12.29 건고 제2005-476호	-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05	중로3-452	소로1-1	일반도로	-	'05.12.29 건고 제2005-476호	-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54	중로2-458	온수도시 자연공원	일반도로	-	'05.12.29 건고 제2005-476호	-
기정	소로	2	1	8.5	국지도로	300	중로1-438	신정3지구 남측지구계	일반도로	-	'05.12.29 건고 제2005-476호	-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88	중로2-458	온수도시 자연공원	일반도로	-	'05.12.29 건고 제2005-476호	-
기정	소로	2	3	8.5	국지도로	92	대로2-36	온수도시 자연공원	일반도로	-	'07.12.24 건고 제2007-606호	-
기정	소로	3	1	6	특수도로	219	중로2-457	중로2-458	보행자 전용도로	-	'05.12.29 건고 제2005-476호	-
기정	소로	3	2	4	특수도로	20	중로2-456	소로1-2	보행자 전용도로	-	'05.12.29 건고 제2005-476호	-
기정	소로	3	3	4	국지도로	77	신정3지구 서측지구계	대로2-36	일반도로	-	'07.12.24 건고 제2007-606호	-
기정	소로	3	4	4	국지도로	37	대로2-36	소로3-3	일반도로	-	'07.12.24 건고 제2007-606호	-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주차장	-	2,920.0	-	2,920.0		
기정	주차장1	주차장	신정동 783답 일원	1,077.7	-	1,077.7	'05.12.29 건고 제2005-476호	준주거 지역
기정	주차장2	주차장	신정동 722답 일원	1,842.3	*-	1,842.3	'05.12.29 건고 제2005-476호	준주거 지역

나) 공간시설 (변경없음)

(1)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녹지	-	4개소	8,239.3	-	8,239.3	-	-
기정	완충 녹지1	녹지	완충 녹지	신정동 802답 일원	1,272.7	-	1,272.7	'05.12.29 건고 제2005-476호	자연 녹지지역
기정	완충 녹지4	녹지	완충 녹지	신월동 726답 일원	3,443.1	-	3,443.1	'05.12.29 건고 제2005-476호	자연 녹지지역
기정	경관 녹지1	녹지	경관 녹지	신정동 산157-8임 일원	1,473.3	-	1,473.3	'07.12.24 건고 제2007-606호	자연 녹지지역
기정	경관 녹지2	녹지	경관 녹지	신정동 산161-3임 일원	2,050.2	-	2,050.2	'07.12.24 건고 제2007-606호	자연 녹지지역

(2)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4개소	131,299.2	-	131,299.2	-	-
소계		-	-	1개소	90,785.4	-	90,785.4	-	-
기정	도시자연 공원1	공원	도시 자연공원	신월동 산164-1임 일원	90,785.4	-	90,785.4	-	자연녹지지역 (온수도시자연 공원에 편입)
소계		-	-	1개소	37,513.8	-	37,513.8	-	-
기정	근린 공원1	공원	근린 공원	신정동 산125-27임 일원	37,513.8	-	37,513.8	'05.12.29 건고 제2005-476호	자연녹지지역 (저류시설 중복결정)
소계		-	-	2개소	3,000.0	-	3,000.0	-	-
기정	어린이공원 1	공원	어린이 공원	신정동 787답 일원	1,500.0	-	1,500.0	'05.12.29 건고 제2005-476호	제2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어린이공원 2	공원	어린이 공원	신월동 720답 일원	1,500.0	-	1,500.0	'05.12.29 건고 제2005-476호	자연녹지지역

※ 도시자연공원 면적은 사업대상지 내 면적임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1) 열공급설비

□ 열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열공급설비	1개소	1,700.6	-	1,700.6	-	-
기정	열공급 설비1	열공급설비	신월동 722-2답 일원	1,700.6	-	1,700.6	'07.12.24 건고 제2007-606호	자연 녹지지역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1)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공공청사	-	1개소	1,865.7	-	1,865.7	-	-
기정	공공청사1	공공청사	-	신정동 781-16전 일원	1,865.7	-	1,865.7	'05.12.29 건고 제2005-476호	제2종일반 주거지역

(2) 학교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2개소	25,082.9	-	25,082.9		-
기정	학교1	학 교	초 등 학교	신정동 781-14대 일원	11,431.4	-	11,431.4	'05.12.29 건고 제2005-476호	제2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학교2	학 교	고 등 학교	신정동 800-1답 일원	13,651.5	-	13,651.5	'05.12.29 건고 제2005-476호	제2종일반 주거지역

(3)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1개소	2,402.0	-	2,402.0		-
기정	사회복지 시설1	사회 복지시설	-	신월동 산174-4임 일원	2,402.0	-	2,402.0	'05.12.29 건고 제2005-476호	제2종일반 주거지역

마) 방재시설 (변경없음)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2개소	11,698.0	-	11,698.0		-
기정	유수지1	유수지	저류 시설	신정동 799전 일원	8,947.0	-	8,947.0	'05.12.29 건고 제2005-476호	근린공원1 내 설치 중복결정
기정	유수지2	유수지	저류 시설	신정동 산126-7임 일원	2,751.0	-	2,751.0	'07.12.24 건고 제2007-606호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 근린생활시설용지, 학교시설용지, 공공청사용지, 사회복지시설용지, 종교시설용지, 주차장용지, 문화체육시설용지, 열공급설비용지, 의료시설용지 (변경없음)

가) 공동주택용지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06,768.2	-	196,534.4	증) 10,233.8	206,768.2	-
A	A1	34,958.9	신월동 723답 일원	34,958.9	-	34,958.9	-
	A2	51,369.4	신월동 716-5답 일원	51,369.4	-	51,369.4	-
	A3	63,103.5	신정동 788답 일원	63,103.5	-	63,103.5	-
	A4	33,798.0	신정동 793-11전 일원	33,798.0	-	33,798.0	-
	A5	13,304.6	신정동 794답 일원	13,304.6	-	13,304.6	-
	A6	10,233.8	신정동 1320-8대 일원	-	증) 10,233.8	10,233.8	-

나) 자족시설용지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10,233.8	감)10,233.8	-	-
C	C1	-	신정동 780답 일원	10,233.8	감)10,233.8	-	지식 산업센터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 근린생활시설용지, 학교시설용지, 공공청사용지, 사회복지시설용지, 종교시설용지, 주
차장용지, 문화체육시설용지, 열공급설비용지, 의료시설용지 (변경없음)

가) 공동주택용지 (변경)

□ 기 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A1 ~ A5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공동주택지 평균 175%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높이 15층 이하 ※ 블록별로 최고고도지구(공항공도에 의해 수평표면, 원추표면에 해당 하는 높이) 및 대 공방어협조구역에 의한 높이를 넘을 수 없음
		배 치	• 시행지침 및 결정도 참조
		형 태	•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 ~ 6m

□ 변 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A1 ~ A6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1~A5 : 200% 이하 • A6 : 250% 이하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14항에 따라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20년 이상) 건립시 용적률의 20%까지 완화가능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높이 15층 이하 ※ 블록별로 최고고도지구(공항공도에 의해 수평표면, 원추표면에 해당 하는 높이)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의한 높이를 넘을 수 없음
		배 치	• 시행지침 및 결정도 참조
		형 태	•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 ~ 6m

나) 자족시설용지 (변경)

□ 기 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	C1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건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에서 규정하는 용도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층 이하 ※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에 의해 수평표면, 원추표면에 해당하는 높이) 및 대공방어협조 구역에 의한 높이를 넘을 수 없음
		배 치	-
		형 태	•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6m		

□ 변 경 : 삭제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 기 정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A	공동주택 A1	차량출입 불허구간	
	공동주택 A2	-	
	공동주택 A3	차량출입 불허구간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공동주택 A4	차량출입 불허구간	
	공동주택 A5	차량출입 불허구간	
B	근린생활시설용지 B1	차량출입 불허구간	
	근린생활시설용지 B2	차량출입 불허구간	
	근린생활시설용지 B3	-	
	근린생활시설용지 B4	차량출입 불허구간	
C	자족시설 C1	차량출입 불허구간	
D	유치원 D1	-	
	초등학교 D2	차량출입 불허구간	
	고등학교 D3	차량출입 불허구간	
E	공공청사 E1	차량출입 불허구간	
F	사회복지시설 F1	-	
H	주차장 H1	-	
	주차장 H2	차폐조경(차량출입구에 따라 중로2-458 도로 내에서 차폐조경 위치변경 가능)	
I	문화체육시설 I1	-	
J	열공급설비 J1	차폐조경(차량출입구에 따라 중로2-458 도로 내에서 차폐조경 위치변경 가능)	
K	의료시설 K1	차량출입 불허구간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A	공동주택 A1	차량출입 불허구간	
	공동주택 A2	-	
	공동주택 A3	차량출입 불허구간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공동주택 A4	차량출입 불허구간	
	공동주택 A5	차량출입 불허구간	
	공동주택 A6	차량출입 불허구간	
B	근린생활시설용지 B1	차량출입 불허구간	
	근린생활시설용지 B2	차량출입 불허구간	
	근린생활시설용지 B3	-	
	근린생활시설용지 B4	차량출입 불허구간	
D	유치원 D1	-	
	초등학교 D2	차량출입 불허구간	
	고등학교 D3	차량출입 불허구간	
E	공공청사 E1	차량출입 불허구간	
F	사회복지시설 F1	-	
H	주차장 H1	-	
	주차장 H2	차폐조경(차량출입구에 따라 중로2-458 도로 내에서 차폐조경 위치변경 가능)	
I	문화체육시설 I1	-	
J	열공급설비 J1	차폐조경(차량출입구에 따라 중로2-458 도로 내에서 차폐조경 위치변경 가능)	
K	의료시설 K1	차량출입 불허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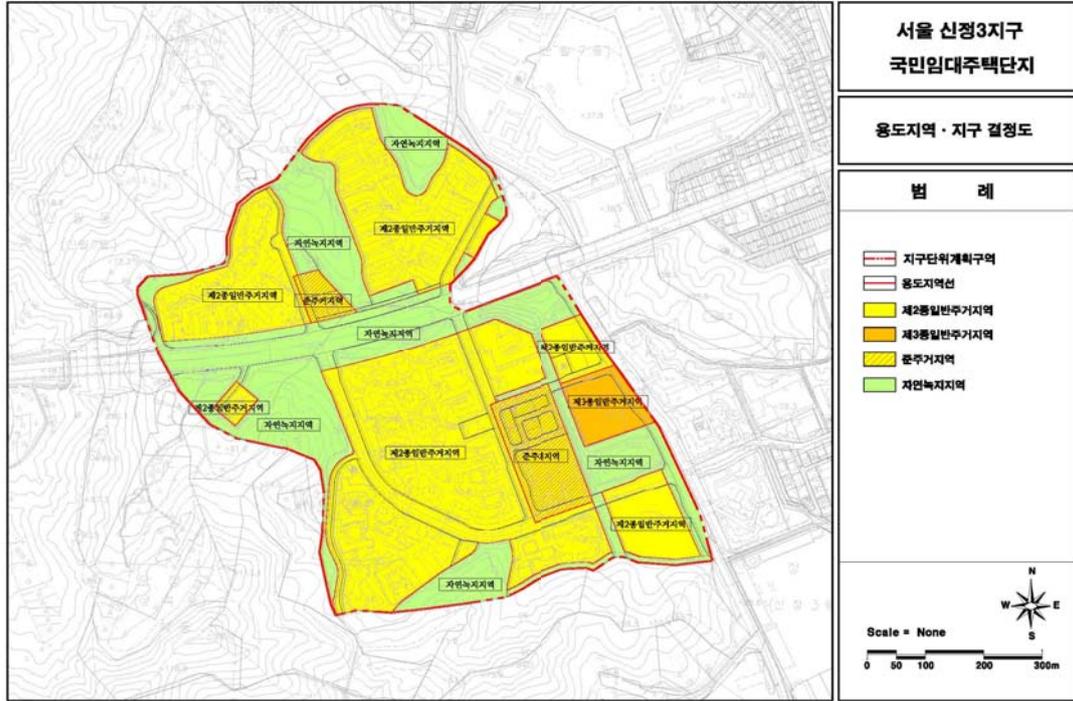
6. 지형도면 등 관계도면 : 첨부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임으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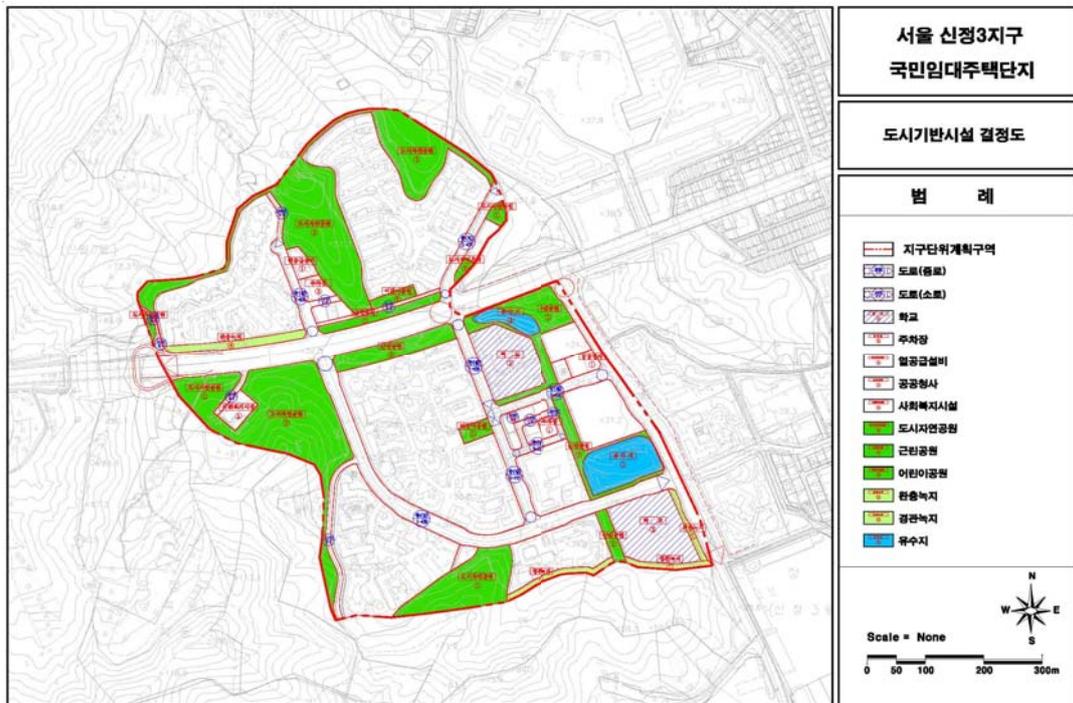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비치된 도서와 같음)

8.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 02-2133-7014) 및 서울투자운용(주) 사업관리팀(전화번호 : 02-6958-238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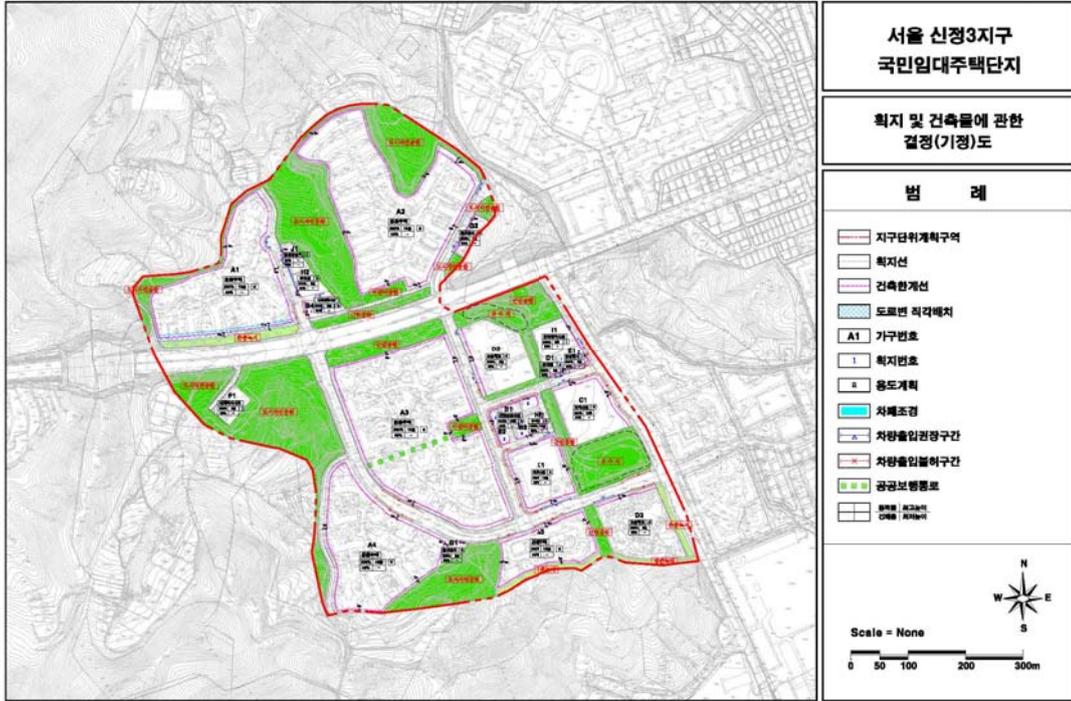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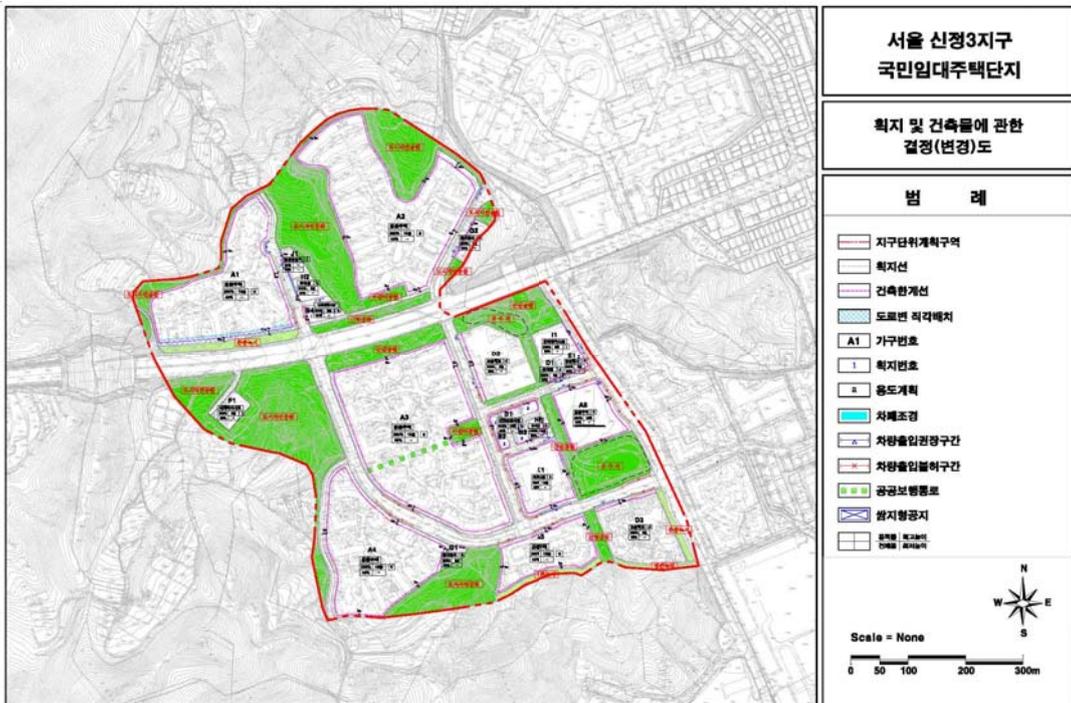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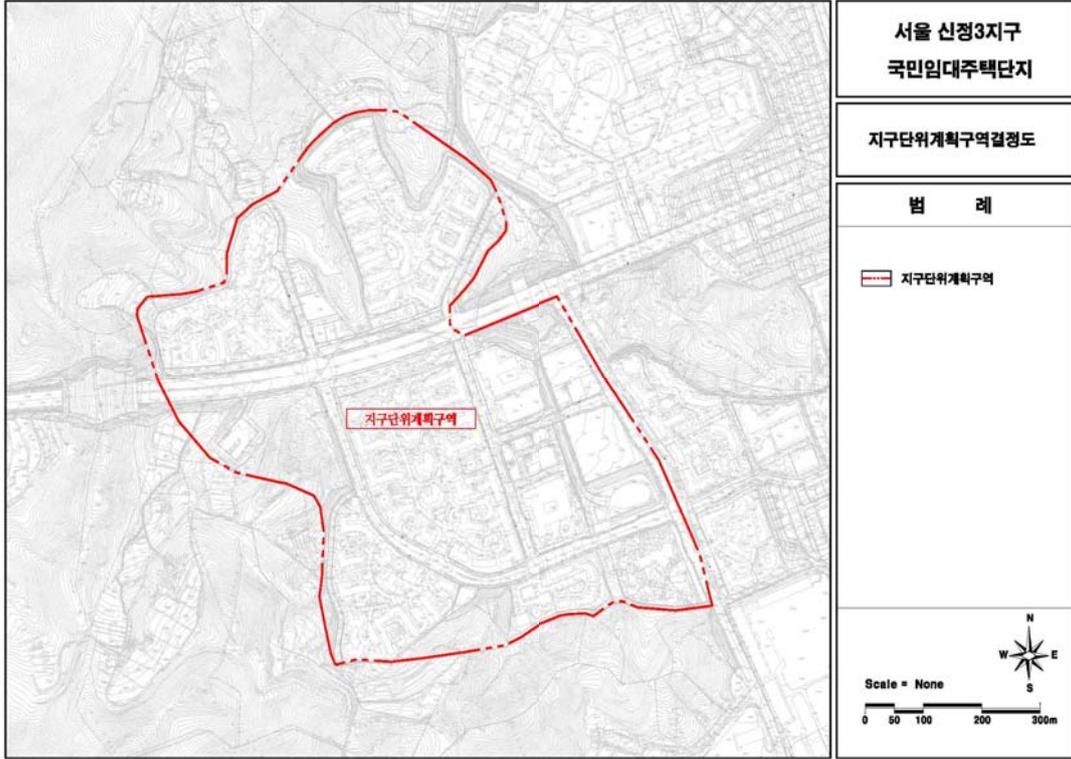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결정(변경)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신정3지구 A6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320-8	
② 대 지 면 적 (㎡)		10,233.8	
③ 건 축 면 적 (㎡)		2,719.188	
④ 건 축 연면적 (㎡)		37,952.858	
⑤ 건 폐 율 (%)		26.57	
⑥ 용 적 륜 (%)		268.05	
⑦ 주 택 규 모	동수 및 층수	4개동 지하2층/15층	
	주택 형별	26A형(26.800㎡), 26B형(26.940㎡), 31형(31.310㎡), 39A형(39.480㎡), 39B형(39.620㎡), 39A형(주거약자)(39.480㎡), 39B형(주거약자)(39.620㎡), 44형(44.280㎡)	
	세대수	499 세대	
⑧ 부대 복리 시설 현황	관리사무소	69.433㎡	
	방재실	40.959㎡	
	MDF실	35.266㎡	
	경비실	25.200㎡	
	경로당	152.217㎡	
	어린이집	316.685㎡	
	어린이놀이터	559.450㎡	
	유아놀이터	94.030㎡	
	작은도서관	184.335㎡	
	공용 (복도등)	117.754㎡	
	지역편의시설 (사회적기업등)	504.544㎡	
	전기/발전기실	243.235㎡	
	펌프실 (빗물저류조)	180.707㎡(57.987㎡)	
	주 차 장	8,847.663㎡	
근린생활시설	77.880㎡		
⑨ 공동저수시설(TON)		406TON	
⑩ 사 업 기 간		2017.02.01. ~ 2019.02.09	
⑪ 사 업 비		41,795,205,000 원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계약면적		
⑫ 단위세대 면적	26A형	60	26.800	12.856	39.656	2.945	12.827	55.428	
	26B형	44	26.940	12.769	39.709	2.960	12.894	55.563	
	31형	15	31.310	14.892	46.202	3.440	14.986	64.627	
	39A형	269	39.480	17.991	57.471	4.338	18.896	80.705	
	39B형	26	39.620	17.904	57.524	4.353	18.963	80.841	
	39A형 (주거약자)	36	39.480	17.991	57.471	4.338	18.896	80.705	
	39B형 (주거약자)	4	39.620	17.904	57.524	4.353	18.963	80.841	
	44형	45	44.280	20.657	64.937	4.865	21.193	90.995	
	계	499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34호

장군봉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38호(2010.7.1)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장군봉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장군봉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에 실내배드민턴장 및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공원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170-132 일대

3. 면 적 : 128,100㎡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76) 및 관악구 공원녹지과(☎ 879-6503)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장군봉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조서 (관악구 신림동 산170-132 일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연 면 적			동수 (동)	바닥면적	연 면 적			
계	128,100.00	17,826.9	2	321.17	482.22	163	128,100.00	18,920.29	4	1,124.37	1,863.22	167	증)1,093.39㎡
기본 시설	소 계	9,071.33					9,071.33	9,071.33					
	도로	8,099.82					8,099.82	8,099.82					
	광 장	971.51					971.51	971.51					
조경시설	1,000.36	1,000.36				5	1,000.36	1,000.36				5	
휴양시설	325.57	325.57	1	212.19	373.24	56	835.57	835.57	1	212.19	373.24	55	증)510㎡
운동시설	3,134.83	3,134.83				22	2,865.85	2,865.85	1	597.00	597.00	22	감)268.98㎡
교양시설						5	852.37	852.37	1	206.20	784.00	5	증)852.37㎡
편익시설	111.98	111.98	1	108.98	108.98	31	111.98	111.98	1	108.98	108.98	31	
관리시설	301.24	301.24				49	301.24	301.24				49	
녹지/기타	114,154.69	3,881.59					113,061.30	3,881.59					감)1,093.39㎡
참고사항	시설물	변경전 : 17,826.9㎡ ÷ 128,100.00㎡ × 100% = 13.92% (40%이하)										변경후 : 18,920.29㎡ ÷ 128,100.00㎡ × 100% = 14.77% (40%이하)	
	건폐율	변경전 : 321.17㎡ ÷ 128,100.00㎡ × 100% = 0.25% (10%이하)										변경후 : 1,124.37㎡ ÷ 128,100.00㎡ × 100% = 0.88% (10%이하)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구조	동수 (동)	바닥면적						연면적	구조	동수 (동)		
계				128,100.00	17,826.9	2	321.17	482.22	163			128,100.00	18,920.29	4	1,124.37	1,863.22	167	증)1,093.39㎡
기반 시설	계			9,071.33	9,071.33							9,071.33	9,071.33					
	도로			2,720.66	2,720.66							2,720.66	2,720.66					
	신책로			5,397.16	5,397.16							5,379.16	5,379.16					오타정정
	광장	다	1개소	971.51	971.51					다	1개소	971.51	971.51					
조경 시설	광장-1	다-1	신림동 산164-5	(971.51)	(971.51)					다-1	신림동 산164-5	(971.51)	(971.51)					
	계			1,000.36	1,000.36				5			1,000.36	1,000.36				5	
	플랜트박스	①	봉천동 산151-139	25.00	25.00				4	①	봉천동 산151-139	25.00	25.00				4	
	연못	아	2개소	747.60	747.60					아	2개소	747.60	747.60					
휴양 시설	연못	아-1	신림동 산164-2	(590.82)	(590.82)					아-1	신림동 산164-2	(590.82)	(590.82)					
	연못	아-2	신림동 산164-2	(156.78)	(156.78)					아-2	신림동 산164-2	(156.78)	(156.78)					
	목재데크	5	신림동 산164-2	38.55	38.55					5	신림동 산164-2	38.55	38.55					
	초화원	자	봉천동 산149-8	189.21	189.21				1	자	봉천동 산149-8	189.21	189.21				1	
계			325.57	325.57	1	212.19	373.24	56			835.57	835.57	1	212.19	373.24	55	증)510㎡	
정자	1	봉천동 산151-139	23.38	23.38				1	1	봉천동 산151-139	23.38	23.38				1		

구분	시설명	번경진						번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간축물(㎡) 동수(동) 바닥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간축물(㎡) 동수(동) 바닥면적	공작물(기)			
휴양 시설	파고라	②	2개소	90	90			2	②	3개소	90	90			3				
	파고라	②-1	신림동 산164-5	(30)	(30)			1	②-1	신림동 산164-5	(30)	(30)			1				
	파고라	②-2	신림동 산163-1	(30)	(30)			1	②-2	신림동 산163-1	(30)	(30)			1				
	파고라	②-3	신림동 산164-2	(30)	(30)			1	②-3	신림동 산164-2	(30)	(30)			1				
	장의자	③	공원전체					51	③	공원전체					51				
	경포당	2	신림동 1510-6	212.19	212.19	적벽돌+적심목+노출 콘크리트	1	212.19	373.24	2	신림동 1510-6	212.19	212.19	적벽돌+적심목+노출 콘크리트	1	212.19	373.24		
	휴게소								바	봉진동 산151-139	510.00	510.00					증)510㎡		
	계			3,134.83	3,134.83			22			2,865.85	2,865.85	경량 마감구조	1	597.00	597.00	22	감)268.98㎡	
	다목적운동공간	마	신림동 산164-5	2,427.57	2,427.57				마	신림동 산164-5	2,176.00	2,176.00						감)251.57㎡	
	배드민턴장	바	1개소	614.41	614.41				바	1개소								감)614.41㎡	
운동 시설	배드민턴장1	바-1	봉진동 산151-139	(614.41)	(614.41)				바-1	봉진동 산151-139									
	체력단련장	사	신림동 산164-5	92.85	92.85				사	신림동 산164-5	92.85	92.85							
	심내배드민턴장								자	1개소	597.00	597.00	경량 마감구조	1	597.00	597.00		증)597㎡	
	평행봉	④	신림동 산163-8					1	④	신림동 산163-8								1	
	폴웨이트	⑤	신림동 산164-5					1	⑤	신림동 산164-5								1	
	레그스트레치	⑥	신림동 산164-5					2	⑥	신림동 산164-5								2	
	롤링웨이트	⑦	신림동 산164-5					1	⑦	신림동 산164-5								1	
	트윈바디스쿼	⑧	신림동 산164-5					2	⑧	신림동 산164-5								2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구조	층수 (층)	바닥면적						연면적	구조			층수 (층)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 시설	스트레칭롤라	⑨	신림동 산164-5					1														
	크로스컨트리	⑩	신림동 산164-5					1														
	다리운동		신림동 산163-8					1														
	마리톤운동		신림동 산169-49					1														
	양다리운동		신림동 산163-8					1														
	양회전운동		신림동 산163-8					1														
	오피전운동		공원전체					3														
	팔올리기운동		공원전체					2														
	허리운동		공원전체					4														
	계				111.98	111.98	3	108.98	108.98	31												
교양 시설	어린이집																					
	계			111.98	111.98	3	108.98	108.98	31													
편의 시설	음수대	⑪	봉진동 산151-139	3	3																	
	화장실	3	봉진동 산151-139	108.98	108.98	RC	108.98	108.98														
	종합안내관		공원전체																			
	이경표		공원전체																			
	계			301.24	301.24																	
	배수로	4	봉진동 산151-139	186.69	186.69																	
관리 시설	조명등	⑫	공원전체																			
	들수로	6	공원전체	114.55	114.55																	
	목재벤치		공원전체																			
	목책		봉진동 149-8																			
	로프난간		봉진동 149-8																			
	계			301.24	301.24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구조 동수 (동)	연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구조 동수 (동)	연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계			114,154.69	3,881.59					113,061.30	3,881.59					감)1,083.39㎡
기타/ 특지	녹지맞기타	㉓	봉천동 산151-15	3,881.59	3,881.59					3,881.59	3,881.59					
		㉔	공원전체	110,273.1						109,179.71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4,094.77	8,099.82				
당초	도로계				533.10	2,720.66				
당초	소로	소계			533.10	2,720.66				
당초		3	1	5.0	379.56	1,984.04	주출입로	주진입구	장군봉배수지	
당초		3	2	3.5	21.17	74.20	시설연결	소로 3류-1	배수지 체육시설	
당초		3	3	5.5	132.37	662.42	도시계획 도로	봉천동 산149-8	신림동 산169-49	
산책로										
당초	산책로계				3,561.67	5,379.16				
당초	산책로	4	2	0.8	44.60	36.33	등산로	보림빌라	휴게소-라	
당초		4	4	1.8	70.40	157.27	등산로	소로 3류-1	소로 3류-1	
당초		4	6	0.8	248.14	200.09	등산로	산책로 4류-4	산책로 4류-9	
당초		4	8	0.8	65.56	51.09	등산로	산책로 4류-6	산책로 4류-9	
당초		4	9	0.8	165.85	149.11	등산로	산책로 4류-48	광장-2	
당초		4	10	0.8	97.57	76.77	등산로	산책로 4류-9	배드민턴장2	
당초		4	12	0.8	67.06	52.72	등산로	산책로 4류-9	봉림중학교	
당초		4	13	0.8	171.05	137.05	등산로	산책로 4류-12	산책로 4류-17	
당초		4	14	0.8	9.08	6.65	등산로	산책로 4류-52	산책로 4류-15	
당초		4	15	0.8	100.74	79.29	등산로	산책로 4류-10	산책로 4류-13	
당초		4	17	0.8	202.37	190.45	등산로	신림동 1510-6	산책로 4류-19	
당초		4	19	0.8	396.61	619.68	등산로	산책로 4류-17	산책로 4류-48	
당초		4	20	0.8	71.21	111.32	등산로	산책로 4류-17	산책로 4류-19	
당초		4	25	0.8	149.30	136.51	등산로	산책로 4류-30	산책로 4류-19	

구 분	등 급	류 별	번호	폭 원 (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4	29	0.8	11.07	7.63	등산로	산책로 4류-19	산책로 4류-25	
당초		4	30	0.8	162.16	443.94	등산로	나자로의집	산책로 4류-19	
당초		4	31	0.8	449.52	398.27	등산로	산책로 4류-30	산책로 4류-47	
당초		4	33	1.2	127.22	187.77	등산로	산책로 4류-31	산책로 4류-19	
당초		4	39	0.8	27.76	21.61	등산로	산책로 4류-31	산책로 4류-46	
당초		4	40	0.8	49.66	38.44	등산로	산책로 4류-47	산책로 4류-31	
당초		4	44	0.8	20.58	15.67	등산로	산책로 4류-31	배수지 체육시설	
당초		4	46	2.5	173.24	430.12	산책로	신관중학교	산책로 4류-47	
당초		4	47	5.0	145.06	631.29	산책로	신림동 92-47	소로 3류-1	
당초		4	48	3.0	346.39	1014.34	산책로	광장-1	다목적 운동공간	
당초		4	49	1.8	41.96	70.73	산책로	소로 3류-1	배수지 체육시설	
당초		4	51	0.8	43.17	33.69	산책로	산책로 4류-13	산책로 4류-13	
당초		4	52	0.8	76.64	59.83	등산로	산책로 4류-31	산책로 4류-46	
당초		4	53	0.8	27.70	21.50	등산로	산책로 4류-54	산책로 4류-46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35호

원지동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72호(2016.6.23)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된 원지동 체육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원지동체육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원내 다목적체육관 등을 건립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여가활동장소를 제공코자 함.

2.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28번지 일대

3. 면적 : 20,923㎡

4.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75) 및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2155-6861)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원지동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28번지 일원)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등수 (등)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0,923	20,923		3,166.76	6,331.87	17	
소 계	5,981	5,981		3,166.76	6,331.87	17	
기본 도로	3,842	(3,842)				-	
	신책로	1,165	1,165			-	
광 장	974	974				-	
조경 시설	329	329				13	
휴양 시설	-	-				-	
유희 시설	-	-				-	
운동 시설	4,753	4,753	1	3,166.76	6,331.87	4	
교양 시설	-	-				-	
편익 시설	-	-				-	
관리 시설	-	-				-	
녹지 및 기타	9,860	-				-	
시 설 율 (법정 50%이하)	$\{(11,063 - 3,842) / 20,923\} \times 100 = 34.51\%$						
건 폐 율 (법정 20%이하)	$(3,166.76 / 20,923) \times 100 = 15.14\%$						

도시계획도로(3,842㎡)는 시설율에서 제외

2. 시설조서

구분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고
							비담면적	연면적		
기 반 시 설	합계		20,923	20,923					17	
	소계		5,981	5,981					-	
	도로(도시계획도로)	1-1	26번지의 26필지	3,842 (3,842)					-	
	도로(신책로)	1-2	28번지의 27필지	1,165	1,165				-	
운 동 시 설	광장	1-3	28번지의 3필지	974	974				-	
	소계		4,753	4,753				4		
	체육관	2-1	29-2번지의 3필지	4,156	4,156	철근 콘크리트조	지하2층, 지상2층	3,166.76	6,331.87	-
	게이트볼장 (28mX23m)	2-2	28-1번지의 1필지	373	373				-	
조 경 시 설	베드민턴장 (19mX11.55m)	2-3	28-1번지의 1필지	149	149				-	
	주민운동시설	2-4	28-2번지	75	75				4	
	소계		329	329					13	
	파고라B (6mX5mX4m)	3-1	28-2번지 외 2필지, 산79-3번지	77	77				2	
녹 지 및 기 타	플랜터	3-2	28, 28-1번지	101	101				10	
	자연석쌓기	3-3	28번지	136	136				-	
	자전거 보관대	3-4	28번지	15	15				1	
	소계		329	329						
녹지				9,979						
기타		전지역	9,979	9,979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768.4	3,842				
당초	소로	소 계			768.4	3,842				
당초		2	1	8	768.4	3,842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도시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산책로	소 계			778.93	1,165				
신설		-	1	1.2	143.15	174.97	산책로	주차장 진입로	산책로2	
신설		-	2	1.4	54.75	76.75	산책로	산책로8	산책로3	
신설		-	3	4	15.13	60.50	산책로	산책로2,7	산책로4,6	
신설		-	4	1.4	28.65	40.11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5	
신설		-	5	2.4	7	16.80	산책로	산책로4	동남측 진입로	
신설		-	6	1.4	25.9	36.26	산책로	산책로5	산책로3	
신설		-	7	1.4	46.14	64.59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8	
신설			8	4	18.6	74.40	산책로	산책로2,7	산책로9	
신설			9	2	55.69	111.37	산책로	산책로8	산책로10	
신설			10	1.5	81.93	122.89	산책로	산책로9	산책로13	
신설			11	2	27.2	54.41	산책로	진입광장	산책로10	
신설			12	1.5	13.29	19.93	산책로	남측 진입로	산책로13	
신설			13	3.6	7.28	26.20	산책로	산책로10,12	산책로14	
신설			14	1.5	34.35	51.52	산책로	산책로13	진입광장	
신설			15	1.5	30.87	46.30	산책로	진입광장	주차장진입로	
신설		16	1	188	188.00	산책로	서측 산책 진입로	산책로14		

조성 계획도

원지동 체육공원

구분	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규모/수량	비고
계		체육공원	20,923	7,221	13	34.51%
도로/광장		소계	5,981	2,139	-	
	1-1	도로(도시계획도로)	3,942	-	-	
	1-2	도로(산책로)	1,105	1,105	-	
	1-3	광장	974	974	-	
운동시설		소계	4,753	4,753	-	
	2-1	체육관	4,156	4,156	-	
	2-2	계이트볼장	373	373	-	
	2-3	배드민턴장	149	149	-	
	2-4	추천운동시설	75	75	-	
휴양시설		소계	329	329	13	
	3-1	비고리	77	77	2	
	3-2	물놀이	101	101	10	
	3-3	자연사일기	156	156	-	
녹지		소계	9,900	-	-	
	4-1	녹지	9,900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37호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71조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계획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공동주택 리모델링
 - 명칭 :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2. 계획의 범위 및 목표연도
 - 대상범위 : 서울특별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 목표연도 : 2025년 (2015년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수립)
3. 기본계획 시행기간 : 2016.12.29. ~ 2025.12.31. 까지

4.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일 : 2016.12.29. (서울특별시장)

5. 주요내용

- 1)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하여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을 명확히 제시
 - 안전하고 부담가능한 리모델링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의 재생
- 2) 생활권별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 현황 전수조사 등을 통한 DB구축, 유형별 리모델링 수요를 분석 및 예측하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의한 도시과밀 및 이주수요 집중을 체계적으로 관리
- 3) 노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우리 시 여건에 적합한 성능개선과 장수명화 방안 등 유지·관리 및 지원방향 제시
- 4) 리모델링의 공공성을 확보한 서울형 리모델링 도입 및 유형개발을 통해 지역활성화 및 도시재생 유도

6. 열람장소

- 1) 세부도서는 생략하고, 고시 관련 세부도서 및 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39) 및 자치구 주택과(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해당 부서)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2) 또한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서울소식→ 고시·공고)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38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 고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단위 : 천원)

연 번	회 계 별	예 산 액
	계	29,801,117,123
1	일반회계	20,639,809,403

연 번	회 계 별	예 산 액
2	기타특별회계	8,371,307,720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409,970,864
	(2) 교통사업특별회계	1,145,771,948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24,475,880
	(4) 주택사업특별회계	1,826,189,884
	(5) 도시개발특별회계	1,314,587,598
	(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91,003,670
	(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78,898,323
	(8)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8,594,003
	(9) 소방안전특별회계	751,815,550
3	공기업특별회계	790,000,000
	(10) 수도사업특별회계	790,000,000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0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1. 양주 별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11-61호 (2011.1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5-53호(2015.02.26)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남양주 별내지구 주변도로(서울시구간-화랑로) 확장 및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지하차도 연장축소 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법 제90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 2.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및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열람하오니,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가.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사항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6-84 일원 (변경없음)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남양주 별내지구 주변도로(서울시구간-화랑로) 확장 및 지하차도 설치공사
- 3) 사업시행 규모 (변경없음)
 - 폭 38→42m, 연장 323m, 면적 18,215㎡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당 초)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 경)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변경)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2015.02.26) ~ 2016. 12. 31 (당 초)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2015.02.26) ~ 2017. 12. 31 (변 경)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불임 (변경없음)
- 7)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8)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남양주사업단 (☎031-528-5474)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02-2133-808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71호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공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경관을 고려한 디자인과 친환경적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경관을 고려한 디자인과 친환경적 설치기준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에서 적용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대상시설
2. 서울특별시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시설
3.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건축물 태양광시설

제3조(설치기준) ① 옥상 평지붕면 태양광모듈 설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태양광모듈 최대 높이는 옥상 바닥면으로부터 3미터 이하로 하며, 공업 및 준공업 지역은 최대 높이를 3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단, 건축물의 옥탑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모듈 최대 높이는 옥탑 바닥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로 한다.
2. 바닥면은 적설 및 강우량을 고려하여 바닥으로부터 최소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3. 경사각은 36° 이내 범위로 하고, 건물 높이가 50미터 이상인 경우는 최대 45°까지 할 수 있다.
4. 태양광모듈은 경계면 외측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유지관리 보수의 용이성 및 안전을 위하여 경계면 내측으로 모듈 경사면 아래쪽 면에서는 50센티미터 이상, 기타 면에서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 안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설치면적은 수평투영면적 기준으로 옥상 바닥 면적의 70퍼센트 이내로 설치한다.
6. 북측 경계선으로부터 태양광모듈 높이의 3분의 1 이상 내측으로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86조 및 제119조 규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경사지붕면 태양광모듈 설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태양광모듈의 최하단과 지붕면의 최상단 사이는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2. 태양광모듈은 경사지붕면에 평행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나, 최대 5° 이내의 오차범위를 허용한다.

- 3. 하중, 풍압, 적설, 강우 등에 따른 안전을 고려하여 지붕경계면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지붕의 용두 및 경계면의 불룩한 지점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 4. 지붕경계면을 제외하고 100퍼센트 이내로 설치하되, 태양광모듈이 설치되지 않는 부분은 디자인을 고려하여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4조(구조물 안전 확보)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 3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기존 건축물은 태양광 구조물에 대한 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공간 활용 디자인에 대한 완화) 친환경 요소를 고려한 공간 활용 디자인 설치 방식을 권장하며, 이 경우 건물 높이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5미터 이하로 설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 1. 공간 활용 디자인에 대한 완화 결정은 제7조 “건물태양광 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기준은 산업통산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신재생에너지 시공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 ② 본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개별법 및 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따른다.
 - 1. 건축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2.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 조례
 - 4. 서울특별시 옥상녹화시스템 설계지침 및 관련도서 작성지침

제7조(건물태양광 위원회) ① 제3조 설치기준 예외 시설 및 제5조 공간 활용 디자인에 대한 완화사항 심의를 위해 건물태양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녹색에너지과장이 되고, 위원은 시공·설계·구조·디자인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3.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 1.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 2. 공간 활용 디자인 설치 적용에 관한 사항
- 3.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 4. 태양광 발전시설 촉진을 위한 자문 및 지원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여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행자를 지정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한다.

제8조(자료제출) 건축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준용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준용표는 별표 1과 같다.

부 칙

이 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준용표

[붙임 1]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요약

<별표 1>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준용표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준용표				
설치유형 A. 옥상(평지붕)형 <input type="checkbox"/> B.경사지붕(박공지붕)형 <input type="checkbox"/>				
항 목	기 준		적용	비고
A. 옥상 (평지붕)형	최대 높이	태양광모듈 최대높이 옥상바닥면에서 3m 이하 단, 옥탑 위 설치 시 옥탑바닥면에서 2m 이하		
	바닥면 이격거리	30cm 이상		
	경사각	36° 이내 (50m 이상 45° 까지 가능)		
	공간 활용 디자인	최대 5m 허용 (건물대비 1/3 이하)		
	공업·준공업지역	높이 30% 완화 (태양광모듈 최대높이 3.9m)		
	경계면 돌출	돌출하지 않음		
	안전 공간	모듈 경사면 아래쪽 면에서 50cm 이상 이격 기타 3면에서 30cm 이상 이격		
설치면적	옥상바닥 면적의 70% 이내			
B. 경사지붕 (박공지붕)형	지붕상단 공간이격	태양광모듈 하단과 지붕면 사이 20cm 이내		
	경사각	지붕면과 평행 (오차범위 5°)		
	경계면 돌출	지붕경계면 이내로 설치		
	설치면적	지붕경계면을 제외하고 100% 이내		
공 통 사 항 (모든 설치 유형)				
시공 기준	신재생에너지 원별시공기준 준용(태양광설비/에너지관리공단)			
일조권 확보	북측 경계선으로부터 태양광모듈 높이의 1/3 이상 내측으로 이격 또는 건축법 시행령 86조, 119조 준용			
구조물 안전 확보	구조물 설치	3kW 초과 기존 건축물은 태양광구조물에 대한 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 확인서		

[붙임1]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요약

1. 옥상(평지붕)면 설치 높이	최대 높이	태양광모듈 최대높이 옥상바닥면에서 3m 이하 단, 옥탑 위 설치 시 옥탑바닥면에서 2m 이하
	바닥면 이격거리	30cm 이상
2. 옥상(평지붕)면 높이 완화사항	공간활용 디자인 권장사항	인정시 최대 5m 허용(건물대배 1/3 이하)
	공업 및 준공업 지역	30% 완화 (최대높이 3.9m 이하)
3. 경사지붕(박공지붕) 설치 높이	방열 공간	태양광모듈 하단과 지붕면 사이 20cm 이내
4. 경사각	옥상(평지붕)형	36° 이내 (건물높이 50m 이상은 45° 이내 가능)
	경사 지붕형	지붕면과 평행 (5° 이내 오차범위 허용)
5. 경계면 돌출	옥상(평지붕)형	돌출하지 않음
	경사 지붕형	지붕 경계면 이내로 설치
6. 안전 공간	옥상(평지붕)형	모듈 경사면 아래쪽 면에서 50cm 이상 이격
		기타 3면에서 30cm 이상 이격
7. 설치 면적	옥상(평지붕)형	옥상바닥 면적의 70% 이내
	경사지붕형	지붕경계면을 제외하고 100% 이내
8. 일조권 확보	옥상(평지붕)형	태양광모듈 최대 높이의 1/3 이상 북측경계면 내측으로 이격 (하단 일조권관련 법적기준 충족시 비적용)
	모든 설치유형	법적기준 준용 - 건축법시행령 제86조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9. 구조물 안전성 확보	구조물 설치	3kW 초과 기존 건축물은 태양광구조물에 대한 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 확인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74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전세버스) 등록취소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면허 등의 기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등록기준 등)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향고속관광(주)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7호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기준에 의거 사업등록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1. 처분대상 : 경향고속관광(주)(법인번호 110111-4396754)
2. 처 분 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전세버스) 등록취소
3. 처 분 일 : 2016.12.20.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전세버스) 등록기준 미충족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전세버스) 등록취소
6. 처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7호
7. 기타사항
 - 등록취소된 업체의 임원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신규등록시 향후 2년간 임원자격이 제한됨.
 - 등록취소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75호

부동산개발업 영업정지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영업정지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가. 대상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처분근거	처분일자
1	서울130047	쥬법건축종합 건축사사무소	강기세 박형일 송기봉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86 (도곡동, 부영빌딩)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2016.12.20.

나. 처분내용 : 부동산개발업 영업정지 1개월(2016.12.21.~2017.01.20.)

- 다. 처분사유 : 최근1년간 법 제17조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자본금, 임원, 전문인력)변경 보고의무 2차 위반
- 라. 부동산개발업 계속 수행 : 이 처분을 받기 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은 영업정지 처분 후에도 계속 수행
- 마.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2133-46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81호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1.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분야 : 12개 사업유형

연번	사업유형	사업내용(예시)
1	문화·관광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관광자원 발굴, 남산 및 한강 관광 코스 탐방활동 • 문화유산·문화재 보존활동, 전통문화 계승·발전,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 차(茶) 문화체험, 궁궐 순례 프로그램 운영, 생활공간 문화화 등
2	복지·인권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 계층 삶의 질 개선 및 서민주거 안정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복지증진, 양성평등 문화 만들기 • 이생이모작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등 취약계층 식사 무료제공 봉사활동 등
3	아동·청소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에게 글로벌 문화 경험 및 외국어 교육 기회 제공 • 청소년 자율 봉사조직 구성 지원 •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 무료 의뢰서비스 지원사업 등
4	시민의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질서 지키기, 공동체 의식함양, 계층간 갈등해소 및 세대간 이해증진 •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 및 도덕성 함양, 세대통합을 위한 예절교육 • 부정부패 감시 등 반부패문화 정착운동 등
5	외국인 노동자·이주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 및 검사,투약 • 이주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 이주노동자 보호 및 다문화 사회 프로젝트 추진 등
6	NPO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활동가 양성교육, 서울 둘레길·숲길 안전보안관 양성 및 활동 • 정부·지자체 지원제도 활용 정보제공 등 시민사회 지원활동 • NPO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 등

연번	사업유형	사업내용(예시)
7	교통·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재난 예방활동, 재난구조 활동, 심폐소생술 교육 안전사고 예방 활동(학교·성·가정 및 식품), 안전 불감증 해소 안전문화 교육·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사업 등
8	통일·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통일 기반 구축 활동, 남북 사회통합 교육활동 국가안보 및 나라사랑 활동, 통일·안보 체험 교육 및 캠페인 등
9	북한이탈주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북청소년 맞춤형 교육활동, 탈북자 정착 대안학교 및 역사문화 체험활동 탈북자 맞춤형 심리치료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탈북자 진로교육 등
10	환경보전·자원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재활용, 자연생태 체험학습,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생활쓰레기 줄이기 등
11	도시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성화지역 내 주민활동가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역별 특성 및 가치보존,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 등 도시재생 지역내 노후 건물환경개선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유휴공간 조성
12	기타 공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사업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 사업유형별 사업내용은 예시이며,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님.

2. 신청 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2017.1.26.)까지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3. 사업추진기간 : 2017. 3월 ~ 11월

4. 신청사업 수 : 단체별 1개 사업

5. 지원규모 및 심사·선정 방법

지원사업 분야	지원규모	심사선정방법
12개 사업유형	사업별 30백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별 심사(개별) - 2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사(분야별) - 3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전체회의(최종결정)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은 대상이 아님)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7. 1. 12.(목) 09:00 ~ 2017. 1. 26.(목) 18:00까지
 - ※ 마감일(2017.1.26)은 신청 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 예상되므로 조기신청 접수 요망 (18:00이후 접수 자동 차단)
- 신청방법 : 인터넷(<https://ssd.wooribank.com/seoul>) 신청·접수(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 ※ 인터넷 접수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seoul>)
 → 「진행사업 공고」에서 사업신청 클릭 → 지원사업 등록

8.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7. 1. 11.(수) 14:00, 서울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설명회 내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 ※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사업선정 심사기준·방법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선정기준 :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도, 파급효과, 경제성, 독창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8조)
 - ※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통한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①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을 제출한 경우
 - ②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서울시, 자치구에서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③ 서울시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법정단체(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등)
- 결과발표 : 2017. 3. 2.(목) 서울시NGO협력센터(<http://club.seoul.go.kr/ngo>) 게시 및 선정 단체 개별 통지

10.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민간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보조금 지원단체로 지정되면 보조금전용통장(계좌) 사본 및 자부담금 예치통장(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치통장에는 지원 보조금의 최소 5%이상을 예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사업기간 동안 분할 교부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11.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실행계획서, 최종평가결과, 단체별 최종실적보고서 등을 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2133-6562, 2133-6565)으로 문의바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82호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공고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우리시 예규인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제3항~제5항의 신설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안건 상정전에 규제영향분석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규제영향분석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저공해조치 완료된 건설기계를 사용토록 의무 부과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 기술심사담당관 -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팀장 류용열, 담당 윤희태								
4. 근거법령명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20조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대상)						관 련 규 제 수	1 건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서울시와 계약하는 건설업체 - 대한건설기계협회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없음								
7.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 규제의 내용	-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 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는 저공해조치 완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서울의 미세먼지오염도는 선진국 주요도시의 2~3배 높은 실정에 있고, 경유차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그 크기가 매우 작고(2.5 μ m 내외) 벤조피렌 등 각종 발암성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인체에 대한 위해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서울시 오염발생원별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연소 35%, 난방·발전 27%, 건설기계 17%, 비산먼지 12%, 기타 7%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통부문에서 52%(건설기계 17%)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요구됨
- 특히, 전체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하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5종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함.
- 또한, 건설기계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대형화, 노후화되어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발생이 아주 많으나, 배출허용기준이 13~15배 완화되어 있고,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배출가스 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관리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어 건설기계 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본 개정안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공공부문 건설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도로이동 오염원 중 건설기계 5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굴삭기, 지게차)를 중점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을 통해 이번 예규 개정 목적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음.
-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서울시에 등록된 Tier 1이하('04년식 이전 등록)를 적용한 굴삭기, 지게차중 엔진교체를 희망하는 차량소유주의 신청에 의해 보조금을 대당 907만원~2,54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05년식 이전등록 차량중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고자 하는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에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70~95%를 지원해주고 있으므로 서울시 공공부문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 완료된 건설기계를 사용토록 하는 제도는 실현가능함

3. 규제의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장치를 설치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하는 본 개정외 대체수단 및 중복이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비용·편익 분석

- 저감장치부착 및 저공해 엔진교체 등의 저공해조치를 한 경우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건설기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산출한 사회적 비용이익
 - 저감장치(PM-NOx동시저감장치) 부착시 차량자체 배출량 대비 PM 80%, NOX 70% 이상의 저감효과를 나타냄
 - 대형버스 및 대형화물차를 대상으로 부착할 경우 B/C Ratio가 1을 넘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편익(천원)	비용(천원)	B/C
시외버스	30,018	19,155	1.52
전세버스	81,667	19,155	4.15
대형화물차	57,195	19,155	2.98

- 노후 엔진을 최근 배출규제를 만족하는 신폼엔진으로 엔진교체시 PM 60%, NOX 45% 이상의 저감 효과가 나타남
- 살수차를 제외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교체할 경우B/C Ratio가 1을 넘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차종		편익(천원)	비용(천원)	B/C
엔진교체	살수차		11,271	28,917	0.39
	지게차	D25S	41,393	12,268	3.37
		D50S~D70S	41393	20286	2.04
		D35S~D45S	41393	14919	2.77
		D20S~D30S	41393	8911	4.64
	굴삭기	SOLAR140W	72718	18893	3.85
		SOLAR55	72,718	28,160	2.58

○ 노후된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사업을 통하여 배출가스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줄임으로서 배기가스에 의한 인체의 유해성을 저감시켜 시민의 질병 위험성을 줄일 뿐 만 아니라, 먼지 없는 쾌적한 친환경 도시 유지로 서울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등 포괄적 편익이 발생함.

나.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과 경제성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건설기계에 비해 월등히 높고, 특히 저공해조치에 따른 편익은 해당지역 주민·종사자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편익이 발생하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 최근 건설공사장에서도 청정 공사장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후 건설기계 사용으로 매연 등 미세먼지로 인해 종사자의 건강과 인근 시민에 의한 민원 발생 등으로 노후 건설기계 반입을 제한하는 추세로 있음

○ 이에 따라 민간 건설공사장에서도 저공해화된 건설기계를 사용시 시장경쟁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 예상됨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노후 건설기계 제한은 공익적 목적하에 추진하는 사항이며,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에 따라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것은 아님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규제의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규정에 의해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하지 않은 자동차와 Tier 1이하('04년식 이전 등록) 적용 굴삭기, 지게차를 최신엔진(Tier 3이상)으로 교체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 공공 건설공사장 사용 제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의 명확성, 일관성을 확보하였음.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및 제20조(기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대상)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

첨부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 1부.

서울특별시 예규 제 호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③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는 저공해조치 완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건설기계 중 저공해조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믹서트럭 :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건설기계
2. 굴삭기, 지게차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 적용 건설기계

⑤ 제4항의 저공해조치 대상 중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M-NOx) 부착한 건설기계
2. 저공해 신형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Tier1→Tier3 이상)

이 예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2133 - 8568) 및 대기관리과(☎ 2133 - 36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8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393호(2004.11.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04-107호(2004.12.27.)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55호(2016.06.0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에 대하여 사업구간 추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자,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에 비치하여 토지·물건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이며, 열람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변경계획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의 명칭: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2) 사업시행구간(변경없음): 동작구 상도동 159-21~207-5(양녕로~상도동길)

3)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가) 도로확장: 폭 2차로→4~6차로, 길이 324m

(지하차도 확장: 폭 2차로→4차로, 길이 230m)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사업의 기간(변경없음): 2006.11.23 ~ 2018.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 조서

가) 토지·물건 조서의 일부 변경 및 추가: [붙임 조서]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주소

가) 토지·물건 조서의 소유자 및 관계인 일부 변경: [붙임 조서]

8) 공공시설물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나. 열람 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열람시간 09:00~18:00)

다. 열람 장소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80)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02-3708-8765)

토지 세목조사

[당초 고유번호 26~27]

고유 번호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m2)	편입면적 (m2)	소유자		지분	성명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주소	주 소		관계 관계
경 26	211-447	대	3,216	395	한도순	서울시구로경인로48-14, 103-203(오류동, 동부아파트)	63.60/3,216	경서농업협 동조합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977-20	근저당	가-1-101	
					박병원	서울시동작구상도동211-447 대광빌라가-102	63.60/3,216				가-1-102	
					윤명숙	서울시동작구대방동503 대방2단지주공아파트 209-202	63.60/3,216				가-1-103	
					김인현	서울서초구반포동994 반포아파트30동301호	63.60/3,216				가-1-104	
					이정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7 은하마을 503-101	63.60/3,216				가-1-105	
					김경란	서울시동작구상도동211-447 대광빌라가동106호	63.60/3,216	이성규	인천 연수구 옥련동 634-1 삼성아파트 2-1601	근저당	가-1-106	
					김용규	서울시동작구상도동211-447 대광빌라가동107호	63.60/3,216	조흥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	근저당	가-1-107	
					김희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216,가동 100호(상도동, 대광빌라)	395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	근저당	가-1-108	
					관용재			31.80/3,216				
					문숙영	서울시동작구상도동211-447 대광빌라가동109호	63.60/3,216	영등포농민 협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97-2	근저당	가-1-109	
					조옥석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216,가동 110호(상도동, 대광연립)	63.60/3,216	외환은행 외 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1	근저당	가-1-110	
					최은진	전북익산시황등면 웅산로 109-47	63.60/3,216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203	근저당	가-2-201	
					박주경	서울시동작구상도동 301-135	63.60/3,216				가-2-202	
남양현	충남아산시도고면시전리518	63.60/3,216				가-2-203						
신순복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8길 6	63.60/3,216				가-2-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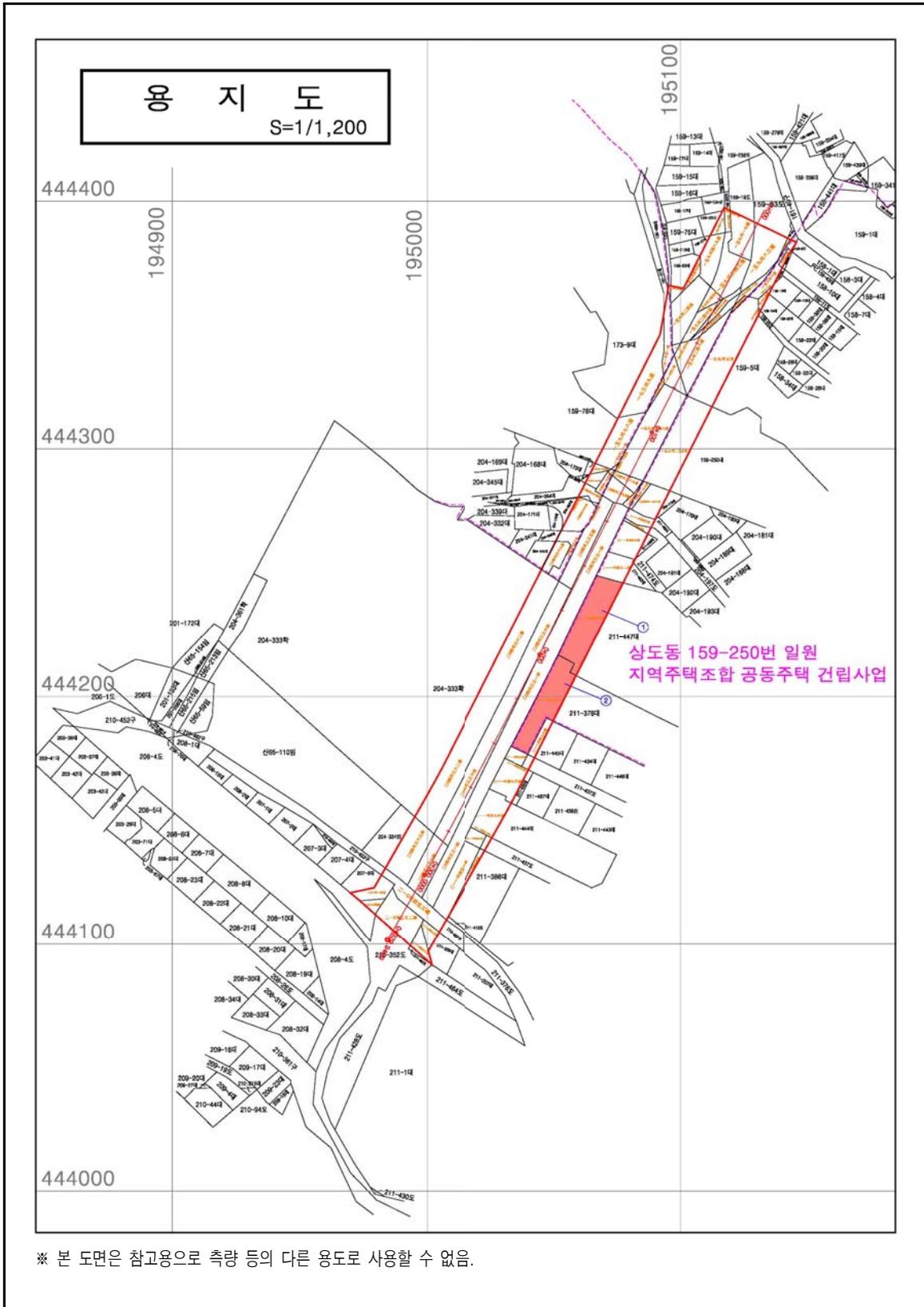
고유 번호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m ²)	면적면적 (m ²)	소유자		지분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미자	서울시동작구양녕로26길64	63.60/3,216			가-2-205
					김동현	서울시동작구장승배기문4길9, 108-604(상도동,상도더샵아파트)	63.60/3,216			가-2-206
					김용기	서울시동작구상도동211-447 대광빌라가동207호	63.60/3,216			가-2-207
					임주란	서울시노원구상계동633 주공아파트1420-304	63.60/3,216			가-2-208
					임돈호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11-447대광빌라 기동 209호	63.60/3,216			가-2-209
					유지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216,가동 210호(상도동, 대광연립)	63.60/3,216	국민은행	서울시중구남대문로 84(을지로2가)	가-2-210 근저당
					장정숙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216,가동 301(상도동, 대광빌라)	63.60/3,216	우리은행	서울시중구소공로51 (회현동1가)	가-3-301 근저당
				395	박명자	광주시북구호동로53(문흥동)	63.60/3,216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66(을지로2가)	가-3-302 근저당
					노순자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11-447 대광빌라 가-303	63.60/3,216	외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81	가-3-303 근저당
					최다남	서울시동작구상도동211-447 대광연립가동304호	63.60/3,216			가-3-304
					오택식	서울시동작구상도동211-447 대광빌라가동305호	63.60/3,216			가-3-305
					이혜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암로22길 30,3층동303호(제기동)	63.60/3,216			가-3-306
					채기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장승배기문26, 102-803(상도동, 아이파크상도동)	63.60/3,216	최상용 외 1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 26, 212-305(대실영정아파트2단지)	가-3-307 근저당
					이현규	서울시동작구상도동211-447 대광빌라가동308호	63.60/3,216			가-3-308

고유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면 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유자		지 분	성 명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변경 26	211-447 대 상도동				한성준	인천서구삼곡동238-1태영아파트4-606	31.80/3,216				가-3-309	
					이영주		31.80/3,216					
					정춘자	서울시동작구상도동211-447 대광빌라기동310호	63.60/3,216	우리은행 외 1	서울시중구 회현동1가 203	가-3-310		
					서양선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216,나동 101(상도동, 대광빌라)	66.40/3,216	조흥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가 14	나-1-101		
					서효석	서울시동작구상도동211-447 대광빌라나동102호	66.40/3,216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203	나-1-102		
					김영민	경기도남양주시외부음덕소로67-14,101 -101(인정하이츠)	66.40/3,216			나-1-103		
					임민숙	충청남도아산시득산동392-2부영아파트1 01-806	66.40/3,216			나-1-104		
					김수길	서울시관악구신림동233-11 간영신림5차아파트306호	66.40/3,216			나-1-105		
					강순임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10-169	66.40/3,216			나-1-106		
					최준용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등동백택지개발 지구제4-4블럭호수마을서해그랑블1109 -304	66.40/3,216			나-2-201		
					강은숙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봉1길 115-8,401호(상도동,보람빌리지)	66.40/3,216			나-2-202		
					김두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216,나동 203호(상도동, 대광연립)	66.40/3,216			나-2-203		
박희목	서울시동작구상도동신65 -104대광빌라나동204호	66.40/3,216			나-2-204							
조애형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8단지3,1동303호 (오류동,우석빌라)	66.40/3,216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	나-2-205						

고유 번호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유자		지 분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법경 26	211-447 대			395	이진	서울시동작구상도동211-447 대광빌라나동206호	66.40/3,216			나-2-206
					장지호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63길12,비동22 3호(산성동,엘지선릉에클라트)	66.40/3,216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51(회현동1가)	나-3-301
					박연근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4-94	66.40/3,216	서울특별시 동작구		나-3-302
					유승목	전남동광양시태인동1320-41 동광아파트102동210호	66.40/3,216			나-3-303
					강혁민	서울구로구오류동342영풍마드레빌아파트 107-703	66.40/3,216			나-3-304
					오은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216,나눔 305호(상도동, 대광빌라)	66.40/3,216	신한은행	서울시중구태평로 2가20	나-3-305
법경 27	211-378 대			359	임영순	서울시강동구천호동217-132 동아하이빌아파트103-1904	66.40/3,216			나-3-306
					조진근	충북청주시상당구사천동 229-1신동아아파트12-107	112.80/3,216	하나은행외4	서울시중구을지로66(을지로2가)	다동 (상가)
					박옥순	서울시동작구상도동211-378 청학빌라가동101호	87/ 2,014	국민은행	서울시중구남대문로2가9-1	가-1-101
					장운태	서울시동작구상도동208-17	87/ 2,014			가-1-102
					이신림	서울시동작구상도동211-378 청학빌라가동103호	87/ 2,014	한국주택 금융사	서울시중구남대문로57가6-1	가-1-103
					김제섭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78-41	87/ 2,014			가-1-105
법경 27	211-378 대			359	노홍우	서울관악구신림동1694신림원데아파트11 2-806	87/ 2,014			가-1-106
					이무엽	서울시동작구상도동211-378 청학빌라가동107호	87/ 2,014	하나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66 (을지로2가)	가-1-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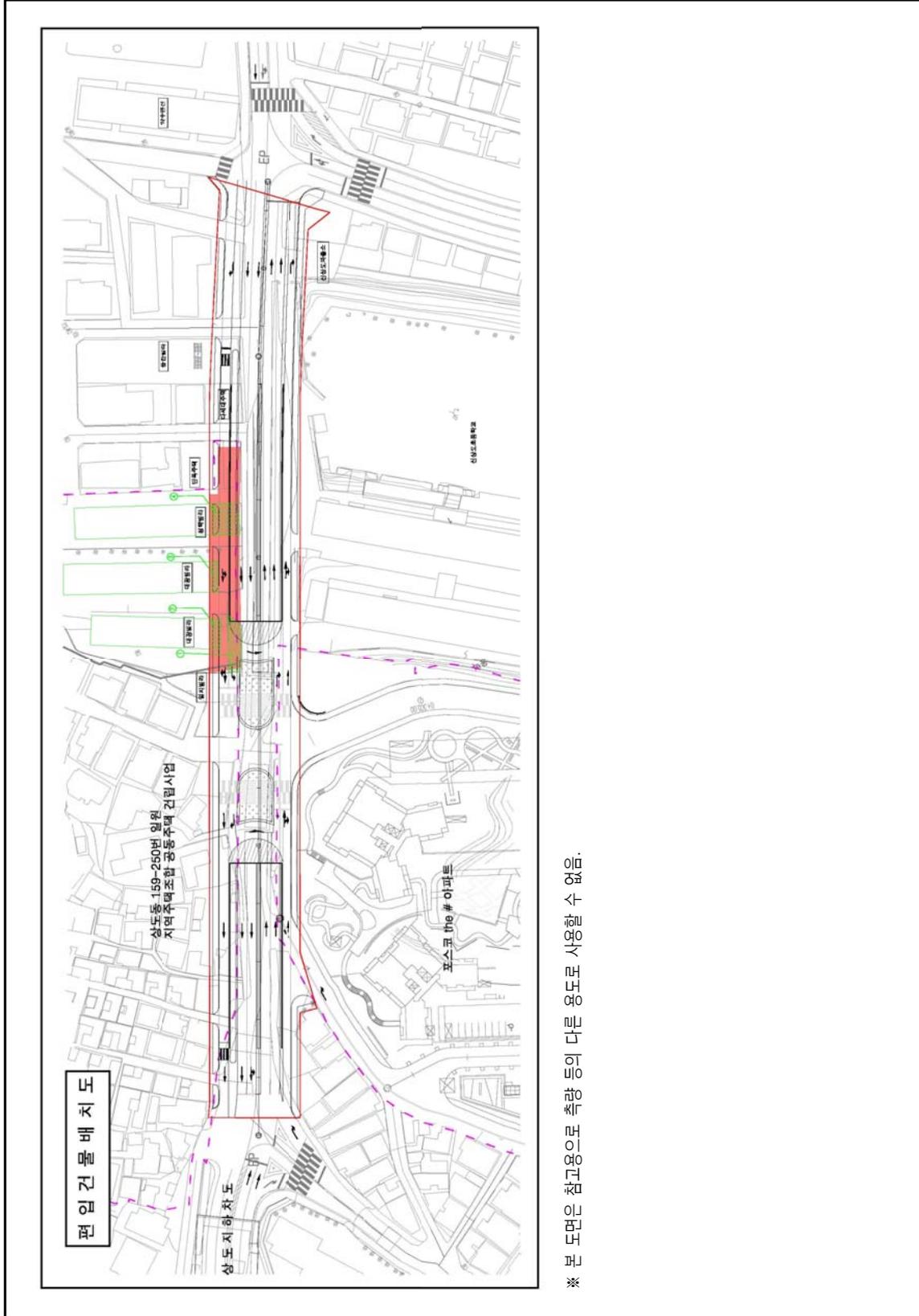
고유 번호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유자		지 분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변경 27	211-378 대 동작구 상도동				서윤희	경기도안산시상록구정재로59 (부곡동)	87/ 2,014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	가-2-201
					이봉희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159-111메이저빌20 2	87/ 2,014				가-2-202
					김유배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212,가동203호 (상도동, 청학빌라)	87/ 2,014				가-2-203
					니중영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11-378청학빌 라가동205	87/ 2,014	신한은행 외5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120	근저당	가-2-205
					배은희	서울영등포구 당산동4가29한강아파트101 -607	43.5/ 2,014				가-2-206
					유원준		43.5/ 2,014				
					이시환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11-378청학빌 라가-207	87/ 2,014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51 (회현동1가)	근저당	가-2-207
					송영광		43.5/ 2,014	영등포농업 협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194(신길 동)	근저당	가-3-301
					송영선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9길20,401호(상 도동,현대캐슬)	43.5/ 2,014	영등포농업 협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194(신길 동)	근저당	
					문양로	인천연수구 송촌동 918조흥아파트102-10 2	43.5/ 2,014				가-3-302
					정태희	서울 동작구 대방동 500성원아파트103-18 08	43.5/ 2,014				
					박정훈	서울 강남구 도곡동 963역삼레이크아파트109 -504	43.5/ 2,014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66 (을지로2가)	근저당	가-3-303
					김상혜		43.5/ 2,014				
박성웅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59동신아파트104-4 03	87/ 2,014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120	근저당	가-3-305					
고광희	서울시 동작구 211-378 청학빌라에이동306호	87/ 2,014	영등포농업 협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194(신길동)	근저당	가-3-306					

고유 번호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유자		지 분	성 명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경 번 27	211-378 대	359	2,014	359	유춘자	서울시동작구211-378 정학빌라가동307호	87/ 2,014	조흥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	근저당	가-3-307				
					김이준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211-378형학빌 라나-101	74.66/2,014	서울신용보 증재단 외1	서울시마포구마포대로163(공덕 동,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가임류, 근저당	나-1-101				
					전원표	서울시동작구상도동211-378 정학빌라나동102호	74.66/2,014				나-1-102				
					이춘희	서울특별시동작구보라매로9가길15,102호 (신대방동)	37,33/2,014								
					신정웅	서울특별시동작구양녕로212,나동201호 (상도동,정학빌리지)	37,33/2,014	신한은행 외3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20(태평로2가)	근저당	나-2-201				
					조삼상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정학리409정학주공 아파트308-206	74.66/2,014				나-2-202				
					이지현	경기도구리시인창동663-1주공아파트103 -1104	74.66/2,014				나-3-301				
					인필국	서울시동작구상도동211-378 정학빌라나동302호	74.70/2,014				나-3-302				
					합 계		754								
					2필지			5,230							



물 건 조 서

고유 번호	소재지	위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건물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추가 1	동작구 상도동	0km170 (좌)	211-447 대	상가	슬라브 (2층)	152	조진근	충북정주시성당구사천동229-1 신동아파트 12-107 - (상가소유자)	효성유치원
추가 2		0km175 (좌)	211-447 대	빌라	슬라브 (3층)	123	서양선	서울특별시동작구양녕로216, 나동101 (상도동, 대광빌라) - (101호소유자)	대광빌라 나동
							최준용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백동동백택지개발지구제4-4블럭호 수마을서해그랑블1109-304 - (201호소유자)	
							장지호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63길12, 비동223호(삼성동, 엘지 신릉에클라트) - (301호소유자)	
추가 3		0km190 (좌)	211-447 대	빌라	슬라브 (3층)	93	한도순	서울시구로구경인로48-14, 103-203 (오류동, 동부아파트) - (101호소유자)	대광빌라 기동
							최윤진	전북익산시황등면용산로109-47 (201호소유자)	
							장평숙	서울특별시동작구양녕로216, 가동30 1(상도동, 대광빌라) - (301호소유자)	
추가 4		0km215 (좌)	211-378 대	빌라	슬라브 (3층)	327	박옥순	서울시동작구상도동211-378 청학빌라가동101호 - (101호소유자)	청학빌라 기동
							서윤희	경기도안산시상록구정재로59 (부곡동) - (201호소유자)	
							송영광 외1인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로19길20, 401호 (상도동, 현대캐슬) - (301호소유자)	
4 건 합	계					695			



※ 편입도면인 참고영역으로 축광 등기 다른 영도로 사용될 수 없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88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원섭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근포로106번길 ** (하성면)	일시: 2016-07-07 06:42 장소: 행주대교 북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축하중 1.76t 초과	처분일: 2016. 11. 25.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7. 1. 31.
박성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24-14, ***동 ***호 (서창동, 인천서창엘에이치1단지)	일시: 2016-07-29 16:29 장소: 행주대교 남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높이 0.11m 초과	처분일: 2016. 11. 25.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7. 1. 31.
김영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20가길 ** (미아동)	일시: 2016-10-11 18:21 장소: 행주대교 북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높이 0.11m 초과	처분일: 2016. 11. 25.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7. 1. 31.
김태민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대소길 18, ***호 (원곡면)	일시: 2016-10-14 19:54 장소: 별말로 내용: 제한 높이 0.15m 초과	처분일: 2016. 11. 25.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7. 1. 31.
권호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	일시: 2016-10-14 22:07 장소: 행주대교 북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축하중 5.96t 초과	처분일: 2016. 11. 25. 과태료: 150만 원 납기일: 2017. 1. 31.
강민구	인천광역시 서구 원정로64번길 7, ***동 ****호 (마전동, 영남탑스빌아파트)	일시: 2016-10-17 15:09 장소: 별말로 내용: 제한 폭 0.25m 초과	처분일: 2016. 11. 25.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7. 1. 31.
이창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천동로23번길 13-9, *동 ***호 (계산동, 장미연립)	일시: 2016-10-20 15:58 장소: 별말로 내용: 제한 폭 0.2m 초과	처분일: 2016. 11. 25.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7. 1. 31.
이기평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129번길 12-5, *동 ***호 (작전동, 하나마이빌)	일시: 2016-10-21 15:57 장소: 별말로 내용: 제한 폭 0.28m 초과	처분일: 2016. 11. 25.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7. 1. 31.
안우수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하평목내길 **-* (봉산면)	일시: 2016-10-27 21:35 장소: 별말로 내용: 제한 폭 0.86m 초과	처분일: 2016. 11. 25. 과태료: 100만 원 납기일: 2017. 1. 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이종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43길 **-* (청량리동)	일시: 2016-08-06 18:15 장소: 행주대교 남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축하중 3.27t 초과	처분일: 2016. 9. 26. 과태료: 80만 원 납기일: 2016. 11. 30.
구민상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834번길 36, *동 ***호 (부평동, 대양아트빌)	일시: 2016-08-06 14:56 장소: 방화대로 신방화사거리 내용: 제한 축하중 1.7t 초과, 3회	처분일: 2016. 9. 26. 과태료: 100만 원 납기일: 2016. 11. 30.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5. 납부기한: 2017. 1.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89호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등 공표 공고**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에 대한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공 고 사 항

구 분	내 용
개정조례명칭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청구인의 대표자	○ 성 명 : 이신희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주
청구취지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
청구이유	○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를 사용 허가제로 변경
주요내용	○ 서울광장 '사용신고' 를 '사용허가 신청' 으로 변경 ○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 를 '사용허가 또는 사용 제한' 으로 변경 ○ 서울광장 '사용 신고에 대한 통지' 를 '사용허가 등 통지' 로 변경하고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접수 받은 경우 48시간 안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 규정을 삭제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총무과(02-2133-5665, 56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97호

도시관리계획(「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결정,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종로구 혜화동(명륜1,2,3가동, 혜화동)일대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2016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6.09.28.)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 1) 구 역 명 :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관련도서 및 도면게재 생략)
- 2)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가)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대학로 일대	477,346	감)38,753	438,593	-

나) 해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신설)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해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해화동 (명륜1,2,3가동, 해화동)일대	-	증)461,242	461,242	-

다) 주거환경관리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관한 결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7항에 의한 정비구역의 의제에 관한 사항)

구 분	정비사업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	종로구 해화동 명륜·해화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종로구 명륜3가동 1-1061번지 일대	-	증)287,743.1	287,743.1	

※ 세부 구역의 범위,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같음

- 3)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4) 열람장소 :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 주거환경개선과, 종로구 주택과, 건축과
- 5) 열람내용 : 해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지정 및계획 결정(안)
- 6) 관련도서 비치 : 열람장소에 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련 도서 및 도면 비치
- 7)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역사도심재생과(☎2133-8497), 주거환경개선과(☎2133-724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98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양동연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순비골길 ** (조리읍)	일시: 2016.10.24. 11:00 장소: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서측 증산교 32톤 내용: 총중량 36.9톤(4.9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6.11.28. 납기일: 2017.01.31.
강신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리울로 *** *동 *층 ***호 (고강동, 거창빌라)	일시: 2016.11.02. 11:19 장소: 은평구 응암동 북가좌오거리앞 내용: 축하중 11.15톤(1.15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6.11.28. 납기일: 2017.01.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배선철	강원도 강릉시 회산로 ***-*	일시: 2016.08.12. 06:42 장소: 용산구 한남동 남산1호터널앞 한남제2고가 내용: 총중량 24.05톤(4.05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6.09.27. 납기일: 2016.11.30.
도익호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124길 **-* *층 ***호	일시: 2016.08.12. 16:55 장소: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파크7단지 사거리앞 내용: 높이 4.2m(0.2m 초과)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일: 2016.09.27. 납기일: 2016.11.30.
임지수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467 *층동 ***호 (왕길동, **프라자)	일시: 2016.08.23. 16:35 장소: 마포구 성산동 성산대교북단초소 성산교32톤 내용: 총중량 35.65톤(3.65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6.09.27. 납기일: 2016.11.30.
임재준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번길 **	일시: 2016.09.01. 06:07 장소: 마포구 아현동 아현중학교앞 내용: 축하중 11.25톤(1.25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6.09.27. 납기일: 2016.11.30.
하교홍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감길 ***-**	일시: 2016.09.02. 06:06 장소: 은평구 진관동 통일로 구파발시계 내용: 축하중 11.3톤(1.3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6.09.27. 납기일: 2016.11.30.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2017. 01.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라.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자우편: bis8810@seoul.go.kr
 - 전화번호: 02-300-8347, 팩스번호: 02-300-833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99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가. 대상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처분근거	처분일자
1	서울090070	주태경씨엠	유택종 (등기상 : 최락권)	서대문구 신촌로 1(창천동)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2016.12.23.

- 나. 처분내용 :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 다. 처분사유 : 등록요건(전문인력 미충족 등) 미달
- 라. 등록증 반납 :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반납
- 마. 부동산개발업 계속 수행 :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은 등록취소 처분후에도 계속 수행 다만, 부동산개발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

- 당하는 경우 제외(부동산개발업법 제26조 제1항)
- 바. 부동산개발업 제한 : 등록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원인행위자와 대표자 포함)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이나 등록업체의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부동산개발업법 제6조 제5호)
- 사.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2133-46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500호

중도매업 허가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내 중도매업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허가취소 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1. 처분대상

연번	상 호	허가번호	소 재 지	대표자
1	세원농산물유통㈜	2강10145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로 40(외발산동)	신*천

- 2. 처분의 내용 : 중도매업 허가취소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3개월 연속 무실적(2016.8월~10월)
- 4. 처분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 4]
- 5. 처 분 일 : 2016.12.23.
- 6. 이의제기 안내
 - 동 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을 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을 제기할 수 있음.
- 7. 허가취소에 따른 행정절차 안내
 -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내 배정받은 점포 반납, 보증금 환급 등의 절차를 거쳐 중도매업 허가취소 처리됨.
 - (허가취소 절차관련 문의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유통관리팀 ☎2640-6056)
- 8. 기타 문의처 :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2133-538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504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가. 대상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처분근거	처분일자
1	서울110017	주엘트원산업	박연대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22, 2층(삼성동) [법인등기상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78길 14, 102호(삼성동)]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2016.12.23.
2	서울100107	㈜미래개발전문자기 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박영준[등기상:청산인 허민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1501호(삼성동, 리치타워) [법인등기상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 솔로몬역삼타워 5층]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2016.12.23.

나. 처분내용 :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다. 처분사유 : 등록요건(사무실 부존재 및 전문인력 미충족 등) 미달

라. 등록중 반납 :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반납

마. 부동산개발업 계속 수행 :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은 등록취소 처분후에도 계속 수행 다만, 부동산개발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부동산개발업법 제26조 제1항)

바. 부동산개발업 제한 : 등록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원인행위자와 대표자 포함)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이나 등록업체의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부동산개발업법 제6조 제5호)

사.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2133-46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50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39호('16.5.19.)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6-270호('16.9.1.)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사업 실시계획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98호('16.9.29.)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결정된 서울역고가도로(보행자전용도로) 및 퇴계로, 만리동광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사업 실시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경미한 사항 변경 포함)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열람공고에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변경이 있는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 수령인, 미 통지인에 대하여는 본 열람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경미한 사항)에 대한 사항

1) 도시계획시설(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서울역 고가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0.3	특수 도로	810	남대문로5가 281	만리동1가 83	보행자 전용도로	-	-	
변경	소로	1		10.3	특수 도로	810	남대문로5가 281	만리동1가 83	보행자 전용도로	-	-	광장~고가 연결시설물 선형변경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변경없음)

○ 도로 변경결정 사유서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16.10.12)인 서울역광장~고가 연결시설물 설치방안 변경 (E/V→E/V+계단)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선형변경

2) 도시계획시설(도로) - 퇴계로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광장) - 만리동광장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및 광장)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36-2 ~ 만리동1가 62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서울역 7017 프로젝트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 ① 서울역고가도로(보행자전용도로) : 폭 10.3m, 연장 810m
- ② 퇴계로 : 보행길 폭 8.6m ~ 10.3m, 연장 214m
- ③ 만리동광장 : 10,353.1㎡ (전체 면적 : 24,15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시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붙임 참조

7) 건축 허가,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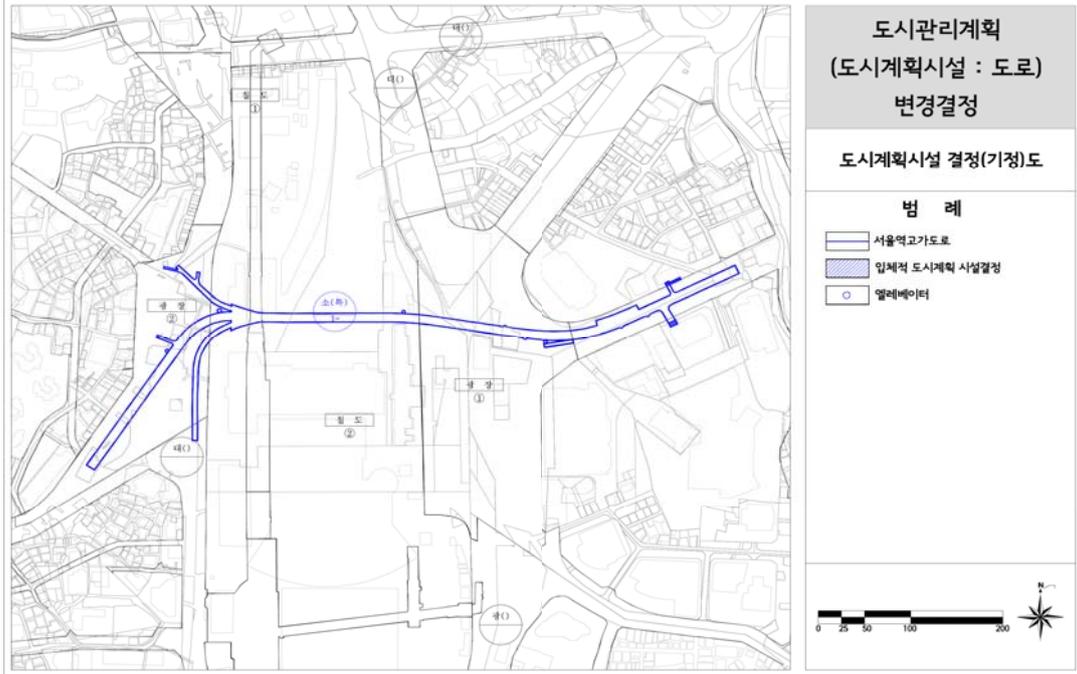
다.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라. 관련도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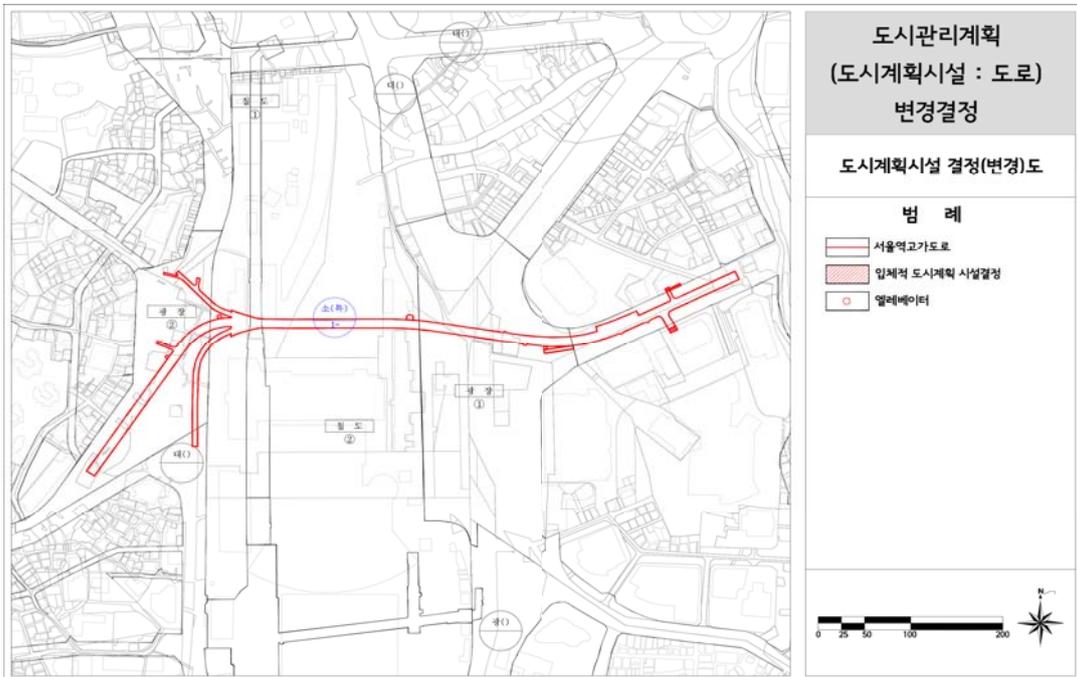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 (신청사 10층)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 재생사업반(☎ 02-2133-86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도로 : 서울역고가도로) 변경결정 도면
- 기정



- 변경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서울역 고가도로)

○ 토지조서(사용)

연번	위 치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사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구	행정동				기정	증감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관계		
합 계					128,843.1	10,691.0	증 54.3	10,745.3							
1	중구	남대문로 5가	67-4	도로	1,312.4	156.2	-	156.2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	중구	남대문로 5가	73-2	도로	477.6	196.6	-	196.6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	중구	남대문로 5가	74-1	도로	419.8	158.7	-	158.7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중구	남대문로 5가	75-1	도로	142.1	4.0	-	4.0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중구	남대문로 5가	280	도로	482.6	205.0	-	205.0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	중구	남대문로 5가	281	도로	409.9	91.6	-	91.6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7	중구	만리동1가	5	도로	412.6	1.9	-	1.9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8	중구	만리동1가	5-1	도로	376.9	165.7	-	165.7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9	중구	만리동1가	12-2	도로	832.4	215.9	-	215.9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0	중구	만리동1가	12-3	도로	506.1	96.8	-	96.8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1	중구	만리동1가	12-4	도로	100.2	11.1	-	11.1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2	중구	만리동1가	15-3	도로	56.2	0.8	-	0.8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3	중구	만리동1가	17-2	도로	145.5	6.9	-	6.9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4	중구	만리동1가	22-32	도로	15.9	15.9	-	15.9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5	중구	만리동1가	22-37	철도	20.8	12.6	-	12.6	기획 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길매로 477					

<계속>

연번	위 치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사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구	행정동				기정	증감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6	중구	만리동1가	22-43	도로	5.0	1.9	-	1.9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7	중구	만리동1가	22-44	철도	74.4	44.5	-	44.5	기획 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18	중구	만리동1가	83	도로	534.8	123.1	-	123.1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9	중구	봉래동2가	122	철도	4,696.9	54.5	-	54.5	한국철도 공 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20	중구	봉래동2가	122-15	철도	20,897.5	319.5	-	319.5	한국철도 공 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21	중구	봉래동2가	122-14	철도	3,589.8	161.7	-	161.7	한국철도 공 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22	중구	봉래동2가	122-16	철도	19,570.7	1,026.5	-	1,026.5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3	중구	봉래동2가	124	도로	1,894.2	4.4	-	4.4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4	중구	봉래동2가	124-1	도로	613.1	142.5	-	142.5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5	중구	만리동1가	22-36	철도	16.5	14.7	-	14.7	기획 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26	중구	중림동	106-4	도로	931.9	183.3	-	183.3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7	중구	중림동	106-3	도로	589.8	68.2	-	68.2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8	중구	중림동	106-6	도로	1,632.6	62.1	-	62.1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9	용산 구	서계동	217-2	도로	2,648.9	109.2	-	109.2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0	중구	남대문로 5가	84-15	도로	15,607.4	2,529.7		2,529.7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연결통로 (호텔마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31	중구	남대문로 5가	520	도로	3,769.70	581.8		581.8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연결통로 (대우재단)
32	중구	남대문로 5가	526-1	도로	559.4	26.6		26.6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연결통로 (대우재단)
33	중구	만리동1가	1	도로	11,043.8	1,153.2	-	1,153.2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4	중구	만리동1가	22-1	도로	6,942.6	1002.1	-	1002.1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엘리베이터
35	중구	봉래동2가	122-11	철도	10,063.0	956.3	-	956.3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엘리베이터
36	중구	봉래동2가	122-17	철도	10,420.6	741.7	증) 29.4	771.1	한국철도 공 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엘리베이터 변경
37	중구	남대문로 5가	526	대지	3,081.1	18.9	-	18.9	재단법인 대우재단 외 1인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41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구분 지상권	연결통로 (대우재단)
30	중구	남대문로 5가	84-16	대지	667.8	-	증) 24.9	24.9	호텔마누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84-16			구분 지상권	연결통로 변경 (호텔마누)

○ 물건조서(사용)

연번	주소	건물명	건축면적(㎡)			건축 연면적(㎡)			층수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존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관계	
합 계			62.04	감) 62.04	-	143.22	감) 143.22	-							
1	중구 봉래동2가 122-17	서울역전 파출소	62.04	감) 62.04	-	143.22	감) 143.22	-	지하1층 지상2층	경찰청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남대문 경찰서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0		철거

※ 광장~고가 연결시설물(E/V, 계단)이 기존 서울역파출소가 저축되어 철거하고, 대체 파출소는 경찰청(남대문경찰서)과 협의하여 건립

② 도시계획시설(도로) - 퇴계로

○ 토지조서(사용)

연번	위 치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사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구	행정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관계	
합 계					22,778.2	1,843.2						
1	중구	남대문로 5가	281	도로	409.9	70.4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	중구	남대문로 5가	282	도로	79.3	0.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	중구	남대문로 5가	288	도로	125.6	112.0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4	중구	남대문로 5가	290	도로	710.7	278.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중구	남대문로 5가	292	도로	1,072.4	114.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엘리베이터 위치변경
6	중구	남창동	235-1	도로	2,488.6	182.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7	중구	남창동	236-2	도로	757.8	239.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	중구	남창동	239-1	도로	297.5	53.1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9	중구	남창동	64-1	도로	16,836.4	792.0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엘리베이터

③ 도시계획시설(광장) - 만리동광장

○ 토지조서(사용)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50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 변경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40호(2016.01.28)로 공고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1. 단계별 집행계획(공원) 총괄표

시설명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2016~2025)									
	건수	사업 규모 (㎡)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 (백만원)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시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6	'17	'18	'19	'20
공원	76	40,446,434	3,952,253	3,952,253	3,952,253	-	-	58,411	100,000	100,000	107,068	111,065	3,475,709

2. 단계별집행계획 조서 : 별첨

※ 염창근린공원 단계별집행계획 변경

3. 관계도면 : 생략

4.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2133-8406) 및 공원조성과(2133-2068)에 해당 시설의 관계서류를 비치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단계별 집행계획

사업 · 시설 부문	사업 우선 순위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 (2016~2025)										실효 시기	
		사업명 (위치)	사업 기간	사업 규모 (㎡)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 (백만원)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시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투자	공공기여		'16	'17		'18	'19
		총계	40,446,434	3,952,253	3,952,253						58,411	100,000	100,000	107,068	111,065	3,475,709	
공원	-	외통근린공원 조성	2020이후	8,954	16,803									491	431	15,881	2020이후
공원	-	낙산근린공원 조성	2020이후	46,617	43,961								2,482	2,567	1,241	36,901	"
공원	-	청량근린공원 조성	2020이후	33,187	33,721								3,808	1,969	865	26,488	"
공원	-	배봉산근린 공원 조성	2020이후	52,180	9,371								1,587	1,094	192	6,361	"
공원	-	봉화산근린 공원 조성	2020이후	658,648	40,092								4,322	2,809	539	26,867	"
공원	-	성북근린공원 조성	2020이후	48,048	15,890									1,670	296	13,516	"
공원	-	개운산근린 공원 조성	2020이후	130,939	42,186								2,382	1,231	739	36,496	"
공원	-	오동근린공원 조성	2020이후	453,213	71,736								39	3,350	1,298	55,161	"
공원	-	쌍문근린공원 조성	2020이후	211,881	35,904								3,244	2,096	792	29,038	"
공원	-	초안산근린 공원 조성	2020이후	991,807	84,954								3,318	5,951	1,637	62,712	"
공원	-	영축산근린 공원 조성	2020이후	246,395	17,714								1,601	1,241	310	14,108	2020이후

사업 · 시설 부문	우선 순위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 (2016~2025)											실효 시기			
		사업명 (위치)	사업 기간	사업 규모 (㎡)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 (백만원)			비재정적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총계	국비	시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투자	공공기여	1단계	2-1단계	2-2단계					
													'16	'17	'18	'19	'20	'21년 이후		
공원	-	상도근린공원 조성	2020이후	234,090	45,584		45,584								2,574	1,597	1,065	1,147	39,201	"
공원	-	까치산근린공원 조성	2020이후	370,054	68,374		68,374						66	2,317	1,996	1,676	1,754	60,565	"	
공원	-	장군봉근린공원 조성	2020이후	96,644	14,668		14,668							1,657	1,284	257	339	11,131	"	
공원	-	서리풀근린공원 조성	2020이후	316,864	102,259		102,259						1,245	3,464	2,985	2,389	2,624	89,552	"	
공원	-	만죽거리근린공원 조성	2020이후	322,700	73,721		73,721							1,665	1,291	1,937	1,891	66,937	"	
공원	-	방배근린공원 조성	2020이후	234,941	61,927		61,927							1,399	1,084	1,591	1,589	56,264	"	
공원	-	세곡근린공원 조성	2020이후	164,625	17,033		17,033								995	398	437	15,203	"	
공원	-	광명근린공원 조성	2020이후	527,971	83,826		83,826								979	2,349	2,151	78,347	"	
공원	-	도곡근린공원 조성	2020이후	142,223	66,866		66,866						1,694	2,266	1,561	1,601	1,716	58,028	"	
공원	-	명일근린공원 조성	2020이후	360,218	44,187		44,187						6,500	1,996	1,289	1,032	1,111	32,259	"	
공원	-	고덕근린공원 조성	2020이후	113,141	12,160		12,160								1,065	248	312	10,535	2020이후	
공원	-	삼천근린공원 조성	2020이후	3,568	3,299		3,299									289	67	85	2,858	"
공원	-	응봉근린공원 조성	2020이후	6,782	10,089		10,089							569	589	235	233	8,463	"	

사업 · 시설 부문	우선 순위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 (2016~2025)										실효 시기				
		사업명 (위치)	사업 기간	사업 규모 (㎡)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 (백만원)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시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투자	공공기여	'16	'17	'18	'19		'20	'21년 이후		
공원	-	남산1근린 공원 조성	2020이후	5,043	4,645	4,645							'16	367	407	103	96	3,672	"	
공원	-	남산2근린 공원 조성	2020이후	34	33	33									33	-	-	-	-	"
공원	-	남산3근린 공원 조성	2020이후	2,909	4,073	4,073									713	71	84	3,205	"	
공원	-	남산4근린 공원 조성	2020이후	20	36	36										2	-	34	"	
공원	-	공릉근린공원 조성	2020이후	16,540	1,027	1,027									120	18	27	862	"	
공원	-	성산근린공원 조성	2020이후	24,951	9,741	9,741							3,534	1,650	853	142	150	3,412	"	
공원	-	칼산근린공원 조성	2020이후	618	677	677									118	12	14	533	"	
공원	-	용왕산근린 공원 조성	2020이후	3,539	439	439										13	11	415	"	
공원	-	우장산근린 공원 조성	2020이후	40	4	4										-	-	4	"	
공원	-	공산근린공원 조성	2020이후	37	56	56										3	-	53	2020이후	
공원	-	고척근린공원 조성	2020이후	2,592	3,311	3,311										68	77	2,780	"	
공원	-	보라매 근린 공원	2020이후	817	162	162										-	-	2	"	
공원	-	정지근린공원 조성	2020이후	3,300	2,666	2,666										78	68	2,520	"	

사업 · 시설 부분	우선 순위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 (2016~2025)										실효 시기		
		사업명 (위치)	사업 기간	사업 규모 (㎡)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 (백만원)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시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투자	공공기여	'16	'17	'18	'19		'20	'21년 이후
총계	국비	시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투자	공공기여	'16	'17	'18	'19	'20	'21년 이후						
공원	-	수락산도시자연 공원 조성	2020이후	2,550,293	64,383	64,383						2,038	1,454	1,128	1,691	1,652	56,420	"
공원	-	인산도시자연 공원 조성	2020이후	554,709	58,020	58,020						-	-	1,693	1,525	1,488	53,314	"
공원	-	온수도시자연 공원 조성	2020이후	1,960,530	174,753	174,753						2,600	3,943	2,551	4,540	4,468	156,651	"
공원	-	용마도시자연 공원 조성	2020이후	2,929,975	146,976	146,976						482	829	858	4,119	3,772	136,916	"
공원	-	우면산도시자연 공원 조성	2020이후	2,815,568	217,351	217,351						-	-	2,537	6,092	5,577	203,145	"
공원	-	인능산도시자연 공원 조성	2020이후	290,918	22,981	22,981						-	-	1,342	537	590	20,512	"
공원	-	인능산도시자연 공원 조성	2020이후	444,846	37,972	37,972						-	-	1,773	931	974	34,294	"
공원	-	인능산도시자연 공원 조성	2020이후	663,474	68,518	68,518						-	-	2,001	1,801	1,758	62,958	"
공원	-	인왕산도시자연 공원 조성	2020이후	166,898	44,920	44,920						-	-	1,311	1,180	1,152	41,277	"
공원	-	일자산도시자연 공원 조성	2020이후	389,375	40,957	40,957						-	-	1,196	1,077	1,051	37,633	2020이후
공원	-	천왕도시자연 공원 조성	2020이후	407,929	28,319	28,319						149	-	826	744	727	25,873	"
공원	-	청계산도시자연 공원 조성	2020이후	2,777,252	95,811	95,811						-	-	1,683	2,633	2,454	89,041	"
공원	-	망우모지공원조성 (여르신복지과)	2020이후	308,042	35,925	35,925						-	-	1,259	923	922	32,821	2020이후

※ 1. 사업비는 2015년 공시지가 기준이며, 우선순위는 대부분 공원 여건이 유사하여 미גיע
 2. 공시지가 적용사유 : 공원은 면적이 방대하고 토지별 이용 현황과 지목(임야, 전, 답, 대, 잡종지, 도로, 구거 등)이 서로 달라 공시지가 적용

구 고 시

◆ **광진구고시 제2016-13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72-89호(1972.06.30)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10-149호(2010.02.25)로 실시계획 열람공고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10-5호(2010.03.25)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작성고시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4-30호(2014.03.20.)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5-27호(2015.03.12.)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고시 된 “군자동 35-1~23번지간 도로 개설공사” 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로과(☎450-7852)에 비치하여 토지(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29일
광진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변경없음)

나.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사업의 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총사업규모	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비고
광진구 군자동 35-1~23번지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군자동 35-1~23번지간 도로개설공사 	폭원 5~7m 연장 92m	서울특별시고시 제1972-89호(1972.06.30))	

다.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라. 사업의 기간(변경)

- 당초 : 고시일로부터 ~ 2016.12.31

- 변경 : 고시일로부터 ~ 2017.12.31

마.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생략(변경없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로과(☎450-7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진구고시 제2016-13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428호(2007.11.22)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

어,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09-85호(2009.12.24)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0-20호(2010.6.24)·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0-21호(2010.7.1)·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0-30호(2010.9.24)·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2-93호(2012.7.12)·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3-52호(2013.5.9)·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3-98호(2013.8.29)·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3-116호(2013.10.17)·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4-140호(2014.12.11)·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5-56호(2015.06.18)·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5-156호(2015.12.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된 “구의동 57-62~57-79간 외 2개 구간 도로확장 및 가각정리공사”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로과(☎450-7855)에 비치하여 토지(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29일
광진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사항 없음)

- 1) 광진구 구의동 57-62 ~ 구의동 57-79
- 2) 광진구 구의동 54-20 ~ 구의동 54-11
- 3) 광진구 구의동 57-62 ~ 구의동 57-48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변경사항 없음)

다. 사업의 명칭 : 아차산역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변경사항 없음)

라. 사업의 규모 : 도로확장 B = 3~6m, L = 272m (변경사항 없음)

마.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변경사항 없음)

- 1) 주 소 :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777)
- 2) 성 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바. 사업의 기간(변경)

- 1) 당초 : 2009.12.24. ~ 2016.12.31.
- 2) 변경 : 2009.12.24. ~ 2017.10.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생략 (변경사항 없음)

아.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로과(☎450-7855).

◆ **강북구고시 제2016-18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245-75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제6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강 북 구 청 장

가.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임.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67	12~15	보조간선 도로	4,735	하월곡동	번 등	일반도로	1963.12.24. 건고738호	일부구간 선형변경
변경	중로	2	67	12~15	보조간선 도로	4,735	하월곡동	번 등	일반도로		

2)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 2-67	중로 2-67	일부구간 선형 변경	조성이 완료된 현황도로와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일부 상이한 구간을 일치시키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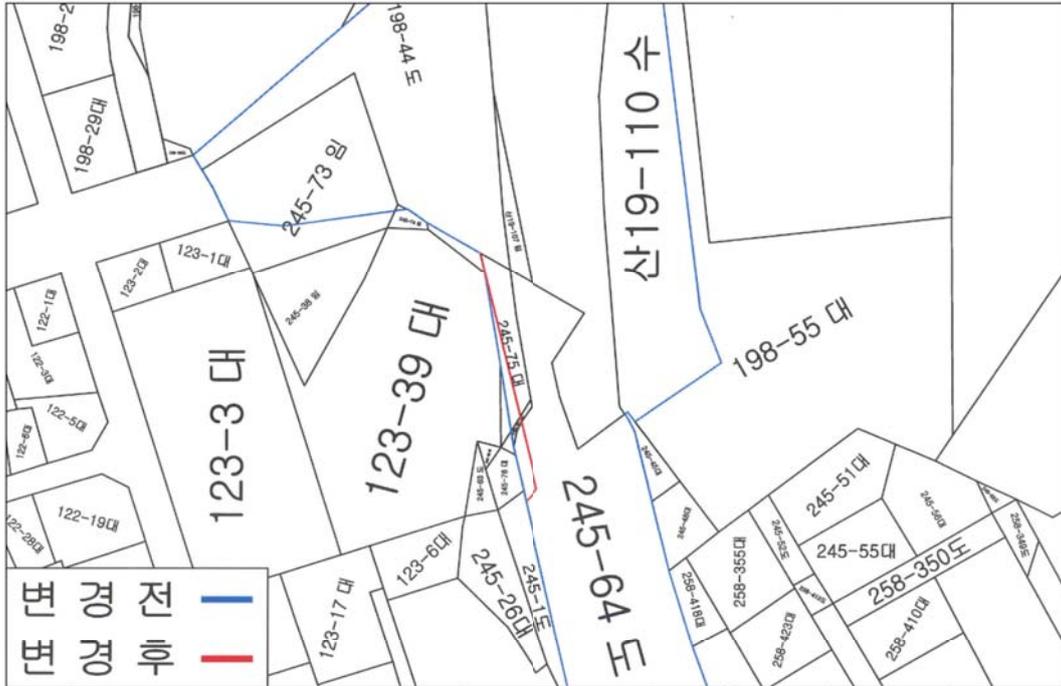
다. 관계도면 : 붙임 참조(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붙임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901-6846), 도로관리과(☎ 901-5836)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시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n.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중로	2	67	12~15	보조간선도로	4,735	하월곡동	번 동	일반도로	(괄호)는 변경구간임
변경	중로	2	67	12~15	보조간선도로	4,735 (40)	하월곡동	번 동	일반도로	

※ 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참고용으로 고시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은평구고시 제2016-115호

도시관리계획(연신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1996.07.05.)로 구역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55호(2002.07.02.)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04호(2011.04.28.)로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변경(재정비) 결정된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공동개발)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정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은 평 구 청 장

가. 정정사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04호(2011.04.28.)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내용(공동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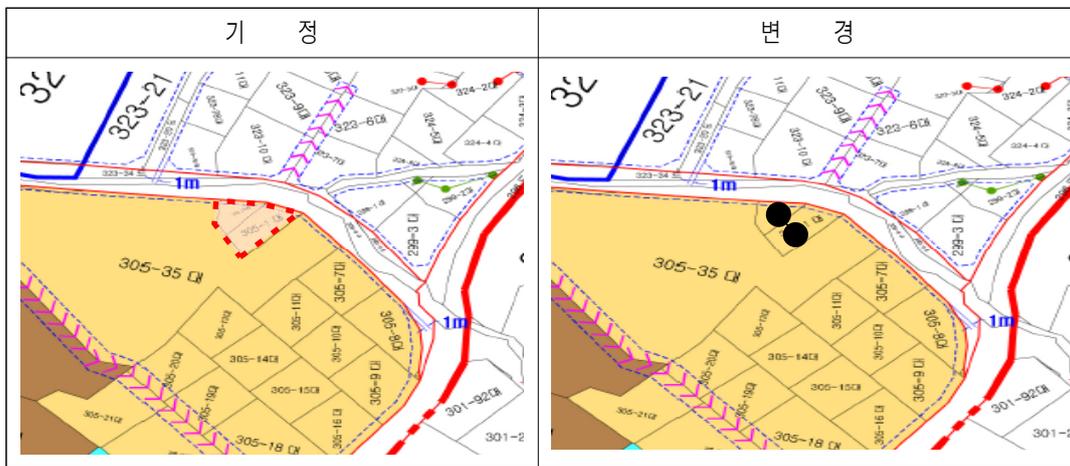
발)일부 정정

- 가구 및 획지조서(가구번호:D4) 면적오기 및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도의 표기(공동개발 지침내용)내용 정정

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면적 정정)

구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공동개발면적(㎡)	비 고	
기정	D4	불광동	305-1	122	195	• 공동개발(지정) : 305-1, 305-25
			305-25	73		
변경	D4	불광동	305-1	101	150	• 공동개발(지정) : 305-1, 305-25
			305-25	49		

다.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 표기내용(공동개발지정) 정정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라. 기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 변경내용 없음

마.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도시계획과(☎351-7412, 741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서대문구고시 제2016-172호

서대문구 신촌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2014.12.26.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고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일대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대문구청장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현황

- 지역의 명칭 : 신촌동 시범사업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개요

지역명	유형	위치	면적	비고
신촌동 시범사업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근린재생 일반형	서대문구 신촌동 일대	432,628.9㎡	

2. 계획의 목표

- 활기차고 생산적인 청년문화 창출
- 신촌상권의 활력 및 회복 강화
- 공공공간 및 주거공간의 양질화
- 공동체간의 협업 및 역량강화
- ※ 비전 : 젊음과 활력이 살아있는 Culture-Valley, 신촌

3.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 계획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4년)
 - 사업내용
 - 마중물 사업 : 5개 부문 13개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부문	단위사업		계	국비	지방비		민간
					시비	구비	
청년 문화 재생	신촌문화플랫폼 구축사업	지역통합축제 개최 및 신촌 프로모션 (포털, 콘텐츠 개발, 미디어 광고 등)	781		711	70	
	오픈캠퍼스 사업	대학-지역연계수업 개설 지원 및 다양성 열린강좌 추진 등	267		253	14	
신촌 경제 재생	상권공간 개선사업	이면가로 상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골목 정비 및 공공공간 조성 등	2,432		2,314	118	
	청년 창업활동 지원사업	청년창업포럼 개최 및 창업공간 연계 지원 등	74		68	6	
	신촌 비즈니스지원단 운영사업	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및 상권분석 등	175		167	8	
신촌 하우스 재생	마을공간 개선사업	창서초 및 바람산 주변 주거지 골목 정비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1,413		1,288	125	
	청년주거 지원사업	건물주-임차인 연계 사회적기업 운영 및 주거공동관리 조직구축 지원 등	5		4	1	
	집수리도서관 조성사업	DIY공구 대여 및 집수리주거관리 정보 구축	20		19	1	
공동체 재생	신촌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등	721		647	74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및 공동체활동 지원 등	170		162	8	
공공 기반 시설 재생	청년문화 전진기지 조성사업	창천문화공원내 청년활동을 위한 다목적 문화시설 조성 및 공원 정비	2,500		2,048	452	
	신촌 중심가로 연계강화사업	연대앞-이대앞 단절된 상권 연계 회복을 위한 마스터플랜 및 환경개선 등	542		502	40	
	공원 정비사업	창천근린공원, 대현문화공원 정비	900		817	83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소계			10,000		9,000	1,000	

· 협력사업 : 4개 부문 14개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부문	단위사업		계	국비	지방비		민간
					시비	구비	
청년 문화 재생	창작놀이센터 설치	문화예술인 활동공간 및 창업카페 조성 (완료)	710		710		
	문화발전소 건립	문화활동 복합지원시설 조성	2,059		2,059		
	서울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 활용사업	신촌 문화·명소 탐방자원 개발 (완료)	69		45	24	
	거리예술존 운영	거리공연 활동 지원 (완료)	20		20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지역조사, 사진·영상기록, 근현대자료수집	150		150		
신촌 경제 재생	이화 스타트업 52번가 조성	청년창업 육성 지원 (완료)	100				100
	청년몰 조성사업	청년창업자 육성	1,500	750		600	150
	이대특화 거리가게 개선 사업	거리가게(노점) 이동 및 정비	206			206	
	기업사회공헌을 통한 방법용 CCTV 설치	이화 스타트업 52번가 CCTV설치 (완료)	8.6				8.6
	신촌공유지대	공유공간 발굴 및 DB구축	1			1	
신촌 하우스 재생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에너지공동체 구축 (주민공모사업, 완료)	51.58		13		38.58
	신·흥·합 창조밸리 청년주거 조성	청년창업 주거공간 조성	3,180		2,550	630	
공공 기반 시설	도심형 아리수음수대 조성	음수대 및 버스킹 공간 조성 (완료)	154		154		
	노후 하수도관 정비	신촌 도시재생사업구간 일대 하수도관 정비	5,123	500	2,623	2,000	
협력사업 소계			13,332.18	1,250	8,324	3,461	297.18

○ 파급효과(마중물 사업)

부문	사업명	파급효과	비고
청년 문화 재생	신촌문화플랫폼 구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촌의 지역정체성 확립 •청년문화 활성화를 통한 집객 •지역경제 활성화 	
	오픈캠퍼스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의 지역관심 증대 •지역 주민·상인 역량강화 •대학-지역 상생 발전 	
신촌 경제 재생	상권 공간개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목환경 개선으로 골목문화 생성 및 방문객 증대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창업활동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경제 활동 증대 •지역커뮤니티의 새로운 동력 확보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축 	
	신촌 비즈니스지원단 운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권 변화 트렌드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골목상권의 지속가능성 확보 	
신촌 하우스 재생	마을 공간개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지 공간 환경 개선 •청년문화 창업인 등 신규 인구 유입 •마을공동체 활성화 	
	청년주거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차인의 비용 감소 및 건물주의 공실·건물유지관리 효율화 •임대·임차인간 상생협업체 구축 •거주 지속가능성 확보 	
	집수리도서관 조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 환경 개선으로 주택만족도 향상 및 거주 지속가능성 확보 	
공동체 재생	신촌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지원체계 확립 및 주민역량강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실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실현 	
공공 기반 시설 재생	청년문화전진기지 조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문화인들의 교류네트워크 확대 •주민·상인들의 문화행사 활동기회 및 편의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신촌 중심가로 연계 강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리적 공간 재생의 확장 •연대·이대 상권 연계강화 및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상생 발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공원 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공간 환경개선으로 인근 주거지·상업지와 연계한 문화활동 증대 •지역 활성화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에 관한 계획

○ 청년문화 전진기지 조성사업

개요	위 치	창천동 57-18, 창천문화공원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 연면적 800㎡		
	사업기간	2016~2018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촌지구일대),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사업비	2,500백만원 (시비 2,048백만원, 구비 452백만원)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촌지역 내 청년 활동공간 및 대규모 강연·행사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 부족 • 신촌에 대한 청년활동 조직 관심 증대 • 도시재생의 문화-경제-청년 연계기반 마련을 위한 거점시설 조성 필요 			
사업내용	청년문화 전진기지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문화 전진기지 시설 조성 (청년문화카페, 다목적홀, 소규모 창작·연습공간, 공용회의실, 업무공간 등) • 창천문화공원 정비 			
	청년 문화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지역이 함께하는 문화행사 시행(연2회) 			
예산 집행계획	2016년 : 2,500백만원(이월) [현상설계공모-9~12월, 설계용역- '17.1월~5월, 공사- '17.6월~ '18.5월]			

○ 공원정비 사업

개요	위 치	창천근린공원(바람산) : 창천동 4-55 일대 / 대현공원 : 대현동 146		
	규 모	창천근린공원(바람산) : 6,322㎡ 대현공원 : 3,063.9㎡ / 시설규모 : 120㎡		
	사업기간	2016~2018	시설물 용도	공원지원시설(대현공원)
	사업비	900백만원(시비 817백만원, 구비 83백만원)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천문화공원, 창천근린공원(바람산), 대현공원의 공간 활용성 저하 및 주변과의 연계 미흡 • 문화행사의 연세로 집중 및 불균형에 따른 공원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추진에 대한 주민들 요구 			
사업내용	창천근린공원(바람산) 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망 _조망권 확보 및 공간프로그램 강화 • 안전 _사면정비 및 보안등 확충 			
	대현공원 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정비 _런웨이 및 공연무대 정비, 관광안내부스 정비 및 활성화 • 시설조성 _축제지원 및 신촌뉴스룸 운영 부스 설치 			
예산 집행계획	2016년 : 70백만원(이월) [대현공원 설계용역 - '16년 12월 ~ '17년 3월] 2017년 : 650백만원 [대현공원 설계 및 공사 - '17년 4월~10월, 창천근린공원 설계용역 '17년 12월 ~ '18년 3월] 2018년 : 180백만원 [창천근린공원(바람산) 공사 - '18년 4월~10월]			

5.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사업 유형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고	
	부문	단위사업		계	국비	지방비			민간
						시비	구비		
마중물사업	청년 문화 재생	신촌문화플랫폼 구축사업	축제 및 신촌 홍보 관련 지원	781		711	70		'16~'18
		오픈캠퍼스 사업	대학-지역의 열린 교육 지원	267		253	14		'16~'18
	신촌 경제 재생	상권공간 개선사업	이면가로 상권공동체 활성화 및 공간환경개선	2,432		2,314	118		'16~'17
		청년 창업활동 지원사업	청년활동 기반 마련	74		68	6		'16~'18
		신촌 비즈니스지원단 운영사업	상인대상 전문가 컨설팅 지원	175		167	8		'16~'18
	신촌 하우스 재생	마을공간 개선사업	주거공동체 기반의 공간환경개선	1,413		1,288	125		'16~'18
		청년주거 지원사업	청년주거 지원	5		4	1		'16~'18
		집수리도서관 조성사업	주민자력 집수리 지원	20		19	1		'16~'18
	공동체 재생	신촌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사업	지원센터 및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721		647	74		'16~'18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소규모 활동 지원	170		162	8		'16~'18
	공공 기반 시설 재생	청년문화 전진기지 조성사업	문화창업 기반시설 조성	2,500		2,048	452		'16
		신촌 중심가로 연계강화사업	중심가로 연계 및 공공공간 개선	542		502	40		'16~'18
		공원 정비사업	2개소 공원 정비	900		817	83		'16~'18
	①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소개				10,000		9,000	1,000	
협력사업	청년 문화 재생	창작노이센터 설치	문화예술인 활동공간 및 창업카페 조성	710		710			'15~'16 (완료)
		문화발전소 건립	문화활동 복합지원시설 조성	2,059		2,059			'15~'17
		서울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 활용사업	신촌 문화·명소 탐방자원 개발	69		45	24		'16
		거리예술존 운영	거리공연 활동 지원	20		20			'16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지역조사, 사진영상기록, 근현대 자료수집	150		150			'16~'17
	신촌 경제 재생	이화 스타트업 52번가 조성	청년창업 육성 지원	100				100	'16(완료)
		청년몰 조성사업	청년창업자 육성	1,500	750		600	150	'16~'17
		이대특화 거리가게 개선사업	거리가게(노점) 이동 및 정비	206			206		'16~'17
		기업사회공헌을 통한 방법용 CCTV 설치	이화 스타트업 52번가 CCTV설치	8.6				8.6	'16(완료)
	신촌 하우스 재생	신촌공유지대	공유공간 발굴 및 DB구축	1			1		'16~'17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에너지공동체 구축	51.58		13		38.58	'16
		신·흥·합 창조밸리 청년주거 조성	청년창업 주거공간 조성	3,180		2,550	630		'15~'17
	공공 기반 시설	도심형 아리수음수대 조성	음수대 및 버스킹 공간 조성	154		154			'15~'16 (완료)
		노후 하수도관 정비	신촌 도시재생사업구간 일대 하수도관 정비	5,123	500	2,623	2,000		'16~'17
② 협력사업 소개				13,332.18	1,250	8,324	3,461	297.18	
총 합 계 (① + ②)				23,332.18	1,250	17,324	4,461	297.18	

6. 예산집행계획

○ 마중물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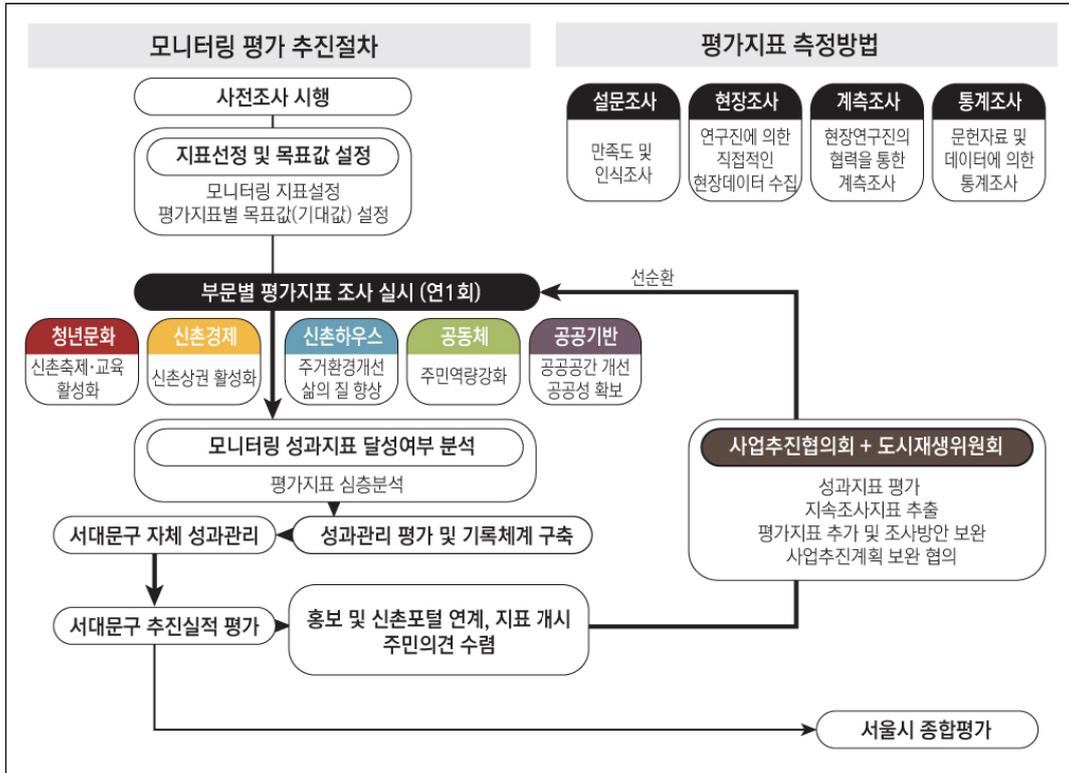
부문	사업명	연도 및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2016	2017	2018	
계		10,000	4,864	2,561	2,575	
청년 문화 재생	신촌문화플랫폼 구축사업	781	181	172	428	
	오픈캠퍼스 사업	267	127	52	88	
신촌 경제 재생	상권 공간개선 사업	2,432	1,257	553	622	
	청년창업활동 지원 사업	74	14	30	30	
	신촌 비즈니스지원단 운영 사업	175	91	12	72	
신촌 하우스 재생	마을 공간개선 사업	1,413	160	800	453	
	청년주거 지원 사업	5	1	2	2	
	집수리도서관 조성 사업	20	10	0	10	
공동체 재생	신촌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업	721	221	250	250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170	90	40	40	
공공 기반 시설 재생	청년문화전진기지 조성 사업	2,500	2,500	0	0	
	신촌 중심가로 연계 강화 사업	542	142	0	400	
	공원 정비사업	900	70	650	180	

○ 협력사업

부문	사업명	연도 및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2016	2017	2018	
계		13,332	4,606	8,726	0	
청년 문화 재생	창작놀이센터 설치	710	710			완료
	문화발전소 건립	2,059		2,059		시비
	서울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 활용 사업	69	69			시비
	거리예술존 운영	20	20			시비
	서울생활문화자료 조사	150	75	75		시비
신촌 경제 재생	이화 스타트업 52번가 조성	100	100			민간
	청년몰 조성사업	1,500	744	756		국비·구비·민간
	이대특화 거리가게 개선사업	206		206		구비
	기업사회공헌을 통한 방범용 CCTV 설치	9	9			민간(완료)
	신촌 공유지대	1	1			
신촌 하우스 재생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51	51			구·민
	신홍합 창조밸리 청년주거 조성	3,180	2,550	630		시비·구비
공공 기반시설 재생	도심형 아리수음수대 조성	154	154			시비(완료)
	노후 하수도관 정비	5,123	123	5,000		시비·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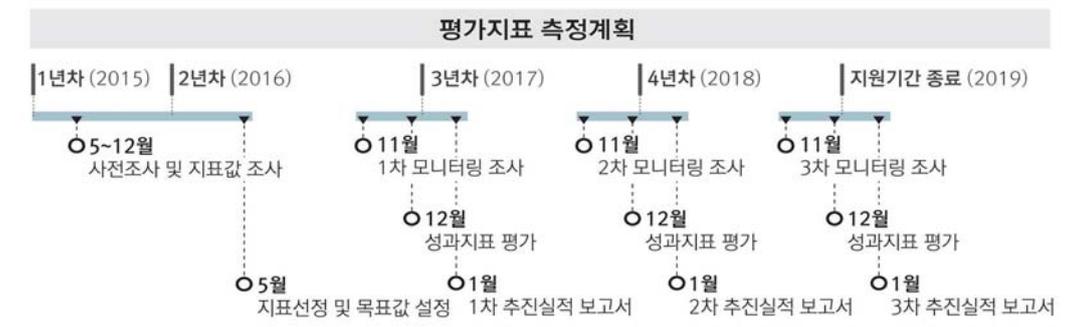
7.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 부문별 평가지표 구분 조사 실시(연 1회)
- 사업추진협의회와 도시재생위원회를 통한 평가 및 보완 피드백 체계



<그림> 모니터링 평가 추진절차 및 평가지표 측정방법

- 연 1회, 3차에 걸친 모니터링 조사 시행



<그림> 평가지표 측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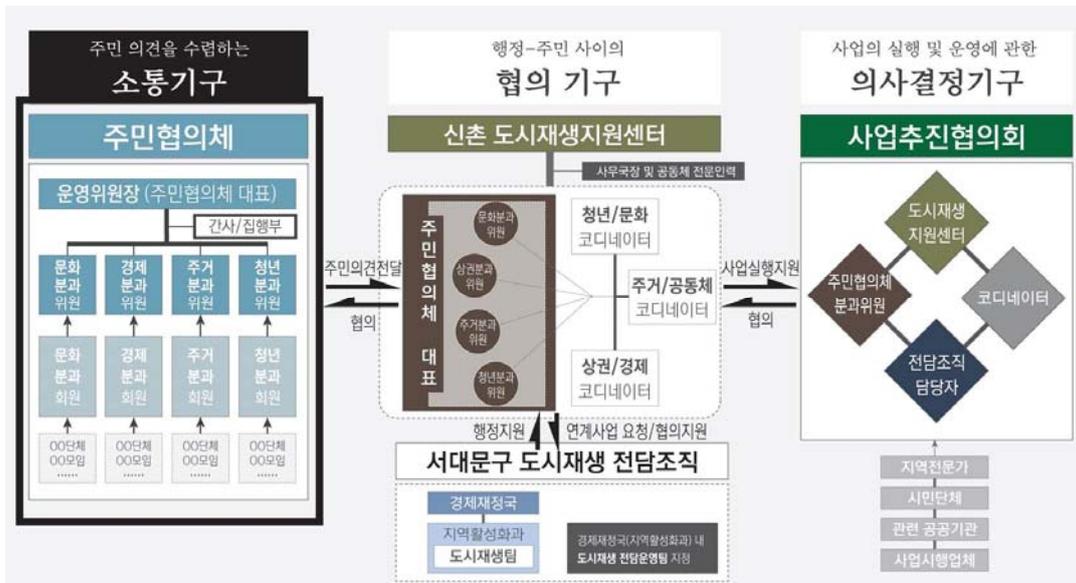
○ 부문별 목표지표의 설정

부문	부문별 목표	평가지표	측정방법
청년 문화 재생	신촌축제 · 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촌축제 거버넌스 운영건수(연25회) •열린강좌 실행건수(연 20건) •지역 방문객 수(+5%증가) •신촌포털 접속자 수(연+10%증가) 	계측조사 통계조사
신촌 경제 재생	신촌상권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실률 감소(6.7% → 4.7%) •주요가로 평균 통행량(연 +10%증가) •영업기간 3년이상 점포 비율(50.5%→60%) •상권매출 증가율 (연 +6%) •창조분야 사업체 증가 수(4%→7%) •20-30대 청년 신규창업 건수(연20개) •신촌 비즈니스지원단 상담건수(연12회) 	현장조사 설문조사 통계조사 계측조사
신촌 하우스 재생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상 인구수(연+2%증가) •임대거주기간 1년 이상의 비율 (61.4%→70%) •주택성능 만족도 비율(47%→65%) •보행환경 만족도 비율(25%→40%) •집수리 관련 사업 실행건수(연5건) 	통계조사 설문조사 계측조사
공동체 재생	주민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 아카데미 실행건수(연2회)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실행건수(연10건) •임대차 협약 참여 건물수(연20건) •공동체 조직수(직능단체 제외)(연5개 증가) •사회적기업 수(예비사회적기업 포함)(연 1개 증가) 	계측조사
공공 기반 시설 재생	공공공간 개선 및 공공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문화 전진기지 문화행사 등 활용건수(연25회) •중심가로변 공공공간 정비 수(연2건) •공원프로그램 실행건수(연 50건) 	계측조사

※ 평가지표는 매년 또는 18년말 기준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재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 해당 사항 없음
9. 도시재생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 조직 및 역할

추진주체	역할	비고
신촌 도시재생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총괄조직 • 행정-주민간 협의 주체로서 이해관계자 간 의견 및 갈등 조정 	협의기구
주민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견 '소통창구' •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확대 유도 •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의 현안 및 과제 발굴 • 소규모 주민공모사업의 기획·실행 • 주민 공동체활동 추진 	소통기구
사업추진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사업의 의사결정 회의기구 • 사업의 실행력 확보방안 모색 • 파일럿프로젝트 기획·성과 점검 및 예비프로그램 검토 	의사결정기구
도시재생전담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실행 행정 지원 	행정



<그림> 신촌 도시재생 추진주체별 역할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신촌 3·3·3 방안’

① 지역활동가(마을전문가) 육성 방안

구 분	세부 방안	관련 마중물사업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교육컨텐츠 확보 및 교육 네트워크 구축 •점포경영 컨설팅 등 상인 역량강화 지원 	오픈캠퍼스 사업 신촌 비즈니스지원단 운영사업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문별 분과조직 및 단위사업별 역할분담 체계 구축 (주민협의체 4개 분과 : 문화, 경제, 주거, 청년) 	신촌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업 ※ 13개 단위사업별 추진주체 마련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등 사업실행 훈련기회 확대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②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방안

구 분	세부 방안	관련 마중물사업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층적 협업구조를 지향하는 열린 거버넌스 구축 •사업추진협의회, 주민협의체 운영위원회 및 분과회의, 상권골목모임, 주민모임, 청년활동가 모임 등 	신촌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을 목표로 하여 기존 공동체와 지역전문가 및 지역기업 등 인적자원 연계 	신촌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업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위원회, 코디네이터, 신촌비즈니스지원단 등 외부 전문가 활용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동영역 확장 	신촌 비즈니스지원단 운영사업 신촌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업

③ 주민참여 및 의사소통 확대방안

구 분	세부 방안	관련 마중물사업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향적 계획 수립으로 라운드테이블 파트너십의 사업추진협의회 협의체계 구축 	신촌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성과 홍보, 주민의견 접수 및 행정·전문가 피드백 	신촌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업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지원센터 소식지, 대현공원의 신촌뉴스룸, 온오프라인 미디어 등 지역정보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및 공동체의식 증대 	신촌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업 공원정비사업(대현공원 뉴스룸 조성)

10. 관계서류는 서대문구 지역활성화과(☎02-330-1506), 신촌 도시재생지원센터(☎02-3140-8341~8343),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02-2133-7174)에 비치 및 서대문구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하여 고시일부터 30일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1

위치도



◆ 마포구고시 제2016-169호

도시계획시설(철도:홍대정거장) 실시계획변경(경미한사항) 인가 고시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82호(2006.9.20.)로 결정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418호(2010.1.6.)로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34호(2014. 4.3)로 도시관리계획(경의선 홍대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14-74호(2014. 4.24.)로 도시계획시설(철도:홍대정거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15-53호(2015.3.26)로 도시계획시설(철도:홍대정거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마포구고시 제2016-45호(2016. 4. 21.) 도시계획시설(철도:홍대정거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마포구 동교동 190-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홍대정거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경미한사항)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53)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29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90-1 일대(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홍대정거장)
- 2) 명 칭 : 경의선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다.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1) 사업시행 면적 : 20,843.60㎡
- 2) 규 모 : 연면적 중 88.42㎡(0.16%)

구분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층)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신축	A블럭	4,127.83	4,129.47	47,452.97	47,606.26	지상17	지상17	복합시설등(판매/업무/숙박)
신축	B블럭	2,238.05	2,181.64	6,097.59	6,032.72	지상5	지상5	공공업무시설/주차장
신축	C블럭	150.61	150.55	300.11	300.11	지상2	지상2	자전거 서비스센터
합계		6,516.49	6,461.66	53,850.67	53,939.09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 1) 성 명 : (주)마포애경타운 대표이사 최 영 보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1, 17층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인가일로부터 ~ 2017. 11. 30
- 변경 : 인가일로부터 ~ 2018. 9.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서구고시 제2016-118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강 서 구 청 장

1. 고 시 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2. 지정 및 해제사유
 - 가.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지역
 - 나. 해제사유 : 사방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된 지역
3. 대 상 지
 - 가. 신규지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산41-8번지 등 7개소(붙임참조)
 - 나. 해제대상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산17번지 등 11개소(붙임참조)
4. 지정 및 해제일 : 2016. 12. 29.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안내(산림보호법 제45조의 10)
 - 가. 누구든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나. 이를 위반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4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기타 문의사항은 강서구청 공원녹지과(☎02-2600-41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내역 각 1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연번	산지명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주 소	성명
합계				100,672	10,570		
1	봉제산	강서구 화곡동 산41-8	임야	6,645	1,8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608-4 주공뜨란채아파트 101-403	홍0옥
2	궁산	강서구 가양동 산4-6	공원	6,143	1,130		서울특별시
3	봉제산	강서구 화곡동 산211	임야	7,348	500		국 (기획재정부)
		강서구 화곡동 산211-1	임야	624	200		국 (기획재정부)
		강서구 화곡동 산212	임야	2,051	230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계		10,023	930		
4	봉제산	강서구 화곡동 산196	임야	5,061	8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3 목동신시가지아파트 313-1204	이0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3 목동신시가지아파트 313-1204	이0민
5	궁산	강서구 염창동 233-4	제방	549	500		국 (국토교통부)
		강서구 염창동 233-5	임야	222	200		국 (국토교통부)
		강서구 염창동 233-7	임야	2,408	150		국 (기획재정부)
		소계		3,179	850		
6	우장산	강서구 내발산동 산9-1	공원	13,588	600		서울특별시
7	우장산	강서구 화곡동 산214	공원	45,764	2,920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내역

연번	산지명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	해제 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합계				394,285.1	14,918						
1	개화산	강서구 개화동 산17	임야	41,943	2,100		국 (국방부)				
2	개화산	강서구 개화동 산17	임야	41,943	2,000		국 (국방부)				
3	개화산	강서구 개화동 산14-1	임야	1,364	680	중국 홍콩 코룬시 침사취 오스틴가 2번지 푸후센타 8층	최0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0길 33(역삼동)	최0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09, 93동303호(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최0식				
						광주광역시 동구 총장로5가 55	최0호				
						광주광역시 동구 총장로5가 55	최0철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568-1 두암타운 106동 1301호	최0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68 104동 1504호 (당산동1가,진로아파트)	최0영				
						강서구 개화동 298-1	답	470	410		국 (기획재정부)
						강서구 개화동 산14-4	임야	2,745	1,520	중국 홍콩 코룬시 침사취 오스틴가 3번지 푸후센타 8층	최0원
										광주 동구 총장로5가 55	최0호
	광주 동구 총장로5가 55	최0철									
광주 동구 산수동 568-1 두암타운 106동 1301호	최0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0길 33(역삼동)	최0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09, 93동 303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최0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68 104동 1504호 (당산동1가,진로아파트)	최0영										
소계		4,579	2,610								
4	개화산	강서구 개화동 산53	임야	5,622	6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화동 336	유0영				

연번	산지명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	해제 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5	개화산	강서구 개화동 373-9	임야	23	1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65 강선마을 709-1302	윤0식
						서울시 강서구 개화6길 5(개화동)	윤0식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94 대림아파트 102-604	윤0식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31 방화아파트 402-1401	윤0식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76 태진아름아파트 101-804	윤0식
						서울시 강서구 개화길 16(개화동)	윤0식
		강서구 개화동 373-34	도로	108	3		강서구
		강서구 개화동 373-35	전	218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46길39(논현동)	유0곤
		강서구 개화동 373-44	도로	320	33		강서구
		강서구 개화동 373-48	임야	60	6		강서구
		강서구 개화동 373-60	임야	66	36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46길39(논현동)	유0곤
		강서구 개화동 산64	임야	3,892	12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65 강선마을 709-1302	윤0식
						서울시 강서구 개화6길 5(개화동)	윤0식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94 대림아파트 102-604	윤0식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31 방화아파트 402-1401	윤0식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76 태진아름아파트 101-804	윤0식						
서울시 강서구 개화길 16(개화동)	윤0식						
소계			4,687	228			

연번	산지명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	해제 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6	치현산	강서구 방화동 산123-2	임야	8,388	3,800	서울 강서구 방화동 180-10	권0재
						서울 강서구 방화동 181-3	권0봉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21길 14, 302호(자양동, 유동빌라)	강0구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753 현대7차아파트 705-504	권0택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134번길 21-1(용현동)	권0택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61-18 청원파크빌아파트2 101-701	권0세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50길 45(방화동)	권0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883번길 33, 103동 2804호(비산동,한화꿈에그린아파트)	조0철
7	궁산	강서구 가양동 산4-7	임야	32,772	48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산4-6	임야	6,143	156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232-1	전	800	14	서울 강서구 가양동 235-2	장0진
		소계		39,715	650		
8	우장산	강서구 화곡동 992-2	대	212.5	212.5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92-1	대	253.6	253.6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산60-1	공	153,344	633.9		서울특별시
		소계		153,810.1	1,100		

연번	산지명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	해제 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9	염창산	강서구 염창동 산30-32	임야	1,001	250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3	이0권
		강서구 염창동 산30-24	임야	10,215	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산69-1	이0권
		강서구 염창동 산30-18	임야	2,638	90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소계		13,854	800		
10	봉제산	강서구 화곡동 산41-8	임야	6,645	580	서울 양천구 신정동 377 목동2차우성아파트 210동 203호	홍0옥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608-4 주공뜨란채아파트 101-403	홍0옥
11	봉제산	강서구 등촌동 산87	임야	39,536	3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15, 18동 1301호(잠실동.아시아선수촌아파트)	이0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33길 84-8, 201호(방배동,상지리초빌)	박0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4, 3동 1005호(방배동,임광아파트)	오0자
		강서구 등촌동 산86-3	임야	141	141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산86	임야	33,422	539		서울특별시
소계		73,099	980				

◆ 동작구고시 제2016-9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299호(1963.4.2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동작구고시 제34호(2011.6.2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5-52호(2015.7.16.)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5-64호(2015.9.3.)로 변경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비둘기어린이공원에 대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 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139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29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비둘기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나.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1) 위 치 : 동작구 상도1동 558
- 2) 면 적 : 2,114.7㎡
- 3) 내 용 : 건물보상 및 공원조성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2)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라.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6. 12. 31까지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8. 12. 31까지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장물조서(변경) : 따로붙임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따로붙임

사.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820-1395)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 사업명 : 비둘기여린이공원 조성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상도1동 558	주택	세멘조	82㎡	82㎡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4-3 (상도1동)	박기섭				기존 무허가
		보일러실	세멘조	11.3㎡	11.3㎡						
		보일러실	판넬	6.7㎡	6.7㎡						
		장독대	세멘조	7.6㎡	7.6㎡						
		펜스	철재	12m	12m						
		대문	철재	-	1식						
		담장	세멘조	-	1식						
		계단	세멘조	-	1식						
		나무		-	7주						
		전기계량기		-	1기						
수도계량기		-	1기								
2	상도1동 558	주택	시멘조	69.8㎡	69.8㎡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4-3 (상도1동)	박남순			기존 무허가	
		가건물	시멘조	5㎡	5㎡						
		화장실	시멘조	3.4㎡	3.4㎡						
		대문	철재	-	1식						
		담장	세멘조	-	1식						
		전기계량기		-	1기						
		수도계량기		-	1기						
수전		-	1식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3	상도1동 558	건물1층	목조판넬지붕	71.2㎡	71.2㎡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4길6 (상도1동)	신규철			무허가
		정독대		26.6㎡	26.6㎡					
		보일러실		0.9㎡	0.9㎡					
		건물1층	조적조	-	88.1㎡					
		건물2층	조적조	-	88.1㎡					
		건물1층	조적조	-	54.4㎡					
		가건물	시멘트블럭조	-	10.7㎡					
		대문,문주			1식					
		펜스			1식					
		축대			1식					
담장			1식							
나무			10주							
가스계량기			2기							
전기계량기			1기							
수도계량기			1기							
4	상도1동 558	건물	세멘조	22.9㎡	22.9㎡	미상	미상			기존 무허가
		보일러실		1.2㎡	1.2㎡					
		계단		2.3m	2.3m					
5	상도1동 558	창고	슬라브 적벽돌	6.7㎡	6.7㎡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2-1 (상도1동)	대한 예수강교회 서울남교회			
		펜스	철재	20.5m	20.5m					
6	상도1동 558	대문	철재	1식	1식	동작구 강남초등4길 14-1(상도1동)	환상희			
		가스계량기			2기					
		전기계량기			1기					
		수도계량기			1기					
		나무		-	6주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	상도1동 588	주택	벽돌조 합성지붕 시멘트블록조	203.3㎡	203.3㎡	주소	성명	지분			
						경기도 파주시 청안로 27, 607동401호 (북영동, 신내마을6단지 한라비발디)	신현승	6/54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801번길206	천정숙	6/54			
						서울 동작구 사당3동 156-5	신현근	4/54			
						경기도 관주시 초월읍 경총대로 923, 106동 1505호 (신아리대주파크빌 아파트)	신현기	4/54			
						부산광역시 부산지구 가야대로 747번길 28-9(북전동)	신현숙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6 B01호(강도1동 백남빌라)	신현화	4/54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지11길4-1, 1층102호(신림동)	신현의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6, 지층동 2호(상도1동)	신현주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6, 지층동 2호(상도1동)	천태선	4/54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 801번길183	신현우	4/54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 12길23-20(신월동)	신현중	4/54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801번길206	신현미	4/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4-3(상도1동)	신현란	1/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4-3(상도1동)	신현지	1/54									

◆ 강동구고시 제2016-19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64호(2006. 7.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06-47호(2006. 8.17.)로 지형도면 고시, 강동구공고 제2016-985호(2016. 8. 4.)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강동구고시 제2016-127호(2016. 9. 1)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강동구공고 제2016-173호(2016.11.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강동구고시 제2016-185호(2016.12.15.)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구천면길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3. 변동된 저축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 수령인, 미 통지인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당 초 : 강동구 천호동 217-18~명일동 320-2(천일초교~명일역간)
 - ▶ 금회(4차) 사업 시행지 : 강동구 암사동 421-142, 강동구 암사동 422-29, 강동구 암사동 425-200, 강동구 암사동 425-201, 강동구 암사동 425-202, 강동구 암사동 425-188, 강동구 암사동 476-20.
- 변 경 : 강동구 천호동 217-18~명일동 320-2(천일초교~명일역간)
 - ▶ 금회(4차) 사업 시행지 : 강동구 암사동 421-142, 강동구 암사동 422-29, 강동구 암사동 425-200, 강동구 암사동 425-201, 강동구 암사동 425-202, 강동구 암사동 425-188, 강동구 암사동 476-34.

나.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다.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구천면길 도로확장공사(4차)

라.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당 초 : 도로확장 폭 12~15m → 15~22m, 연장 1,340m
 - ▶ 금회(4차) 사업구간 : 강동구 암사동 421-142~암사동 476-20(304㎡)
- 변 경 : 금회(4차) 사업구간 : 강동구 암사동 421-142~암사동 476-34(304㎡)

마.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2019.12.31.까지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 없음)(변경없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도로과(☎02-3425-6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구친면길 도로확장공사(4차)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연번	구분	소재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			성명	주소	성명	관계		소유권이외관리	비고	
		암사동	421-142	공부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주 소	인			
1	당초	암사동	421-142	37	37	도	이*수	서울 강동구 명일동 2*~5 **아파트 *08~*07	주식회사 **은행	서울 중구 **로*가 *~1 (**지점)	근저당권						
	변경	변경없음															
2	당초	암사동	422-29	3	3	대	41.568 /314	서울 강동구 구**로 3*3, *01호	**은행	서울 중구 남**로84(을지로2가) (**지점)	근저당권						
							42.012 /314	서울 강동구 구친면로56길40			근저당권						
							41.568 /314	서울 강동구 암사동 4*2~*0 **빌 *01	강동** 협동조합	서울 강동구 구**로*1	근저당권						
							42.012 /314	서울 강동구 암사동 4*2~*0 **빌 *02	강동** 협동조합	서울 강동구 구**로*1	근저당권						
							41.568 /314	서울 강동구 구**로*7길 **~33, *02호	**은행	서울 중구 소*로*1 (회*동1가) (**동지점)	근저당권						
							41.706 /314	서울 강동구 천*로 1*5-5, *층동(길동)									
	당초	암사동	422-29	3	3	대	32.388 /314	서울 강동구 명*로1*9-4, *01호(길동)	삼성** **보험	서울 *구을*로*9 (을지로*가)	근저당권						
							31.178 /314	전라남도 목*시 용*동 1**2-17									
	변경	변경없음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구친면길 도로확장공사(4차)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연번	구분	소재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	
3	당초	암사동 425-202	1	1	대		최*염	서울 강동구 구**로 3*5 (암사동)				422-186 에서 분할
	변경	변경없음										
4	당초	암사동 425-201	1	1	대	2/3	최*호	서울 성동구 **심리동 992 *학**아파트 *02-1**5				425-197 에서 분할
	변경	변경없음				1/3	최*복	서울 강동구 **동 2*5 **마을**아파트 *02-2**3				
5	당초	암사동 425-200	13	13	대		조*철	서울 강동구 암*동 산*3				425-164 에서 분할
	변경	변경없음										
6	당초	암사동 425-188	226	226	도		강**로빌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암**로 *01 **아파트 *1동 *08호 (암구정동)				
	변경	변경없음										
7	당초	암사동 476-20	398.7	22.2	대		조*철	서울 강동구 암*동 산*3	**우유 **조합	서울 중랑구 **로 *1(*봉동)(**역지점)		
	변경	암사동 476-34	22.2	22.2	대		조*철	서울 강동구 암*동 산*3	**우유 **조합	서울 중랑구 **로 *1(*봉동)(**역지점)	476-20 에서 분할	

수용 및 사용할 물건조서

- 사업명 : 구친면로 확장공사
-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

연번	구분	소재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			비고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		
1	당초	암사동 422-10	담장	콘크리트 담	0.88	m ²	41.568/314	오*주	서울 강동구 구**로 3*3, *01호	**은행	서울 중구 남**로84(을지로2가) (**지점)	근저당권		
							42.012/314	경*레	서울 강동구 구친면로55길40			근저당권		
							41.568/314	이*자	서울 강동구 암사동**3 **아파트 *8-*02	강동** 협동조합	서울 강동구 구**로**1	근저당권		
							42.012/314	김*환	서울 강동구 암사동 4*2-*0 **빌 *02	강동** 협동조합	서울 강동구 구**로**1	근저당권		
							41.568/314	박*홍	서울 강동구 구**로*7길 **-*33, *02호	**은행	서울 중구 소*로*1 (회*동1가) (**동지점)	근저당권		
							41.706/314	관*희	서울 강동구 천*로 1*5-5, *층동(길동)					
							32.388/314	윤*은	서울 강동구 명*로1*9-4, *01호(길동)	삼성** **모험	서울 *구*로*9 (을지로*가)	근저당권		
							31.178/314	김*경	전라남도 목*시 용*동 1**2-17					
								변경	변경없음					
							2	당초	암사동 422-10	안 내 표지판	철재	3.5	m	
변경	변경없음													

구 공 고

◆ 종로구공고 제2016-1120호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공고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개발과(☎2148-266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29일
종 로 구 청 장

가.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시설별	시 행 기 간						비 고
	계		1단계(3년이내)		2단계(3년이후)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사업비(백만원)		사업비(백만원)	
총 계	122	257,817.5	35	132,798	87	125,019.5	
		401,644		83,913		317,731	
도 로	92	128,005	28	34,822	64	93,183	
		225,014		33,573		191,441	
공 원	15	101,399	6	83,576	9	17,823	
		116,311		50,271		66,040	
녹 지	4	22,334	1	14,400	3	7,934	
		14,232		69		14,163	
주차장	11	6,079.5	-	-	11	6,079.5	
		46,087		-		46,087	

나.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연번	시설명	위치(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백만원)					단계 별	
				폭(m)	연장(m)	면적(m ²)	총계	국비 (타시도)	지방비				민간
									계	시비	구비		
		도로 92건 면적 145,989m ² 총액 225,014백만원	1단계	28건	4,790	34,822	33,573		33,573	2,876	30,697		
			2단계	64건	12,651	93,183	191,441		191,441		191,441		
1	도로	효자동 40~101 외 3개노선	'17~'19	6	690	4,140	2,467		2,467		2,467		1단계
2	도로	관수동 144~120 외 2개노선	'17~'19	6	230	1,380	19,548		19,548		19,548		1단계
3	도로	익선동 33~34 외 1개노선	'17~'19	4	160	640	2,936		2,936		2,936		1단계
4	도로	연지동 66-21 ~ 133	'17~'19	6	281	1,686	830		830		830		1단계
5	도로	명륜 3가동 222 ~ 107-1	'17~'19	6	135	810	971		971		971		1단계
6	도로	홍지동 47-9 ~ 36-4	'17~'19	6	40	240	1,530		1,530		1,530		1단계
7	도로	인사동 218 ~ 198-55 (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	'17	6~13	110	1,045	1,672		1,672	1,672			1단계
8	도로	인사동 231-2 ~ 220-1 (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	'17	4	69	276	442		442	442			1단계
9	도로	인사동 193-1 ~ 167-1 (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	'17	3~4	65	227	362		362	362			1단계
10	도로	인사동 207 ~ 216-1 (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	'17	4	62	248	400		400	400			1단계
11	도로	공평동 9 ~ 관훈동 198-55 (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	'19~'20	11~20	173	2,682						사업시행시 산출	1단계
12	도로	인사동 72 ~ 관훈동 74-1 (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	'19~'20	10~12	690	7,590						사업시행시 산출	1단계
13	도로	인사동 247 ~ 219-1 (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	'19~'20	12	162	1,944						사업시행시 산출	1단계
14	도로	공평동 194-9 ~ 인사동 195 (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	'19~'20	8	72	576						사업시행시 산출	1단계
15	도로	인사동 30-1 ~ 낙원동 284-9 (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	'19~'20	15	85	1,275						사업시행시 산출	1단계
16	도로	옥인동 41 ~ 신교동 70-3 (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	'19~'20	12~16	54	216						사업시행시 산출	1단계
17	도로	옥인동 47-20 ~ 47-456 (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	'19~'20	8~10	80	720						사업시행시 산출	1단계
18	도로	옥인동 47-411 ~ 47-196 (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	'19~'20	6	71	426						사업시행시 산출	1단계
19	도로	구기동 139-34 외 2개노선	'19~'20	8~10	229	2,061	2,415		2,415		2,415		1단계
20	도로	종로6가 12-23 ~ 동송동 산 2-32(이화제1구역 주택재개발)	'19~'20	6~10	45	180						사업시행시 산출	1단계

연번	시설명	위치(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폭(m)	연장(m)	면적(㎡)	총계	국비 (타시도)	지방비				민간
									계	시비	구비		
21	도로	이화동 10-2 ~ 9-312 (이화제1구역 주택재개발)	'19~'20	8~12	220	2,200						사업시행 시 산출	1단계
22	도로	신영동 158-4 ~ 162-2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	'19~'20	8~11	134	402						사업시행 시 산출	1단계
23	도로	명륜4가 144 ~ 206-27 (명륜4가구역 주택재개발)	'19~'20	8	98	196						사업시행 시 산출	1단계
24	도로	명륜4가 143 ~ 129 (명륜4가구역 주택재개발)	'19~'20	6	67	134						사업시행 시 산출	1단계
25	도로	행촌동 1-6 ~ 46-69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	'19~'20	12	94	376						사업시행 시 산출	1단계
26	도로	행촌동 1-6 ~ 무악동 45-373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	'19~'20	3	84	252						사업시행 시 산출	1단계
27	도로	충신동 10-43 ~ 18-61 (충신제1구역 주택재개발)	'19~'20	12	270	1,620						사업시행 시 산출	1단계
28	도로	이화동9-318 ~ 종로6가 1-44 (충신제1구역 주택재개발)	'19~'20	10	320	1,280						사업시행 시 산출	1단계
29	도로	송인동 221~236-2	'20~'21	6	144	877	4,713		4,713		4,713		2-1단계
30	도로	송인동 191~547	'20~'21	6	400	2,400	8,673		8,673		8,673		2-1단계
31	도로	명륜동2가 43-167	'20~'21	6	130	780	1,982		1,982		1,982		2-1단계
32	도로	부암동 175 ~ 신영동 118	'20~'21	8	500	4,000	29		29		29		2-1단계
33	도로	통의동 140 ~ 35-34	'20~'21	6	140	840	2,484		2,484		2,484		2-1단계
34	도로	연지동 135 ~ 연지동 136	'20이후	4	180	720	2,119		2,119		2,119		2-1단계
35	도로	송인동 12-3 ~ 송인동 10-16	'20이후	4	100	400	192		192		192		2-1단계
36	도로	연지동 246 ~ 연지동 270	'20이후	6	190	1,140	5,659		5,659		5,659		2-1단계
37	도로	안국동 177~안국동45	'20이후	6	100	600	2,184		2,184		2,184		2-1단계
38	도로	계동 44~원서동 92 외 1개노선	'20이후	6	220	1,320	2,817		2,817		2,817		2-1단계
39	도로	관훈동 74~ 관훈동30	'20이후	4	110	440	6,644		6,644		6,644		2-1단계
40	도로	충신동1~이화동 9-208	'20이후	6	230	1,380	2,498		2,498		2,498		2-1단계
41	도로	가회동 31-19~30-10	'20이후	6	150	900	1,827		1,827		1,827		2-1단계
42	도로	송인동 66 ~ 송인동70-1	'20이후	6	80	799	799		799		799		2-1단계
43	도로	창신3동 6-13 ~ 20-5	'20이후	6	110	660	200		200		200		2-1단계
44	도로	창신1동 138-29~151-1	'20이후	6	265	1,590	1,227		1,227		1,227		2-1단계

연번	시설명	위치(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폭(m)	연장(m)	면적(m ²)	총계	국비 (타시도)	지방비				민간
									계	시비	구비		
45	도로	송인동 317 ~ 송인동 287	'20이후	6	230	1,380	984		984		984		2-1단계
46	도로	창신동 393~430 외 2개 노선	'20이후	15	417	6,255	2,350		2,350		2,350		2-1단계
47	도로	통인동 44-6 ~ 통인동 6	'20이후	6	200	1,200	406		406		406		2-1단계
48	도로	연지동 55-1 ~ 연지동 1-7	'20이후	6	240	1,440	23		23		23		2-1단계
49	도로	명륜동 16 ~ 43-1	'20이후	6	400	2,400	3,625		3,625		3,625		2-1단계
50	도로	윤니동 10 ~ 63	'20이후	6	200	1,200	1,714		1,714		1,714		2-1단계
51	도로	송인동 76 ~ 106	'20이후	6	90	540	388		388		388		2-1단계
52	도로	송인동 32 ~ 56	'20이후	6	100	600	1,302		1,302		1,302		2-1단계
53	도로	명륜동1가 46-18 ~ 101-1	'20이후	8	330	2,640	2,204		2,204		2,204		2-1단계
54	도로	인사동 72 ~ 관훈동 144	'20이후	10~12	690	7,590	51,513		51,513		51,513		2-1단계
55	도로	궁경동 54 ~ 44	'20이후	8	73	584	200		200		200		2-1단계
56	도로	통의동 102-1 ~ 35-87	'20이후	6	120	720	1,047		1,047		1,047		2-1단계
57	도로	청운동52-25 ~ 57-28	'20이후	6	85	510	691		691		691		2-1단계
58	도로	삼청동 33-13 ~ 가회동 35-169	'20이후	4	120	480	1,490		1,490		1,490		2-1단계
59	도로	가회동 33-1외 2개노선	'20이후	6	407	2,442	6,353		6,353		6,353		2-1단계
60	도로	무악동 46-1728 ~ 행촌동 209-35	'20이후	6	140	840	1,411		1,411		1,411		2-1단계
61	도로	이화동 9-23 ~ 9-195	'20이후	8	50	400	200		200		200		2-1단계
62	도로	종로6가 214-2 ~ 215-16	'20이후	8	90	720	1,470		1,470		1,470		2-1단계
63	도로	창신동 산6 ~ 23-815	'20이후	10	150	1,500	630		630		630		2-1단계
64	도로	창신동 630-12 ~ 634	'20이후	4	148	592	57		57		57		2-1단계
65	도로	감사원 ~ 성균관대간	'20이후	6	892	5,352	3,734		3,734		3,734		2-1단계
66	도로	사직동 262 ~ 203	'20이후	4	150	600	11		11		11		2-1단계
67	도로	명륜2가 115 ~ 8	'20이후	6	270	1,620	2,944		2,944		2,944		2-1단계
68	도로	송인1동 56-94 ~ 57-52	'20이후	4	200	800	2,853		2,853		2,853		2-1단계

연번	시설명	위치(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폭(m)	연장(m)	면적(㎡)	총계	국비 (타시도)	지방비			민간	
									계	시비	구비		
69	도로	창신동 599 ~ 131	'20이후	6	110	660	430		430		430		2-1단계
70	도로	송인1동 413 ~ 759	'20이후	10	170	1,700	2,038		2,038		2,038		2-1단계
71	도로	필운동 19 ~ 필운동 104	'20이후	6	190	1,140	6,471		6,471		6,471		2-1단계
72	도로	해화동 71-20 ~ 22-77	'20이후	8	55	440	56		56		56		2-1단계
73	도로	계동 140 ~ 원서동 133-55	'20이후	6	155	930	703		703		703		2-1단계
74	도로	송인동 20-72~ 성북구 보문동 3가	'20이후	12	320	3,840	763		763		763		2-1단계
75	도로	행촌동 1-66 ~ 송월동 2-2	'20이후	8	314	2,512	4,397		4,397		4,397		2-1단계
76	도로	안국동 85 ~ 재동 109	'22이후	6	160	960	650		650		650		2-2단계
77	도로	육인동 45-8 ~ 신교동 6-14	'22이후	12	140	1,680	2,100		2,100		2,100		2-2단계
78	도로	송인동 1383-2 ~206-2 (지구단위계획구역)	'22이후	6~8	257	1,928	3,700		3,700		3,700		2-2단계
79	도로	송인동 297~ 242-7 (지구단위계획구역)	'22이후	10	170	1,700	5,500		5,500		5,500		2-2단계
80	도로	송인동 248 ~ 296-19 (지구단위계획구역)	'22이후	6	112	672	1,400		1,400		1,400		2-2단계
81	도로	송인동 200-10 ~228-5 (지구단위계획구역)	'22이후	6	250	1,500	3,200		3,200		3,200		2-2단계
82	도로	송인동 217-10 ~ 271-1 (지구단위계획구역)	'22이후	6	88	528	1,000		1,000		1,000		2-2단계
83	도로	송인동 211-9 ~ 211-3 (지구단위계획구역)	'22이후	6	99	594	1,200		1,200		1,200		2-2단계
84	도로	관철동 33-1 25 (지구단위계획구역)	'22이후	4	66	264	500		500		500		2-2단계
85	도로	관수동 159-2 ~ 157-1 (지구단위계획구역)	'22이후	4	70	280	500		500		500		2-2단계
86	도로	봉익동 169 ~ 묘동 45 (지구단위계획구역)	'22이후	6	67	402	900		900		900		2-2단계
87	도로	낙원동 290-1 ~213-2 (지구단위계획구역)	'22이후	6~12	100	1,000	2,100		2,100		2,100		2-2단계
88	도로	연건동 187-1 ~ 효제동 126-2 (지구단위계획구역)	'22이후	10~12	301	3,311	6,900		6,900		6,900		2-2단계
89	도로	효제동 133-7 ~ 175-1 (지구단위계획구역)	'22이후	8~16	272	3,536	7,000		7,000		7,000		2-2단계
90	도로	효제동 122 ~ 117-1 (지구단위계획구역)	'20이후	6~8	60	420	800		800		800		2-2단계
91	도로	효제동 273 ~ 233-2 (지구단위계획구역)	'22이후	6~8	207	1,449	3,200		3,200		3,200		2-2단계
92	도로	창신동 178 ~ 162-1 (지구단위계획구역)	'22이후	6	81	486	4,286		4,286		4,286		2-2단계

○ 도시계획시설(공원)

연번	시설명	위치(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폭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비 (타시도)	지방비				민간
									계	시비	구비		
		공원 15건 면적 101,399㎡ 총액 116,311백만원	1단계	6건		83,576	50,271	60	42,373	-	42,373	7,838	
			2단계	9건		17,823	66,040	-	4,110		4,110	61,930	
1	공원	종로2가 39 (탑골근린)	'18			19,600	60	60	-	-	-	-	1단계
2	공원	송인동 58-529 (송인근린)	'19			45,615	3,096	-	3,096		3,096	-	1단계
3	공원	수송동 80-7 (수송근린)	'18~ '19			3,567	6,073	-	6,073		6,073	-	1단계
4	공원	원서동 181 (원서근린)	'17~ '19			10,005	32,143	-	32,143		32,143	-	1단계
5	공원	부암동 251-8 (부암소공원)	'19			1,448	1,061	-	1,061		1,061	-	1단계
6	공원	청진동 177 (청진근린)	'17~ '19			3,341	7,838	-	-		-	7,838	1단계
7	공원	부암동 303-1 (부암동어린이)	'21			1,170	245	-	-		-	245	2-1단계
8	공원	서린동 82 (서린소)	'20			1,515	3,931	-	-		-	3,931	2-1단계
9	공원	신문로1가 174-5 (덕수소)	'20			873	26	-	-		-	26	2-1단계
10	공원	신문로2가 160-1 (신문로어린이)	'20			665	3,754	-	-		-	3,754	2-1단계
11	공원	신문로2가 108-9 (새문안어린이)	'20			358	2,362	-	-		-	2,362	2-1단계
12	공원	신문로1가 158 (광화문어린이)	'20			1,148	11,210	-	-		-	11,210	2-1단계
13	공원	인사동 210 (이문어린이)	'20			4,595	40,402	-	-		-	40,402	2-1단계
14	공원	관철동 45-5 (보신각근린)	'22 이후			4,736	450	-	450		-	450	2-2단계
15	공원	부암동 336-2 (부암2소공원)	'22 이후			2,763	3,660	-	3,660		-	3,660	2-2단계

○ 도시계획시설(녹지)

연번	시설명	위치(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개요			총계	계획기간중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폭(m)	연장(m)	면적(㎡)		국비 (타시도)	지방비			민간	
									계	시비	구비		
		녹지 4건 면적 22,334㎡ 총액 14,232백만원	1단계	1건		14,400	69	-	69	69	-	-	
			2단계	3건		7,934	14,163	-	1,155	1,155	-	13,008	
1	녹지	충신동 18-112일원 (동송 완충녹지)	'18			14,400	69	-	69	69	-	-	1단계
2	녹지	창신3동 13-32 (창신 완충녹지)	'19~ '20			4,920	1,155	-	1,155	1,155	-	-	2-1단계
3	녹지	충신동 1-150 (충신 완충녹지)	'20 이후			1,484	4,274	-	-	-	-	4,274	2-1단계
4	녹지	당주동 115 (도렴2경관녹지)	'20 이후			1,530	8,734	-	-	-	-	8,734	2-1단계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연번	시설명	위치(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개요			총계	계획기간 중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폭 (m)	연장 (m)	면적 (㎡)		국비 (타시도)	지방비			민간	
									계	시비	구비		
		주차장 11건 면적 6,079.5㎡ 총액 46,087백만원	1단계	-	-	-	-	-	-	-	-	-	
			2단계	-	-	6,079.5	46,087	-	10,299	-	10,299	35,788	
1	주차장	효자동 196-2	'21이후	-	-	383.5	2,030	-	2,030	-	2,030	-	2-1단계
2	주차장	부암동 370-12	'21이후	-	-	598	2,140	-	2,140	-	2,140	-	2-1단계
3	주차장	평창동 462-3	'20	-	-	410	1,370	-	1,370	-	1,370	-	2-1단계
4	주차장	평창동 556-1	'20	-	-	258	604	-	604	-	604	-	2-1단계
5	주차장	평창동 515-1	'20	-	-	463	1,357	-	1,357	-	1,357	-	2-1단계
6	주차장	평창동 484-2	'20	-	-	298	895	-	895	-	895	-	2-1단계
7	주차장	평창동 539-2	'20	-	-	278	287	-	287	-	287	-	2-1단계
8	주차장	평창동 490-2	'20	-	-	380	747	-	747	-	747	-	2-1단계
9	주차장	평창동 493-2	'20	-	-	212	416	-	416	-	416	-	2-1단계
10	주차장	부암동 251-7 외 7필지	'21이후	-	-	471	453	-	453	-	453	-	2-1단계
11	주차장	종로5가 413일원	'21이후	-	-	2,328	35,788	-	-	-	-	35,788	2-1단계

다. 관련도서 : 생략.

◆ 중구공고 제2016-872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6-100호(2016.11.10.)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되고 중구고시 제2016-115호(2016.12. 8.)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고시된 신당동 132-10번지 일대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9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사회복지과(☎02-3396-53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9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32-10번지 일대(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다. 대지면적 : 379.4㎡(변경없음)

라. 사업의 내용(변경없음)

- 규 모 : 지하1층/지상4층
- 소규모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건립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바. 사업기간 : 사업 인가일로부터 2018년 4월

사. 공고기간 : 공고 게재일로부터 15일간

아. 공고방법 : 시보,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자.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사회복지과(☎02-3396-5363)

※ 변경사항 : 건물조서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 사업명 :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상 면적(㎡)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1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6	대지	160.8	160.8	이병*	서울시 중구 다산로42길 51	근저당	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종로6가지점)
2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9	대지	28	28	김창*	서울시 중구 다산로42길 55			

국공유지조서(토지)

● 사업명 :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종류	주소	
1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8	대	18.2	18.2	국						
2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10	대	153.8	153.8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3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21	대	18.6	18.6	국						

국공유지조서(건물)

● 사업명 :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용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종류	주소
1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10	철근 콘크리트조	지하층	29.93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층	71.26					
			2층	60.76					
			3층	41.64					

건물조서

● 사업명 :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용면적 (㎡)		성명	소유자			이해관계인			
				변경전	변경후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1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6	철근 콘크리트조	지하층	100.71	100.71	이병*	서울시 중구 다산로42길 51(신당동)	근저당	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종로6가지점)			
			1층	86.05	86.05								
			2층	86.53	86.53								
			3층	72.25	72.25								
			4층	72.25	72.25								
			옥탑층	9.36	9.36								
2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8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9	시멘트 블록조	1층	48.6	48.6	김창*	서울시 중구 다산로42길 55(신당동)						
			2층	48.6	48.6								
3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21	시멘트 블록조	1층	18.9	18.9	이원*	서울시 중구 퇴계로84길 24-10(신당동)						
			2층	18.9	18.9								

영 업 권 조 서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 사 업 명 :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연번	소재지	영업의 종류	상호명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1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6	의류임가공	미주패션	1식	이승*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94가길 20, 20*동 ***호(상계동)			
2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6	기타사업 지원서비스업	한고(GO)	1식	친덕*	서울시 중구 다산로36가길 23, ***호(신당동)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광진구공고 제2016-995호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1. 광진구 관내 2016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진구청 도시계획과(☎450-7685), 도로과(☎450-7855), 공원녹지과(☎450-77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29일
광진구청장

가. 단계별집행계획 총괄표(2016년)

(단위 : 백만원)

시설별	시행기간												비고
	계			1단계('16~'18년)			2-1단계('19~'20년)			2-2단계('21년 이후)			
	건수	면적(m ²)	소요예산	건수	면적(m ²)	소요예산	건수	면적(m ²)	소요예산	건수	면적(m ²)	소요예산	
계	54	90,001	143,607	17	26,902	45,261	29	52,323	58,646	8	10,776	39,700	
도로	52	88,812	138,683	17	26,902	45,261	28	51,179	54,083	7	10,731	39,339	
공원	1	1,144	4,563	-	-	-	1	1,144	4,563	-	-	-	
공공공지	1	45	361	-	-	-	-	-	-	1	45	361	

나. 단계별집행계획 조서 : 별첨

다. 관련도서 : 생략

단계별집행계획(54건)

1) 1단계(사업기간: 16~18년)

우선 순위	사업개요	사업 기간	계획기간중 사업비(2016~2025)												실효시기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	16	17	18	19	20	'21년 이후					
계	도비	시군비																	
1	위치: 능동384-2-385-6 규모: 폭원6m, 연장25m	'15.10~ '16.12	759	759			467	292											'20.07.01
2	위치: 능동432-15-256-4 규모: 폭원6m, 연장1,138m	'15.10~ '16.12	3,391	3,391			2,791	600											'20.07.01
3	위치: 화양동192~110-103 규모: 폭원6m, 연장40m	'17.01~ '18.12	7,239	-				4,000	3,239										'20.07.01
4	위치: 자양동251-5-36-22 규모: 폭원6m, 연장125m	'17.01~ '17.12	2,659	2,659				2,659											'20.07.01
5	위치: 자양동841-13-843-8 규모: 폭원6m, 연장168m	'17.01~ '18.10	2,572	2,572				1,000	1,572										'20.07.01
6	위치: 자양동236-163-551 규모: 폭원6m, 연장416m	'17.02~ '18.11	8,447	8,447				4,500	3,947										'20.07.01
7	위치: 자양동56-2-853-3 규모: 폭원8m, 연장390m	'17.03~ '18.11	3,154	3,154				1,500	1,654										'20.07.01
8	위치: 자양동4-9-553-303 규모: 폭원6m, 연장170m	'17.02~ '17.12	605	605				605											'20.07.01
9	위치: 능동397-2-420 규모: 폭원6m, 연장135m	'17.02~ '17.12	1,689	1,689				1,000	689										'20.07.01
10	위치: 종곡동503-22-503-86 규모: 폭원6m, 연장60m	'17.02~ '17.12	137	137				137											'20.07.01

우선 순위	사업개요	사업 기간	계획기간중 사업비(2016~2025)												실효시기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계	국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지방비			'16	'17	'18	'19	'20											
도비	시군비	지방채				민간																		
11	위치:자양동839-1~841-10 규모:폭원6m,연장150m	'17.02~ '17.12	342		342																		'20.07.01	
12	위치:자양동36-316~547-4 규모:폭원8m,연장326m	'17.02~ '17.12	2,759		2,759																			'20.07.01
13	위치:군자동194-2~48-3 규모:폭원6m,연장310m	'18.01~ '18.12	1,055		1,055																			'20.07.01
14	위치:자양동202-9~202-5 규모:폭원6m,연장272m	'18.01~ '18.12	4,346		4,346																			'20.07.01
15	위치:군자동370-11~370-14 규모:폭원4m,연장36m	'18.01~ '18.12	413		413																			'20.07.01
16	위치:자양동848-3~547-4 규모:폭원6m,연장172m	'18.01~ '18.12	1,871		1,871																			'20.07.01
17	위치:자양동202-20~52-106 규모:폭원6m,연장324m	'18.01~ '18.12	3,823		3,823																			'20.07.01

2) 2-1단계(사업기간 : 19~20년)		계획기간중 사업비(2016~2025)													실효시기		
우선 순위	사업개요	사업기간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16	'17	'18	'19	'20		'21년 이후			
계	도비	시군비	공	민	업												
18	위치:군자동117-1~159-1 규모:폭원6m,연장176m	'19.01~ '19.12	464		464							464					'20.07.01
19	위치:군자동364-8~359 규모:폭원6m,연장200m	'19.01~ '19.12	1,489		1,489							1,489					'20.07.01
20	위치:군자동88-28-88-6 규모:폭원6m,연장50m	'19.03~ '19.12	862		862							862					'20.07.01
21	위치:자양동249-5~482-5 규모:폭원8m,연장1,214m	'19.01~ '19.12	10,251		10,251							10,251					'20.07.01
22	위치:능동232-15~315-9 규모:폭원6m,연장440m	'19.01~ '19.12	1,913		1,913							1,913					'20.07.01
23	위치:광장동259-7~266 규모:폭원6m,연장120m	'19.03~ '20.12	3,606		3,606							3,606					'20.07.01
24	위치:광장동269-1~273-1 규모:폭원6m,연장120m	'19.01~ '19.12	1,367		1,367							1,367					'20.07.01
25	위치:자양동58-1~46-11 규모:폭원4m,연장140m	'19.01~ '19.12	2,688		2,688							2,688					'20.07.01
26	위치:광장동551-5~331-3 규모:폭원12~15m,연장406m	'19.01~ '19.12	4,436		4,436							4,436					'20.07.01
27	위치:화양동39-4~모진동200-3 규모:폭원6m,연장200m	'20.01~ '20.12	2,294		2,294									2,294			'20.07.01

우선 순위	사업개요	사업 기간	계획기간중 사업비(2016~2025)											실효시기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	민간	'16	'17	'18	'19	'20	'21년 이후											
38	위치: 자양동52-104~52-107 규모: 폭원8m, 연장120m	'20.01~ '20.12	총계	940	940																		'20.07.01	
39	위치: 자양동544-25~240-8 규모: 폭원6m, 연장568m	'20.01~ '20.12	총계	4	4																			'20.07.01
40	위치: 광장동267~394 규모: 폭원6m, 연장60m	'20.01~ '20.12	총계	245	245																			'20.07.01
41	위치: 화양동111-94~111-89 규모: 폭원6m, 연장58m	'20.01~ '20.12	총계	657	657																			'20.07.01
42	위치: 군자동250~149-8 규모: 폭원8m, 연장360m	'20.01~ '20.12	총계	500	500																			'20.07.01
43	위치: 구의동80-25~620-16 규모: 폭원4~6m, 연장30m	'20.01~ '20.12	총계	61	61																			'30.04.23
44	위치: 구의동633-4~650-2 규모: 폭원10m, 연장260m	'20.01~ '20.12	총계	9,945	9,945																			'20.07.01
45	위치: 자양동633-4~650-2 규모: 폭원6m, 연장110m	'20.01~ '20.12	총계	812	812																			'20.07.01
46	위치: 중곡동 147-6 일대 규모: 1,144㎡(공원)	'19.1.~ '20.7.	총계	4,563	4,563																	2,282	2,281	'20.07.01

우선 순위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획기간중 사업비(2016~2025)												실효시기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지방비 계	지방비 도비	지방비 시군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	'16	'17	'18	'19		'20	'21년 이후									
47	위치: 화양동7-3~7-39 규모: 폭원4m, 연장18m	'21.01~ '25.12	1,163	1,163												1,163										'21.03.06	
48	위치: 광장동425-2~410-2 규모: 폭원10m, 연장190m	'21.01~ '25.12	3,858	3,858																							'21.04.28
49	위치: 화양동132-64~2-49 규모: 폭원15m, 연장400m	'21.01~ '25.12	31,486	31,486																							'22.06.24
50	위치: 광장동394-18~394-23 규모: 폭원6m, 연장66m	'21.01~ '25.12	16	16																							'23.05.22
51	위치: 자양동685-15~685-2 규모: 폭원6m, 연장68m	'21.01~ '25.12	316	316																							'25.03.31
52	위치: 화양동199-4~111-11 규모: 폭원4~6m, 연장193m	'21.01~ '25.12	2,157	2,157																							'25.10.20
53	위치: 종곡동316-1~294-2 규모: 폭원6m, 연장165m	'21.01~ '25.12	343	343																							'27.12.06
54	위치: 종곡동116-6 규모: 45㎡ (공공공지)	'21.01~ '25.12	361	361																							'27.11.22
		총 계	143,607	136,368																							

◆ 동대문구공고 제2016-1251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동대문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토목과(☎2127-4815), 공원녹지과(☎2127-4227), 주차행정과(☎2127-4478), 복지정책과(☎2127-4554), 도시계획과(☎2127-45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29일

동대문구청장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사업비:백만원)

시 설 별	시 행 기 간 별									비 고
	계			1단계(1~3년차)			2단계(4년차이후)			
	건수	면적(㎡)	사업비	건수	면적(㎡)	사업비	건수	면적(㎡)	사업비	
계	61	109,030	118,635	6	5,369	26,947	55	103,661	91,688	
도 로	56	102,225	97,774	4	3,320	8,695	52	98,905	89,079	
공공공지	2	237	1,609	-	-	-	2	237	1,609	
주차장	2	2,049	18,252	2	2,049	18,252	-	-	-	
사회복지시설	1	4,519	1,000	-	-	-	1	4,519	1,000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연번	시설별	위 치 (사업명)	사업 기간	사 업 개 요			사 업 비 (백만원)					단계별	
				폭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비	지 방 비				민간
									계	시비	구비		
1	도로	답십리동 3~1간 도로개설	2017~ 2018	10	100	1,000	3,503	0	3,503	0	3,503	1단계	
2	도로	전농동 46~52간 도로개설	2017~ 2018	10	50	500	2,001	0	2,001	0	2,001	1단계	
3	도로	장안동 94~194간 도로개설	2017~ 2018	10	170	1,700	2,401	0	2,401	0	2,401	1단계	
4	도로	제기동 149~167간 도로개설	2017~ 2018	6	20	120	790	0	790	0	790	1단계	
5	도로	장안동 284번지 도로개설	2019 이후	8	60	480	800	0	800	0	800	2단계	

연번	시설별	위 치 (사업명)	사업 기간	사 업 개 요			사 업 비 (백만원)						단계별
				폭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비	지 방 비			민간	
									계	시비	구비		
6	도로	용두동 122~255간 도로개설	2019 이후	8	410	3,280	1,200	0	1,200	0	1,200		2단계
7	도로	휘경동 49~380주변 도로개설	2019 이후	8	275	2,200	2,005	0	2,005	0	2,005		2단계
8	도로	휘경동 276~308주변 도로개설	2019 이후	10	70	700	1,000	0	1,000	0	1,000		2단계
9	도로	이문동 363~15외2개소 도로개설	2019 이후	6	282	1,692	2,000	0	2,000	0	2,000		2단계
10	도로	회기동 60~285 ~ 45~35 도로개설	2019 이후	8	177	1,416	1,484	0	1,484	1,039	445		2단계
11	도로	회기동 45~56 ~ 54~151 도로개설	2019 이후	8	56	448	12	0	12	8	4		2단계
12	도로	회기동 16~11 ~ 33~1 도로개설	2019 이후	4	95	380	237	0	237	166	71		2단계
13	도로	회기동 45~58 ~ 52 도로개설	2019 이후	4	85	340	103	0	103	72	31		2단계
14	도로	회기동 73~9 ~ 62~62 도로개설	2019 이후	2~6	78	312	127	0	127	89	38		2단계
15	도로	신설동 114~25 ~ 114~ 6도로개설	2019 이후	10~1 2	306	215	1,346	0	1,346	0	1,346		2단계
16	도로	신설동 103~20 ~ 96~44 도로개설	2019 이후	2	357	100	125	0	125	0	125		2단계
17	도로	신설동 96~34 ~ 96~22 도로개설	2019 이후	4	74	269	477	0	477	0	477		2단계
18	도로	신설동 114~87 ~ 114~1 도로개설	2019 이후	10	63	6	27	0	27	0	27		2단계
19	도로	전농동 150~84 ~ 150~1 도로개설	2019 이후	4	21	84	20	0	20	0	20		2단계
20	도로	휘경동 267~42 ~ 255~40 도로개설	2019 이후	8	230	1,789	2,105	0	2,105	0	2,105		2단계
21	도로	휘경동 192~19 ~ 145~40 도로개설	2019 이후	6	140	2,310	10,788	0	10,788	0	10,788		2단계
22	도로	휘경동 183 ~ 113 도로개설	2019 이후	4	51	204	450	0	450	0	450		2단계
23	도로	담십리동 1~24 ~ 1~99 도로개설	2019 이후	6	155	930	485	0	485	0	485		2단계

연번	시설별	위 치 (사업명)	사업 기간	사 업 개 요			사 업 비 (백만원)					단계별	
				폭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비	지 방 비				민간
									계	시비	구비		
24	도로	신설동 25-1 ~ 89-25 도로개설	2019 이후	4	120	480	1,109	0	1,109	0	1,109		2단계
25	도로	용두동 129-4 ~ 129-473 도로개설	2019 이후	8	180	1,440	50	0	50	0	50		2단계
26	도로	용두동 251-86 ~ 251-19 도로개설	2019 이후	8	180	1,440	56	0	56	0	56		2단계
27	도로	신설동 92-46 ~ 114-43 도로개설	2019 이후	6	372	2,232	112	0	112	0	112		2단계
28	도로	용두동128-391~상왕십 리 청계천 도로개설	2019 이후	6	25	150	52	0	52	0	52		2단계
29	도로	용두동 청계천 ~ 용두동 251-72 도로개설	2019 이후	6	28	168	72	0	72	0	72		2단계
30	도로	신설동 청계천 ~ 신설동 92-26 도로개설	2019 이후	6	23	138	48	0	48	0	48		2단계
31	도로	이문동 288-63 ~ 288-64 도로개설	2019 이후	4	30	120	766	0	766	0	766		2단계
32	도로	이문동 292-4 ~ 341-10 도로개설	2019 이후	8~12	1,116	8,928	13,079	0	13,079	0	13,079		2단계
33	도로	이문동 264-210 ~ 398 도로개설	2019 이후	8~15	276	2,208	392	0	392	0	392		2단계
34	도로	전농동 60-33 ~ 88-7 도로개설	2019 이후	8	230	1,840	2,593	0	2,593	0	2,593		2단계
35	도로	전농동 35-1 ~ 59 도로개설	2019 이후	8	310	2,480	3,723	0	3,723	0	3,723		2단계
36	도로	전농동 60-22 ~ 55-9 도로개설	2019 이후	8	210	1,680	8,625	0	8,625	0	8,625		2단계
37	도로	전농동 152-9 ~ 152-39 도로개설	2019 이후	6	290	1,740	1,599	0	1,599	0	1,599		2단계
38	도로	전농동 534-6 ~ 530-64 도로개설	2019 이후	6	40	240	844	0	844	0	844		2단계
39	도로	제기동 67-104 ~ 67-21 도로개설	2019 이후	4	188	752	633	0	633	0	633		2단계
40	도로	제기동 139-16 ~ 250 도로개설	2019 이후	6	400	2,400	2,818	0	2,818	0	2,818		2단계
41	도로	제기동 146-14 ~ 67-258 도로개설	2019 이후	6	107	642	1,859	0	1,859	0	1,859		2단계
42	도로	제기동 167 ~ 174 도로개설	2019 이후	6	70	420	1,242	0	1,242	0	1,242		2단계

연번	시설별	위 치 (사업명)	사업 기간	사 업 개 요			사 업 비 (백만원)					단계별	
				폭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비	지 방 비				민간
									계	시비	구비		
43	도로	제기동 148-64 ~ 268-20 도로개설	2019 이후	8	424	3,392	2,226	0	2,226	0	2,226		2단계
44	도로	용두동(정릉천변)~제기동(정릉천변) 도로개설	2019 이후	10~12	2,200	22,000	2,800	0	2,800	0	2,800		2단계
45	도로	상월곡동 산7-3 ~ 종암동 26-205 도로개설	2019 이후	10	480	4,800	1,930	0	1,930	0	1,930		2단계
46	도로	회기동 1-1 ~ 3-15 도로개설	2019 이후	6	276	1,656	1,500	0	1,500	0	1,500		2단계
47	도로	회기동 16-9 ~ 339-20 도로개설	2019 이후	8	340	2,720	6,026	0	6,026	0	6,026		2단계
48	도로	이문동 176-1~ 이문동 176-71	2019 이후	8~10	180	1,800	1,139	0	1,139	0	1,139		2단계
49	도로	이문동 220-26 ~ 이문동 167-1	2019 이후	2~6	171	1,026	4,038	0	4,038	0	4,038		2단계
50	도로	이문동 167-6 ~ 이문동 167-18	2019 이후	6	19	114	636	0	636	0	636		2단계
51	도로	답십리동 75-16 ~ 답십리동 75-24	2019 이후	15	160	2,400	1,155	0	1,155	0	1,155		2단계
52	도로	답십리동 대3-11 ~ 답십리동 19	2019 이후	20	210	4,200	2,340	0	2,340	0	2,340		2단계
53	도로	답십리동 19-19 ~ 답십리동 12-203	2019 이후	20	230	4,600	128	0	128	0	128		2단계
54	도로	답십리동 중1-172 ~ 중1-180	2019 이후	12	285	3,420	441	0	441	0	441		2단계
55	도로	휘경동 161-1 ~ 휘경동 154-18	2019 이후	4	21	84	97	0	97	0	97		2단계
56	도로	이문동 78-9 ~ 이문동 78-8	2019 이후	4	10	40	160	0	160	0	160		2단계
57	공공 공지	신설동 114-30 일대	2019 이후			129	1,001	0	0	0	1,001		2단계
58	공공 공지	이문동 220-282	2019 이후			108	608	0	0	0	608		2단계
59	주차장	이문동 220-20 일대	2018~2019			1,422	15,733	1,573	14,160	8,496	5,664		1단계
60	주차장	이문동 170-42일대	2018~2019			627	2,519	0	2,519	0	2,519		1단계
61	사회복 지시설	휘경동 49-189 일대	2019 이후			4,519	1,000	500	500	500	0		2단계

◆ 강서구공고 제2016-1565호

도시계획시설(철도 : 정거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5호(2002.1.9)로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80호(2002.12.6)로 건설사업계획 승인되어, 강서구고시 제2014-45호(2014.5.8)로 변경 결정, 강서구고시 제2014-116호(2014.12.26)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강서구 고시 제2015-92호(2015.10.15.) 및 제2016-69호(2016.8.25.)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50-34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 : 정거장)사업
- 명 칭 : 마곡지구 B7-4BL 신축관련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지하통로 연결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방디엠시티(주) 대표이사 이주현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74-17, 804(백석동)

라. 사업 기간 : 2015.10.15 ~ 2016.10.31.

마. 공사완료 내용

- 공사 규모 : 연결통로 개설 B=8.5m ~ 11.5m, L=4.7m ~ 9.6m, A=52m²
- 공사완료일(준공일) : 2016.12.29.

바. 관계도서 : 생략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2600-6842)

◆ 금천구공고 제2016-131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71호(2013.8.22.)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되고 서울특별시금천구고시 제2014-39호(2014.9.25.)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금천구고시 제2016-11호(2016.2.4.) 및 서울특별시금천구고시 제2016-75호(2016.10.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한 『금천구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군부대 부지 특별계획구역 내 세부개발계획』 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금 천 구 청 장

1. 사업의 명칭 : 금천구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사업의 위치 : 금천구 독산동 441-6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제이피홀딩스피에프브이 대표 박용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92-2번지)
 - (주)제이피홀딩스 대표 이윤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203)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32,981.2㎡
 - 사업규모 : 폭 6~20m, 연장 1,771km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2	382	20	보조 간선	485	독산동 468-2	독산동 441-8	일반 도로	서고 제1999-75호 (99.3.20)	
중로	2	114	20	집산	5,250 (320)	구로동 대3-49 (독산동 464-7)	시흥동 대3-82 (독산동 448-8)	일반 도로	건고 제198호 (71.4.7)	
중로	2	320	15-18	집산	505	대3-82 (시흥동 113-142)	중1-382 (독산동 472-2)	일반 도로	금천구고시 2000-7호(00.3.8)	
중로	3	376	15.5	집산	164	광1-15 (독산동 산221-3)	중2-320 (독산동 441-6)	일반 도로	서고 제2013-271호 (13.8.22)	
중로	3	377	12~15	집산	289	중2-320 (독산동 441-6)	중2-114 (독산동 448-1)	일반 도로	서고 제2013-271호 (13.8.22)	
소로	3	110	6	국지	154 (8)	중로2-320 (시흥동 113-133)	시흥동 113-133	일반 도로	서고 제2013-271호 (13.8.22)	

5. 관련서류 : 생 략

※ 관련도서는 금천구청 도로과(☎ 02-2627-1805)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영등포구공고 제2016-180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건고시 제1985-561호(1985.12.23)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고, 서고시 제1986-19호(1986.01.16)로 지적고시 되었으며, 서고시 제2014-63호(2014.02.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된 『도림로 확장공사』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공사완료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시 행 지	사 업 규 모	공 사 기 간
도림로 확장공사(2016)	신길동 355-662~420-192	도로확장 (편측) 폭 25→35m, 연장 173m	2016.03.22 ~ 2016.12.12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업시행자 성명·주소 :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라. 준공도서 : 생략

마. 관련서류는 영등포구청(도로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2670-3814)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28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 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하천명	점용(사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201-11	한 강	총 600㎡ -망원150㎡ -이촌150㎡ -뚝섬150㎡ -광나루150㎡	경찰정 계류	2017.01.01. ~ 2017.12.31	2016.12.22

사업소공고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6-284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6.12.29. ~ 2017. 1.11.(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17. 1.12. ~ 2017. 1.25.(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승달 대상내역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자진납부 금액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4600	주*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번길 **	***동 ****호 (용현동, 용현건영아파트)
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814	김*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길 ***	***호 (역촌동, 초원빌라)
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818	서*원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호 (역촌동)
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820	이*영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	***호 (영등포동*가, 영등포점프빌라노)
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823	박*휘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미포구 구룡길**	C***호 (상암동, 상암 한화 오벨리스크)
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826	배*덕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터널로*길 ***	지음 좌측호 (신사동)
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828	이*민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길 ***	***호 (대조동, 상촌당)
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829	고*환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천로 ***	(연희동)
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833	최*연	등반한 에워건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길 ***	(구의동)
1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835	김*자	등반한 에워건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도봉구 봉로*길 **	***호 (범하동)
1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839	김*환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로*길 ***	지음 ***호 (염창동, 국제빌라)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건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자진납부 금액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1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840	방*석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레오*길 **~**	에이동 ***호 (신월동)
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847	이*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로**길 **	***호 (추암동, 목회연립)
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854	이*문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5,000	2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대로**길 **~**	(이태원동)
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855	고*희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로**길 *	*층 우측 (봉선동)
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857	조*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	(하월곡동)
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858	(주)**이연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로**길 **	(당산동*가)
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860	김*숙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로**길 **~**	***호 (신림동)
1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862	윤*석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포**길 **	***호 (역삼동)
2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866	JIN ***NDE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 로 ***~**	(성수동*가)
2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867	정*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곡*길 *	(사동)
2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868	LI G***GZHE N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로**길 **	***호 (자양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건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자진납부 금액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2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871	송*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 중앙*길 *	(용답동)
2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873	배*웅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 로**길 ***-	(구의동)
2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876	최*섭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중앙본로*길 **-*	B***호 (목동)
2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879	김*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 로**길 ***-	(명일동)
2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882	오*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 하로***번길 ***-	라동 ***호 (김량장동, 공신빌 라)
2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886	김*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상북도 경주시 흥효중앙 길 **	***호 (충효동, 아네스빌)
2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892	정*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 로 ***	*동 ***호 (쌍문동, 쌍문한양아 파트)
3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894	임*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 봉**나길 *	(하양신리동)
3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00	노*엽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 산로**길 ***-	(화양동)
3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03	유*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 대로**길 **	B**호 (반포동, 시은빌라)
3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04	김*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 산로**길 **	*동***호 (광장동, 위커힐일신 아파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건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자진납부 금액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3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07	박*우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당 로*가길 *	***호 (서당동)
3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11	심*채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 래로**길 *	***동 ****호 (문래동*가, 문 래동메가트리움)
3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12	이*규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 양로 **	(구로동)
3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13	조*연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 로**마길 ***-	(상도동)
3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14	이*규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 양로 **	(구로동)
3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18	이*규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 양로 **	(구로동)
4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21	이*규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 양로 **	(구로동)
4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22	박*우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당 로*가길 *	***호 (서당동)
4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23	하*철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번길 ***-	(광명동)
4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24	심*숙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 마산로**길 *-*	(신길동)
4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25	강*아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 로**마길 **	***호 (개봉동, 로얄아트빌)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건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자진납부 금액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4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28	김*재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 고로**기길 **	(주성동)
4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31	이*규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 양로 **	(구로동)
4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32	니 Z*** JIANG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 등포로**길 ***-	*층 (신길동)
4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33	이*규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 양로 **	(구로동)
4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34	박*관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대전광역시 서구 도림*길 *	(도마동)
5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35	이*규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 양로 **	(구로동)
5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39	이*규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 양로 **	(구로동)
5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40	전*훈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길 **	***호 (독산동)
5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42	이*연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 재울로*길 ***-	(남기좌동)
5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43	이*호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 로**길 **	***호 (수유동, 쌍용프라임)
5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48	이*규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 양로 **	(구로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건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자진납부 금액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5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49	이*우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 로**나길 ***-	(청파동*가)
5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52	김*주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 옛길 ***-	(공덕동)
5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53	호*선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 로*가길 **	(오류동)
5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57	유*중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 로**길 *-*	(시흥동)
6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58	양*두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 로**길 ***-	(신정동)
6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60	이*규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 양로 **	(구로동)
6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63	이*규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 양로 **	(구로동)
6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64	김*기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남양주시 의안로 ***번길 ***-	(평내동)
6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65	하*철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번길 ***-	(광명동)
6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68	김*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 당로**나길 **	B**호 (응봉동, 금호파크빌)
6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92	양*선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중앙로**나길 **	**호 (목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건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자진납부 금액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6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93	류*은,이*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길 **	***호 (후암동, 목화연립)
6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4994	호*선	비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가길 **	(오류동)
6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5020	M*S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로**길 **	***동 ***호 (홍제동, 홍제원 현대아파트)
7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5032	(주)***직스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길 **	***호 (역삼동, 삼일프라자오피 스텔)
7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5037	대**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 *길 **	***동 ***호 (신정동, 푸른마 을아파트)
7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5041	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 포로**길 ***-	*층 (잠원동, 삼도빌딩)
7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1	005043	남*명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 악대로***번길 **-***	***호 (비산동, 수자인)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462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중랑구청장
 - 주 소 :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662)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382번지
 - 면 적 : 61.6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중화장실
 - 내 역 : 공중화장실 1개소
5. 점용기간 : 2016.05.17.~2021.05.16.(5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466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97-1번지 외 3필지(성수대교 북단 부근)
 - 면 적 : 영구 605㎡, 일시 2,21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고수호안 녹화사업
 - 내 역 : · 고수호안 사면 복토(T=30cm)
· 수목(관목, 개나리 등 3종) 23,880주 식재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6.12.22.~2021.12.21.(2016.12.22.~2017.01.02.)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469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7길 5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셋강 서울교 상류 일원 및 신길동 17-6번지 등 7필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39번지 등 4필지 일원
 - 면 적 : 1,28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전기공급시설(전력관로, 전력구, 수직구) 설치
 - 내 역 : · 전력관로 D=230mm L=284m
· 전력구 D=3,010mm L=311.5m
· 수직구 D=8,800mm D=6,800mm
5. 점용기간 : 2016.11.24.~2021.11.23.(5년)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